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212-01

평가인증 활성화 및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질 제고 방안

서문희 김온기 이정원 송신영 원종욱

보 건 복 지 부
육 아 정 책 연 구 소

제출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의 『평가인증 활성화 및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질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차 례

요 약	1
I. 서 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 내용	12
3. 연구방법	13
4. 선행연구	16
II. 보육시설 평가인증 현황과 편익	22
1. 제1차와 제2차 평가인증 지표와 운용체계의 차이	22
보육시설 평가인증 현황과 편익	23
2. 제1차 시행 평가인증 보육시설의 점수	26
3. 평가인증 점수와 시설장 평가에 의한 질적 수준	35
4. 평가인증제도의 편익	53
5. 정책시사점	65
III. 평가인증 결과의 활용 실태와 관련 의견	66
평가인증 결과의 활용 실태와 관련 의견	66
1. 공개 및 부모의 활용	66
2.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차등화	77
3. 재정 지원과 연계	81
4. 정책시사점	89
IV.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 실태와 관련 의견	91
1.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	91
2. 보육료 규제 완화 어린이집	113
3. 정책시사점	122

V. 외국 보육서비스 평가 사례	125
1. 영국 국가 보육·교육 서비스 평가	125
2. 호주 보육시설 평가인증	130
3. 정책시사점	137
VI. 정책대안 및 맺는 말	138
1. 평가인증 결과 등급화 및 공개 방안	138
2.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 지원 정책과의 연계 방안	145
3.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 방안	151
4. 보육료 규제 완화 어린이집 도입 방안	156
5. 맺는 말	162
참고문헌	164
부 록	167
부록 1. 민간 비인증 어린이집의 설문 항목별 지불의사 금액	169
부록 2. 시·군·구별 평가인증 참여 및 통과시설 지원 특수시책	176
부록 3.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기준	183
부록 4. 영국 영유아보육·교육기관 평가 결과 공개 사례	185
부록 5. 설문조사표 2종	203

표 차 례

〈표 I-3- 1〉 보육시설 조사 결과	14
〈표 I-3- 2〉 보육시설 대상 조사 문항	14
〈표 I-3- 3〉 보육 전문가 대상 조사 문항	15
〈표 II-1- 1〉 제1, 2차 평가인증 평가지표 비교	22
〈표 II-1- 2〉 40인 이상 시설 평가지표 변경 내용	23
〈표 II-1- 3〉 39인 이하 시설 평가지표 변경 내용	23
〈표 II-1- 4〉 제1, 2차 기본확인 사항 변경 내용	24
〈표 II-1- 5〉 제1, 2차 점수비중 변경 내용	25
〈표 II-1- 6〉 심의기준 내용	26
〈표 II-2- 1〉 평가인증 참여 결과별 총 점수 평균	27
〈표 II-2- 2〉 평가인증 참여시설 결과점수 분포	27
〈표 II-2- 3〉 연도별 평가인증 참여시설 총 점수 평균	28
〈표 II-2- 4〉 평가인증 참여 결과별 영역별 평균 점수	29
〈표 II-2- 5〉 운영형태별 영역 점수: 40인 이상 시설	30
〈표 II-2- 6〉 운영형태별 영역 점수: 39인 이하 시설	30
〈표 II-2- 7〉 인증시설의 자체점검보고서와 관찰평가점수와의 대비오차 점수 분포	31
〈표 II-2- 8〉 90점 이상 보육시설 수 및 전체 시설 대비 비율('10. 2월)	31
〈표 II-2- 9〉 90점 이상 보육시설 수 및 인증시설 대비 비율('10. 2월)	32
〈표 II-2-10〉 시·도별 평가인증 상위 점수 보육시설 비율('10. 2월)	32
〈표 II-2-11〉 총점과 자체점검, 현장관찰 및 심의점수와의 상관관계	35
〈표 II-3- 1〉 2009년 보육시설실태조사 대상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점수 등급별 분포	36
〈표 II-3- 2〉 평가인증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총점 등급별 보육서비스에 대한 시 설장 응답의 차이 검증 결과	37
〈표 II-3- 3〉 표준보육과정 운영 - 40인 이상	40
〈표 II-3- 4〉 활동자료 구비 정도 및 수행	41
〈표 II-3- 5〉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보유 및 활용 여부	44

〈표 II-3- 6〉	보육실 공간 구성	44
〈표 II-3- 7〉	청결과 위생 - 40인 이상	45
〈표 II-3- 8〉	실내공기 질 측정 대상 어린이집 인지 여부	46
〈표 II-3- 9〉	교실 외 공간의 청소 담당	47
〈표 II-3-10〉	식재료 구입처	47
〈표 II-3-11〉	식단 작성 방법	48
〈표 II-3-12〉	보존식 운영 및 게시 여부	48
〈표 II-3-13〉	자체 조리시 조리 담당자	49
〈표 II-3-14〉	어린이통학버스 미등록차량수	50
〈표 II-3-15〉	36개월 미만 영아에 대한 차량 보호장구 설치여부	50
〈표 II-3-16〉	영유아보호자들과의 의사소통 방법 수	51
〈표 II-3-17〉	부모교육프로그램 제공 여부	51
〈표 II-3-18〉	보육시설운영위원회 구성 여부 및 구성시 개최 빈도	52
〈표 II-3-19〉	재무회계규칙준수여부	52
〈표 II-4 1〉	인증제도 도입 및 유지를 위한 연도별 예산규모	55
〈표 II-4 2〉	인증제도 도입 및 유지를 위한 연도별 예산규모	56
〈표 II-4 3〉	연도별 비용내역	57
〈표 II-4 4〉	40인 이상 시설의 평가항목	58
〈표 II-4 5〉	39인 이하 시설의 평가항목	58
〈표 II-4 6〉	인증여부에 대한 이용자의 응답구분	59
〈표 II-4 7〉	민간 인증과 비인증간 항목별 만족도	60
〈표 II-4 8〉	민간 인증과 비인증간 항목별 평균지불의사금액차이	62
〈표 II-4 9〉	인증시설 이용 영유아 수 현황	63
〈표 II-4-10〉	인증에 따른 연간편익	64
〈표 II-4-11〉	평가인증의 경제성 평가결과	65
〈표 III-1- 1〉	평가인증 어린이집 원아모집시 평가인증 점수 공개 및 도움	68
〈표 III-1- 2〉	부모가 관심 가지는 평가인증 영역	68
〈표 III-1- 3〉	평가인증 결과 공개 범위 확대에 대한 의견	70
〈표 III-1- 4〉	평가인증여부 공개와 부모의 보육시설 이용	71
〈표 III-1- 5〉	평가인증 결과 공개가 필요한 항목	71
〈표 III-1- 6〉	평가인증 점수 공개시 적절한 등급화	72

〈표 III-1- 7〉	평가인증 등급화에 대한 시설장 의견	72
〈표 III-1- 8〉	평가인증 등급화 정도에 대한 시설장 의견	73
〈표 III-1- 9〉	평가인증 결과 공개대상 범위에 대한 시설장 의견	74
〈표 III-1-10〉	평가인증 결과 공개대상 범위에 대한 전문가 의견	74
〈표 III-1-11〉	평가인증 결과 공개대상 범위 선택 이유	75
〈표 III-1-12〉	평가인증시설 공개 방법 충분성	75
〈표 III-1-13〉	적절한 평가인증 결과 공개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중복응답)	76
〈표 III-1-14〉	적절한 평가인증 결과 공개 방안에 대한 시설장 의견(중복응답)	76
〈표 III-2- 1〉	설립유형별 총점	77
〈표 III-2- 2〉	2차 시행 평가인증 시설수 및 총점 평균	78
〈표 III-2- 3〉	영역별 지원내용	79
〈표 III-2- 4〉	평가인증결과에 따른 유효기간 차등화 방안	79
〈표 III-2- 5〉	인증결과를 연장할 경우 기준	80
〈표 III-2- 6〉	추가적인 연장기간	80
〈표 III-2- 7〉	유효기간 연장시설에 대한 정책수반	81
〈표 III-3- 1〉	시·도별 평가인증 참여 및 통과시설 지원특수시책	83
〈표 III-3- 2〉	시·도별 평가인증 참여 및 통과시설 지원 특수시책 요약	84
〈표 III-3- 3〉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보육시설의 재정적 지원 중단 찬성 비율	86
〈표 III-3- 4〉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보육시설의 재정적 지원 중단시 유예기간	87
〈표 III-3- 5〉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보육시설의 재정적 지원 중단시 유예기간	88
〈표 III-3- 6〉	평가인증 인센티브(1순위)	89
〈표 IV-1- 1〉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분야	93
〈표 IV-1- 2〉	서울형 어린이집 재정지원(2010)	95
〈표 IV-1- 3〉	서울형어린이집 시설 및 아동수 현황: 2010. 10	97
〈표 IV-1- 4〉	서울형 공인 이후 변화에 대한 부모 인식	99
〈표 IV-1- 5〉	민간·가정 보육시설 서울형 여부별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의 개선 정도	100
〈표 IV-1- 6〉	부산시 공보육 평가 및 지정조건 및 배점	102
〈표 IV-1- 7〉	부산/서울시 사례 비교	104
〈표 IV-1- 8〉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 도입 방안	105
〈표 IV-1- 9〉	공공형 어린이집 전환 신청 의향	105

〈표 IV-1-10〉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시 평가인증 점수 외에 추가 요건 찬성 비율	106
〈표 IV-1-11〉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시 평가인증 결과 외에 추가 조건 적절성	107
〈표 IV-1-12〉 시설 건물 소유형태 및 타 시설 운영 여부	108
〈표 IV-1-13〉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요건에 대한 시설장 의견	108
〈표 IV-1-14〉 시설유형 및 지역별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요건에 대한 시설장 의견	109
〈표 IV-1-15〉 국공립보육시설에 준하는 운영기준 적용에 대한 찬성률	110
〈표 IV-1-16〉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시 정부의 지원금 수준	111
〈표 IV-1-17〉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시 지원금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 및 용도 제한	112
〈표 IV-1-18〉 공공형 어린이집 규모를 지역별로 일정 비율 제한	112
〈표 IV-2- 1〉 평가인증 우수 시설의 보육비용 수납 또는 보육시설 운영 기준 완화	114
〈표 IV-2- 2〉 자율형 어린이집 전환 신청 의향	114
〈표 IV-2- 3〉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전환 여부	115
〈표 IV-2- 4〉 최연소 아동연령구분별 보육료 상한선에 대한 부모 의견	115
〈표 IV-2- 5〉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시 규제 완화 범위	116
〈표 IV-2- 6〉 보육비용 규제 완화 범위	117
〈표 IV-2- 7〉 우수보육시설 보육비용 규제완화 방법 및 상한선 인상 시 기준	117
〈표 IV-2- 8〉 자율형 어린이집 운영시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 인상 대상	118
〈표 IV-2- 9〉 자율형 어린이집 운영시 보육료 책정액 평균	119
〈표 IV-2-10〉 상한선 규제 완화시 특별활동비에 대한 인상 계획	119
〈표 IV-2-11〉 추가비용 받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 및 최대 지불액 평균	120
〈표 IV-2-12〉 자율형 어린이집 운영 방식에 대한 시설장 의견	121
〈표 IV-2-13〉 자율형 어린이집 재정 지원에 대한 전문가의 찬성 비율	121
〈표 IV-2-14〉 자율형 어린이집 지역별 일정 비율 규제	122
〈표 IV-2-15〉 자율형 어린이집이 전체 민간·가정보육시설에서 차지하는 적정 비율	122
〈표 V-1- 1〉 평가 기준	127
〈표 V-1- 2〉 영국 ECEC 아동에 대한 결과 평가영역 및 평가요소	127

〈표 V-1- 3〉	평가 대상 보육서비스 제공자 수	128
〈표 V-1- 4〉	보육서비스 제공자 및 제공기관(가정 외) 평가 결과	129
〈표 V-1- 5〉	연차별 전체 보육서비스 제공자(보육모, 가정 포함) 평가 결과 ..	129
〈표 V-1- 6〉	전체 보육서비스 제공자(보육모, 가정 포함) 2008~9년 평가와 이전 평가 비교	130
〈표 V-2- 1〉	보육시설 유형별 평가인증 영역	132
〈표 V-2- 2〉	종일제보육시설 인증 현황 - 2010. 6 기준	133
〈표 V-2- 3〉	가정보육센터 인증 현황 - 2010. 6 기준	134
〈표 V-2- 4〉	방과후 보육 인증 현황 - 2010. 6 기준	134
〈표 V-2- 5〉	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 주기	136
〈표 VI-1- 1〉	평가인증 등급화 방안: 제1안	140
〈표 VI-1- 2〉	평가인증 등급화 방안: 제2안	141
〈표 VI-1- 3〉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설 결과 공개 예시	142
〈표 VI-3- 1〉	공공형 어린이집 대상 선정 기준(안)	154
〈표 VI-4- 1〉	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제 완화 대상 어린이집 선정 기준(안)	159
〈표 VI-4- 2〉	보육료 자율화 적용 방안	162

부 록 표 차 례

〈부표 1- 1〉 시설의 청결성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	169
〈부표 1- 2〉 시설의 노후상태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	169
〈부표 1- 3〉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	170
〈부표 1- 4〉 시설의 조명 및 내부인테리어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	170
〈부표 1- 5〉 시설장의 높은 전문성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	170
〈부표 1- 6〉 시설장의 친절 및 호의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	171
〈부표 1- 7〉 시설장의 성실성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	171
〈부표 1- 8〉 교사의 높은 전문성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	171
〈부표 1- 9〉 교사의 친절 및 호의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	172
〈부표 1-10〉 교사의 성실성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	172
〈부표 1-11〉 자료의 양적 충실성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	172
〈부표 1-12〉 자료의 질적 충실성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	173
〈부표 1-13〉 급식 및 간식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	173
〈부표 1-14〉 보육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	174
〈부표 1-15〉 보육 프로그램의 충실성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	174
〈부표 1-16〉 위급상황 대처능력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	175
〈부표 2- 1〉 시·군·구별 평가인증 참여 및 통과시설 지원 특수시책	176
〈부표 3- 1〉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기준	183

요 약

1. 서론

가.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본 연구는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평가인증 결과 등급화 및 공개 기준을 마련하며, 민간보육시설의 공공형 어린이집 및 보육료 규제 완화 제도 도입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 연구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 평가인증 점수 분포와 등급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검토하고 정부의 평가인증 결과 활용 실태 및 편익분석을 실시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함.
 - 서울과 부산에서 실시하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공인 어린이집 사례를 검토하고 공인 어린이집에 대한 공급자와 전문가의 인식, 요구 및 수요를 파악함.
 - 영국과 호주의 최근 평가제도의 개선 및 평가 결과 활용 사례를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평가인증 결과 공개 방안을 모색하고, 평가인증과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연계 등 평가인증 관련 정보 활용성 제고 방안을 모색함.
 - 평가인증 결과를 활용한 구체적 정책방안의 하나로 공공형 어린이집과 보육료 규제 완화 어린이집 도입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함.

나. 연구방법

- 평가인증 관련 선행 연구를 수집, 분석하고, 호주와 영국 평가 관련 기관을 검색하여 최근의 정책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음.
- 기존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음.
 - 보육시설평가인증국의 보육시설 평가인증 점수 자료를 분석하였음.

- 편익분석을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9년도 아이사랑카드제도 성과 관리체계 구축 및 효과성 평가 연구를 위하여 수집한 원자료를 활용하였음.
-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시설조사 원자료와 보육시설평가인증국의 평가인증 점수 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하였음.
-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서구와 덕양구, 대구시 달서구와 수성구에서 총 562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 내용은 보육시설 운영, 평가인증 등급 및 공개 관련 의견, 공공형과 자율형 어린이집 관련 의견 등임.
 - 평가인증 정책방안과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학계와 보육정보센터장 총 77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평가인증으로 인한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정책에 대한 편익분석을 실시하였음.
- 학계, 보육시설 시설장, 교사, 공무원 등과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정책 방향 설정의 타당성과 정책대안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였음.

2. 보육시설 평가인증 현황과 편익

- 2006년 1기부터 2009년 4기까지 평가인증에 통과한 시설 중 40%가 90점 이상을 받는 등 상당수의 시설이 높은 점수를 받고 있음. 그러나 75점 이하도 4.8%로 평가인증 통과 시설들 간의 점수 차이도 적지 않음.
- 보육시설 실태조사 자료와 평가인증 점수를 연계한 분석결과, 평가인증 총점을 기준으로 등급화를 할 경우에 기준 점수가 95점이 가장 적절함을 시사함.
 - 평가인증 점수별로 나눈 5가지 등급과 시설장이 응답한 서비스 수준간의 차이가 문항별로 차이를 보임. 특히 표준보육과정 등 프로그램 운영과 가족 및 지역사회 연계에서는 등급별로 차이가 유의한 문항 비율이 높은 반면에 건강 및 위생 영역에서는 등급별 차이가 있는 문항이 소수임.
 - 평가인증 점수별로 나눈 5가지 등급과 시설장이 응답한 서비스 수준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분석된 문항의 경우에도, 그 내용을 보면 95점 이상과 그 이하 점

수집단이 일관성 있게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고 95점 이하인 집단간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순현재가치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평가인증의 편익비는 2.08~2.59로 경제성이 확보된 사업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음.
 - 가중치를 적용한 상태에서 이용자의 만족도와 지불의사금액에서 다른 항목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교사 전문성과 교육자료 관련 항목만을 고려하면 순편익은 4,736억원, 편익비는 2.08이고,
 - 교사 전문성과 교재교구 이외 물리적 환경과 급·간식을 반영하면 순편익은 6971.6억원, 편익비는 2.59임.

3. 평가인증 결과 활용 실태, 의견 및 정책시사점

- 보육시설 평가인증 결과의 활용 실태 및 이와 관련된 의견을 살펴본 결과, 이에 대한 정책시사점은 도출하였음. 이는 다음과 같음.
- 현재 평가인증 결과가 부모에게 공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공개의 방법이 매우 소극적이며 공개되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임. 전문가 대부분은 현재의 공개와 부모의 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음.
 - 어린이집 중 원아모집시 자발적으로 부모들에게 평가인증 점수를 공개하는 어린이집은 31% 정도인데, 이중 23.9%는 총점만 공개하고 7.1%는 총점과 영역별 점수를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원아모집에 평가인증 통과가 도움을 준다는 비율은 38% 정도임.
 - 부모들 중 상당수는 평가인증제도에 대해 인지도 못하고 있음.
- 향후 평가인증 관련 공개 자료는 총점 등급과 영역별 등급을 선호하고 등급은 2~3 등급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보육전문가는 공개가 필요한 정보로 총점 등급이 77.3%로 가장 높고, 다음이 영역별 점수 등급이 59.1%임.
 - 전문가 조사에서 총점이나 영역별 점수를 등급화하여 공개할 경우 등급 수에 대하여서는 3등급이 1순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은 5등급 20.8%, 2등급 10.4%의

순이었음.

- 시설장들은 평가인증 등급화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높으나 등급화 할 경우에는 3등급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고 다음이 2등급임. 평가인증 공개시 총점이나 영역별 점수 등급 3등급은 시설장과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함.
- 평가인증과 재정지원 연계는 디스인센티브 방식으로 지원하던 예산의 지원 중단은 단계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실시되어야 함을 나타냄.
 -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재정 지원 중단에 찬성하는 지원 항목이 교재교구비와 차량운영비는 85% 수준이고 영아 기본보조금은 62.5%, 차등보육료는 56.2%로 조사되었음.
 - 유예기간을 두는데 찬성하는 비율은 항목별로 교재교구비와 차량운영비는 65~69%이고 기본보육료와 차등보육료는 93.3%가 두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 유예기간을 둘 경우 적정 기간은 항목별로 1년이 67~76%로 높았음.
- 평가인증 인센티브는 환경개선비, 종사자 수당을 선호함. 많은 지방정부가 보육교사 수당을 일회성 또는 월 단위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 편차가 커서 이를 중앙정부 정책으로의 수용 가능성 모색이 필요함을 나타냄.
 - 유효기간을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약 70%는 찬성하지만, 시설장들은 이를 인센티브로 보지 않았음.

4.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 관련 의견 및 정책시사점

가. 공공형 어린이집

- 서울과 부산 공인 어린이집 사례를 검토하고 공공형 및 보육료 규제 완화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장 및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자율형보다 공공형이 수용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냈음.
 - 보육전문가들은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 도입에 찬성이 88.2%이고, 시설장은 공공형 어린이집과 자율형 어린이집 제도가 모두 도입될 때 47.2%는 공공형,

19.9%는 자율형을, 27.3%는 현 상태 유지를 선호하였음.

- 공공형 어린이집의 조건은 전문가와 시설장 의견이 차이를 보이지만 평가인증 이외 추가 조건을 둘 수 있음을 나타냄.
 - 보육전문가들이 추가 조건으로 찬성하는 비율은 어린이집 복수운영 및 학원 등 유사기관 동시 운영 대표자 제한 94.8%, 용자 과도한 자가시설 제한과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놀이터 요건 충족은 92% 수준, 임대시설 제한은 72.4%이었음.
 - 시설장은 찬성비율이 자가시설 및 자기자본 또는 상환금 비중 33.6%, 타 보육 시설 및 유치원, 유사기관 운영 금지 45.8%,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놀이터 요건 충족 54.2%로 낮았음.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기준도 전문가들은 높은 수용성을 나타냈으나, 시설장들의 의견은 다소 달랐음.
 - 시설장들은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 34.7%,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의 보육교사 급여 지급 74.4%, 표준보육과정 운영 의무화 61.4%,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시간 제한 27.6%인데,
 - 보육전문가는 보육비용 수납한도액, 취약보육 제공, 보육과정 운영,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클린카드 사용과 엄격한 회계보고의 7가지 문항 모두 90% 이상이 동의하였음.
- 공공형 어린이집 재정 지원 방법으로 시설장은 유아 기본보육료와 영유아 인건비 지원 선호 비율이 유사한 수준임.
 - 유아 기본보육료과 영유아 인건비는 지원금의 성격이 다르므로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나. 보육료 규제 완화 어린이집

- 자율형 어린이집 수용성은 부모의 보육료 지불능력과 의사가 주된 결정요인이 될 것이며, 지역적 격차가 있을 것임을 나타냈음.
 - 고양시와 대구시에서 시설장들은 공공형 어린이집과 자율형 어린이집 제도가 모두 도입되면 어떻게 하겠는가하는 질문에 19.9%가 자율형은 선택하겠다고 응답하였으나,
 -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부모들은 5.5%만이 보육료 자율화를 선호하였음.

- 자율형 어린이집의 규제 완화 대상은 전문가는 보육비용 수납과 운영기준 모두가 44.4%로 가장 높고, 보육비용 수납만과 보육시설 운영기준만 자율화 하는 방안에는 각각 27.8%가 동의하였음.
 - 규제 완화 대상 범주에 대하여 전문가는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 상한선 모두 43.1%, 보육료 상한선만 32.3%, 기타 필요경비 상한선만 24.6%로 나타났음.
- 전문가들은 보육료 상한선 조정을 선호하여 완전 규제 완화에 우려를 표명하였고, 실제 시설장들은 보육료 규제 완화 시 가격 인상 의도를 나타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을 나타냈음.
 - 전문가들은 상한선 인상을 선택한 비율이 82.6%로 대다수이고, 이 경우 상한선 인상 수준으로는 150%를 선택한 비율이 50.8%이고 200%가 30.2%임.
 - 시설장들은 보육료 규제가 완화될 경우 26~30%가 기타 필요경비, 보육료 또는 둘 다를 인상하겠다고 응답하였음.
- 보육료 규제 완화 시설은 유아 중심 보육시설이 될 것임을 나타냈음. 보육료 규제 완화 방법으로 보육시설의 93%가 영아 기본보육료는 지원하고 유아에 대한 수납 한도액을 완화하는 방안을 선택하였음.
 - 영아는 기본보육료를 주면서 상한선을 유지하도록 하고, 기본보조금이 없는 유아만 수납한도액을 완화할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됨.

5. 정책대안

가. 평가인증 결과 등급화 및 공개 방안

- 평가인증시설 등급 기준은 3단계로 나누는 제1안과 2단계로 나누는 제2안을 제안함.
 - 1, 2안 모두 최상등급 기준 점수는 ① 총점이 95점이고 영역별 점수가 모두 90점 이상, ② 총점 95점 이상, ③ 영역별 점수가 모두 90점 이상의 세 가지를 고려할 수 있음.
 - 영역별 점수는 순수한 관찰평가 점수이므로 심의점수가 들어간 총점에 비하여 민원의 소지가 적음.

- 3단계 구분시 차상위 등급은 총점 90점 이상으로 함.
 - 적용 점수는 제1차 및 제2차 평가인증 모두 차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함.
 - 평가인증 점수 이외에 자가시설, 혹은 실외놀이공간 확보 등 구조적인 변인으로 조건을 둘 수 있음.
- 총점, 영역별 점수, 총점 등급, 영역별 등급, 법적 준수 사항 여부 등 공개 대상과 정보는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기본원칙을 따름.
- 제1안은 지자체 평가, 평가인증 총점, 영역별 점수, 총점 등급과 영역별 등급, 전문가 평가 등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임.
 - 제2안은 제1안 중 점수를 제외하고 등급만 공개하는 방안임. 인증통과 후 결과 등급을 공개할 경우, 점수 공개는 시설 재량에 맡김.
 - 이외에 인증 이력 공개는 제도화하지 않고, 어린이집 자율에 맡김.
- 평가인증 결과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함.
- 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에는 전체 어린이집 명단을 올려 미인증 시설도 검색하면 미인증시설임이 드러나도록 함.
 - 보육시설에서는 인증결과를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동시에 보육아동 부모에게 문서로 발송하도록 의무화함. 평가인증 관련 정보는 변동 사항이 생기는 대로 이를 모두 부모에게 알리도록 함.
 - 지방정부에서도 지방정부나 보육정보센터 등 각종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관련 정보를 공개함.
- 등급은 정책에 활용함.
- 평가인증 결과를 인센티브 지급 대상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법임. 인증여부를 적용할 수 있고, 우수시설로 한정하거나 우선순위를 둘 수 있음.
 - 지방정부의 다양한 인센티브 중 교사 처우와 같은 일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서울과 부산의 사례처럼 공공형 어린이집 조건으로 활용함.
 - 금전 이외 인센티브로 평가인증을 3회 반복하여 통과한 시설에는 유효기간을 4년으로 차등 적용할 수 있음.

- 한편 미인증 시설은 교구교재비, 기본보조금, 장기적으로는 바우처 가맹점 제외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함으로써 인증참여를 독려할 수 있음.
- 평가인증은 1차, 2차로 구분되는데 등급화 및 공개 정책 대상은 원칙적으로 2차에 한하고 1차는 어린이집 희망시 신청을 받아서 공개함. 2차로 한정하는 이유는 제도 적용 시점 문제임.
-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음.
 - 인증 점수의 신뢰성, 인증 당시 수준 유지 여부 등 우수인증시설의 질적 수준 차이 담보 문제가 발생함. 이는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보완하여야 함. 사후관리 중 가장 효과적 방법은 불시방문이 될 것임.
 - 지역별 편차 문제는 지자체의 개선 노력을 유도할 수 있고,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를 도모할 수 있음.
 - 인센티브 제공, 보육료 자율화, 공보육 전환 정책 실시 시 평가인증 등급이나 점수 이외에 필수조건 충족 등 추가 조건을 요구할 수 있음.

나.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 지원 정책과의 연계 방안

- 기본보조금이나 차등보육료 등 국고지원과의 연계가 필요함.
 - 단기적으로 실시하기 쉬운 1단계 방안부터 점차 수위를 높이는 2~3단계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1단계의 평가인증과 재정지원과의 연계는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등 운영비 지원과 연계하는 것임. 이러한 연계는 이미 부분적으로 채택되고 있음.
- 2단계 방안으로는 만 0~2세 아동 및 장애아 기본보육료 지원과 평가인증제도와 연계함.
 - 우선은 평가인증 참여와 연계하고 점차 평가인증 통과를 지원 조건으로 강화해 감. 그러나 평가인증 점수나 등급에 따른 차별적 지원을 고려하기는 어려움.
 - 평가인증 통과율이 어느 수준 이상이 될 때까지는 평가인증 참여시설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유예기간을 두어 통과와 연계하는 것이 적절함.
- 3단계 중·장기적인 방안으로는 보육바우처와 평가인증을 연계하는 것임.
 - 먼저 평가인증 참여시설에서만, 중장기적으로는 평가인증 통과시설에서만 보육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도록 연계함.

- 평가인증 통과시설과 지원을 연계할 경우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도입 시기를 미리 공지해야 할 것임.

다.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 방안

- 민간 공공형 어린이집 재정지원은 인건비와 유아 기본보조금 지원이 논의됨.
 - 시설장 조사에서는 영아 기본보육료를 지원하고 민간시설 유아보육료 수납한 도액과 보육료 지원 단가 차액을 지원하자는 비율이 영아 기본보육료를 없애고 인건비 지원 방식으로 하자는 비율보다 약 4%p가 높았음.
 - 그러나 유아 기본보육료보다는 인건비 지원 방식이 공공형 어린이집 취지에는 더 적합함. 부모보조금에 대하여 정부가 어린이집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건을 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임.
- 공공형 대상 보육시설이 인증 점수 이외에 충족되어야 할 조건은 국공립보육시설의 덕목을 고려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대상은 보육 정원 15인 이상 어린이집으로 현원이 80% 이상이어야 함.
 - 보육시설 운영을 12시간 종일제로 운영하여야 함.
 - 어린이집 건물 소유형태가 자가이어야 하며, 자가인 경우에도 용자에 대한 월 상환액이 시설 운영비의 5% 이내이어야 함.
 - 보육시설 면적이 영유아보육법 상 기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실외놀이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대표자의 다른 유형의 유사한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중복 운영은 배제함.
 -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시설운영비리 및 아동학대 등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조사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함.
- 공공형 어린이집은 운영의 제 측면을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함.
 - 사후관리로는 매년말 정기평가 및 3년단위 종합평가를 통해 재지정함.
 - 대표자 또는 시설장 변경 및 시설의 매매, 장소 이전, 중대한 행정처분, 시정조치명령 미이행 등의 취소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지정을 취소함. 부당사례로 취소된 시설은 향후 3년간 재지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라. 보육료 규제 완화 어린이집 도입 방안

- 보육료 규제완화 대상은 1안은 특별활동 등 기타 필요 경비만, 제2안은 보육료와 특별활동을 포함한 기타 경비 모두에 자율화를 적용하는 방안임.
 - 규제완화 방법은 현재보다 높은 정도의 상한선을 두는 방안과 일체 상한선을 제시하지 않고 보육시설이 결정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음.
 - 법이나 안내로 규정된 기준 이상으로의 운영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기준에 미달하는 조치들은 허용하지 않음.
- 자율화 적용 대상은 우수 평가인증 이외에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보육시설 운영을 12시간 종일제로 운영하여야 함.
 - 어린이집 건물 소유형태가 자가이어야 하며, 자가인 경우에도 월 상환액이 시설 운영비의 5% 이내이어야 함.
 - 법적 기준 이상의 보육시설 면적과 실외놀이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지역별로 우수보육시설 중 최대 50% 이하까지만 적용함.
- 기타 운영비만 자율화하는 경우에는 영아 기본보조금, 차등보육료 지원은 모두 지원하고, 보육료와 기타 운영비를 자율화할 경우에는 차등보육료만 지원함.
 - 영아 기본보조금을 포기하고 영아 보육료를 자율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완화 어린이집은 유아 중심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음.
- 보육료와 기타 운영비를 모두 자율화하면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받지 않음.
- 사후관리로는 매년말 정기평가 및 3년단위 종합평가를 통해 재지정함. 취소사유 및 처리는 공공형 어린이집과 동일함.
- 기타 사항을 고려함.
 - 보육료를 자율화한다고 영리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육료와 기타 운영비를 모두 자율화할 경우에 사실상 영리성을 거부하기 어려움.
 - 보육료와 기타 필요 경비 자율화 시, 보육료 자체보다 특별활동 비용 상승과 부작용이 우려됨. 그러므로 오전 표준보육과정 운영 원칙은 준수되어야 함.
 - 보육료 자율화가 수용 가능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간 격차 문제가 발생하므로 공공형 보육시설 확보와 함께 추진되어야 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의 핵심은 다양한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와 더불어 부모들의 요구 수준에 맞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 확보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 재정 지원, 시설 운영 주체, 보육인력의 질적 수준, 지도 감독, 평가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이 주를 이루는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적 제고 수단으로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여 2006-2009년 기간 동안 제1차 평가인증을 실시하였다. 2005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06년부터 2009년에 실시한 제1차 평가인증에서 전체 어린이집 35,550개소 중 57.0%인 20,255개소가 인증을 통과하였다.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보육시설은 91.4%, 가정어린이집은 55.5%, 민간 어린이집은 56.1%로 운영주체별 차이가 있다.

대체로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평가인증제도는 일부에서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육시설에 보육서비스의 공급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평가인증에서 제외된 시설들이 아직 40%에 달하며, 인증 기준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평가인증제도를 재정 지원과 연계하기 어려운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정보 공개도 제한적이므로 제도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도 낮다.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운영에 관여한다는 데 대한 신뢰와 더불어 낮은 부모부담으로 부모들의 선호도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국공립보육시설의 대폭 확대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이 좋은 육아인프라 확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그 기준으로 평가인증 결과 활용이 거론되는 것이다.

평가인증제도의 효용성이 낮은 데는 우수 보육시설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 평가인증 참여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수단 부재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고, 부모들의 낮은 인지도는 부모들이 활용할 수 있기에 충분한 정보 제공의 부족도 한 몫을 한다. 따라서 보육시설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수단으로 평가인증을 받도록 유인하는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부모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는 평가인증 통과 여부를 기준으로 우수시설을 가리고 있다. 1차 인증제도에 서는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 유도에 우선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을 기준으로 인증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2011년 4월 경에는 평가인증률이 약 8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므로 평가인증시설 통과는 보편적인 개념이 될 것이다. 따라서 만약 보육재정 지원 등 차별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평가인증 시설들간의 질적 수준 차이를 가려낼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에 서울시와 부산시는 평가인증을 토대로 추가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보육교사, 시설장 및 취사부 인건비를 국공립과 유사하게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를 도입하였다. 상대적으로 부모 부담이 큰 민간보육시설 중 일부를 공공성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을 올리고 부모 부담은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이다. 이러한 지방정부 정책이 턱없이 부족한 공공 어린이집 확대의 대안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도 평가인증 결과를 토대로 공공형 및 자율형 어린이집을 둔다는 기본 방침을 밝히고 있고(대한민국정부, 2010), 2011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한다는 방침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제고 방안으로 평가인증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민간보육시설의 공공형 어린이집 및 보육료 규제 완화 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평가인증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등급화 및 등급화 도입 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며, 공공형 및 자율형 어린이집의 허용 조건 및 지원 범위 등 제반 기준을 검토하여 제도 도입의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는 물론 보육료 규제완화 어린이집 도입도 그 자체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수단으로 주장되고 있으며, 또한 평가인증과의 연계할 경우 평가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다양한 유인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2. 연구 내용

연구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인증 현황을 검토한다. 제1주기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통과시 점수 분포를 검토하고 점수 등급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현황을 검토

하며, 중앙 및 지방정부의 평가인증 결과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인증 편익분석을 실시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서울과 부산에서 실시하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공인 어린이집 사례를 검토한다. 서울과 부산 공인 어린이집 개념, 조건, 지원 수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고, 특히 공인 어린이집에 대한 공급자와 전문가의 인식, 요구 및 수요를 파악한다.

셋째, 영국과 호주의 최근 평가제도의 개선 및 평가 결과 활용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구체적 평가인증 활성화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평가인증 점수 등급화 방안을 제시하고, 평가인증 여부 및 등급별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연계 등 평가인증을 활용한 차별적 처우 등 평가인증 관련 정보 활용성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다섯째, 평가인증 결과를 활용한 구체적 정책방안의 하나로 공공형 어린이집과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민간보육시설의 공공형과 자율형 어린이집으로의 조건과 조건 수용 유인 기제 방안, 적정 수준의 보육서비스 유지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의 행태 변화 예측 및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한다.

3. 연구방법

가. 선행연구 및 문헌, 해외자료 고찰

평가인증 관련 선행 연구를 수집, 분석하고, 호주와 영국 평가 관련 기관을 검색하여 최근의 정책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다.

나. 기존 조사 자료 및 관련 조사자료 활용

첫째, 보육시설평가인증국의 제1주기 보육시설 평가인증 점수 자료를 분석하였다.

둘째,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관련 편익분석 자료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9년도에 수집한 아이사랑카드제도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효과성 평가 연구를 위하여 수집한 부모 대상 설문 자료를 활용하였다.

셋째, 기초 자료로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시설조사 원자료와 보육시설평가인증국의 평가인증 점수 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평가인증시설 인증 점수 등급화의 타당

성 및 적정 기준선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 설문조사

1) 보육시설조사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공형과 보육료 규제 완화인 자율형 보육시설에 대한 가능성 탐색하였다. 조사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일산 서구·덕양구, 대구시 달서구와 수성구에서 실시하였다.

〈표 1-3-1〉 보육시설 조사 결과

구분	전체	민간	가정
경기도 고양시	225	102	123
대구시 달서구·수성구	237	136	101
계	562	238	224

〈표 1-3-2〉 보육시설 대상 조사 문항

구분	문항
I. 보육시설 운영	- 맞춤형 보육 실시여부, 이용아동수, 미실시 사유, 맞춤형 보육의 확대에 대한 의견 - 평가인증 여부, 평가인증 점수, 도움여부 등 실태 -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 비용 범위
II. 평가인증 등급 및 공개 관련 의견	- 점수 공개에 대한 의견 - 평가인증 시설 등급화, 결과공개 찬성, 공개방안, 공개범위 - 평가인증 인센티브 우선순위
III. 공공형과 자율형 어린이집 관련 의견	- 공공형 어린이집 수용 의향, 선정 조건, 정부의 지원금 수준, 정부 지원금 우선순위와 용도 제한 - 자율형 어린이집 신청 의향, 설계 방안,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 결정, 공공형 또는 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전환 의사

조사대상은 지역별로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120개소, 80개소를 목표로, 선정된 구 지역에서 동 지역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전수조사하는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어린이집의 조사 거부 등으로 조사 대상 보육시설이 부족할 경우에 인근 동으로 지역을 늘려가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는 5명의 전문조사원이 20일 동안 담당하였고, 총 562개 시설에서 유효 응답을 확보하였다(표 1-3-1 참조).

조사 내용은 보육시설 운영, 평가인증 등급 및 공개 관련 의견, 공공형과 자율형 어린이집 관련 의견 등이다(표 I-3-2 참조).

2) 전문가 조사

평가인증 관련 정책방안과 공공형 및 자율형 어린이집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와 10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자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평가인증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학계 인사와 평가인증 조력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시·도 및 시·군·구 보육정보센터장을 포함하였다.

조사 내용은 평가인증 등급화 및 공개, 평가인증 결과 활용 방안, 공공형과 자율형 어린이집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표 I-3-3 참조).

조사결과 학계인사 38명, 보육정보센터장 39명으로 총 77명의 유효조사표를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표 I-3-3〉 보육 전문가 대상 조사 문항

구분	문항
I. 평가인증 등급 및 결과 공개 방안	- 평가인증 총점, 영역별 점수 등급 구분 - 평가인증 결과 활용의 충분성, 공개 필요한 항목과 대상 - 평가인증 결과 공개 방법
II. 평가인증 결과 활용 방안	- 평가인증과 재정지원 연계, 적용 시기 - 우수 보육시설에 대한 유효기간 차등화 등 정책
III. 공공형과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방안	-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 도입, 선정 요건, 운영기준, 사후관리, 재정운영, 지역별 또는 시설별 일정 비율 제한 - 자율형 어린이집 수납과 시설 운영기준 완화 찬성여부, 규제 완화 범위, 방법, 비용 지원, 비중 등

라. 평가인증 정책 편익분석

평가인증으로 인한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정책에 대한 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편익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2009년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아이사랑카드제도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효과성 평가 연구를 위하여 수집한 부모 대상 설문 자료 중 시설 만족도 및 지불의사금액에 대한 자료이다. 이 설문조사는 이용 보육시설의 각종 보육환경을 구성하는 총 16개 항목의 질적 개선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5

점 척도로 질문하였고, 이들 항목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부담을 할 의향이 있는지를 설문한 것이다. 조사 자료 규모는 435사례이다.¹⁾

마. 자문회의 운영 및 전문가 회의

학계, 보육시설 시설장, 교사 등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정책 방향 설정의 타당성과 정책대안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중앙 및 지자체 보육담당 공무원, 관련학과 교수, 보육정보센터 종사자 등과의 간담회 개최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4. 선행연구

가. 평가인증 관련 연구

평가인증에 관한 선행연구는 지표 및 운영체제 관련 연구, 종사자 인식 및 평가인증 조력 관련 연구, 부모 관련 연구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1) 지표 및 운영체제 관련 연구

평가인증에 관한 국가정책연구기관 연구로는 1995년에 처음으로 평가기준 및 평가체계 개발 연구(정기원 외, 1995)가 시도되었고 2000년에 평가지표와 운영체제 등 평가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서문희 외, 2000)가 이루어졌다. 이후 정부가 평가인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결정한 이후에는 정부 지원으로 실제 1차 시행에 적용하기 위한 평가지표와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연구(유희정 외, 2004)가 추진되었다.

평가인증제도 도입 이후에는 평가지표의 변별도, 곤란도, 신뢰도 등 양호도와 적절성을 평가하고 평가인증제도의 효과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들(이은혜 외, 2006; 유희정·김은설·최혜선, 2007; 이옥 외 2008)이 추진되었다.

2009년에 육아정책연구소(서문희·김온기·김명순 외, 2009)에서는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 수단으로서의 평가인증 1차 시행을 평가하고, 중장기 발전방안과 제2차 시행시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내용은 평가인증 점수의 운용을 다양화하는 방안,

1) 이 조사의 상세한 내용은 강혜규 외(2009). 아이사랑카드제도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효과성 평가 연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참조

평가인증결과를 단기적으로 영아기본보조금, 중기로 아이사랑카드 가맹과 연계하고 이외에 교재교구비, 환경개선비 등 재정지원과 연계, 통합시스템을 통해 해당 시설의 변동사항 및 위법사항 등을 점검하고, 불시방문, 방문지원, 민원 발생시 사후방문 실시 등 사후관리 강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평가인증 차수나 영역별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 등 평가인증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여 활용도를 높일 것을 제안하였다.

박자연·김희진(2008)의 연구에서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에서 부모참여방법 중 자체 점검위원회의 적절성에 대하여 부모의 대부분 적절하다고 판단하나, 바빠서 실제로 참여하는 부모의 수가 적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평가인증제를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설의 평가인증 여부에 대해 정확히 알리며, 부모가 평가인증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김동례(2007)는 평가인증제의 운영과정과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의 사후 유지관리를 알아본 연구에서 평가인증 영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시점의 수준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50% 이상이라는 하나 시설마다 일부 평가항목이 평가인증 신청 이전단계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 평가인증을 받은 이후 사후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 종사자 인식 및 평간인증 조력 관련 연구

평가인증에 관한 학계 연구는 2001년도 이후에 많이 이루어졌고, 특히 평가인증제도 시범운영 이후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학위논문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평가인증제가 실시된 이후에 수행된 국내 연구들은 주로 평가인증제에 대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이미애·이소은, 2008; 이윤이, 2008; 정덕희, 2007; 탁옥경·배지희, 2007). 대체로 평가인증제에 대한 보육교사와 시설장의 인식은 평가인증제를 경험한 후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결과였다.

평가인증 참여 후 교사들은 효능감과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우리나라 보육의 질이 높아지고 있음에 만족을 느낀다고 하였다(원정아·이진희, 2008). 하은경·김주후·김경란(2008)은 평가인증 참여에 따른 교사의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에서 평가인증을 통하여 교사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보육교사

의 취업과 재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손연(2008)은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받은 영아전담보육시설 교사의 평가인증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연구를 통해 교사들이 평가인증을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인식한다고 하였다. 다만 교사들은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동안 과중한 업무 등 과정상의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요구하였는데 서류의 간소화와 평가인증 결과에 대한 보상으로 시설에 대한 감사 면제,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 같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류수현(2006)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육시설 운영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에서도 표준보육 과정에 따른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보육프로그램 개발 노력과 평가인증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과 이해의 필요,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 보육시설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인자(2007)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대한 참여와 평가결과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한편, 평가인증 지표 및 절차에 대한 연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보육 종사자 뿐 아니라 보육수요자에게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평가인증제 과정상의 재정적, 자체점검 등의 어려움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오민수, 2007; 탁옥경과 배지희, 2007). 이들 연구는 시설장과 교사들이 인정한 평가인증 과정에서 얻은 혜택으로 교육방법과 환경의 개선, 보육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반성, 동료장학활동의 활성화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시설장과 교사들은 평가에 대한 부담, 보육시설의 제한된 조건 및 평가지표 이해와 해석, 업무 과중으로 인한 어려움도 함께 보고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설장과 교사들은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평가지표 교육 및 조력자 등 외부전문가 파견 지원, 보조인력 지원에 관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인증 조력의 유용성도 연구 주제로 다루어졌다. 김인자(2007)와 채혜선(2008)은 평가인증 기간 중 체계적인 조력을 통하여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고, 특히 평가인증 과정 중 시설장과 교사 모두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조력자)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박성진(2005)은 평가인증에 참여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인증제를 위해 보육정보센터가 적극적인 조력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평가인증 준비기간을 1년으로 잡아 2~3개월에 한번씩 각 보육시설의 실정과 교사의 경력 및 수준에 따른 개별적인 조력과 소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조력을 적절히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

였다.

3) 부모 관련 연구

평가인증에 대한 부모의 인식변화를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평가인증 참여를 통하여 보육 전반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나 관심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됨을 보고하고 있다. 평가인증제에 따른 부모의 인식 변화를 살펴본 박자연·김희진(2008)의 연구에 의하면 평가인증제에 참여한 기관의 부모가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의 부모에 비해 보육에 대한 사전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찬우·김언주·민현숙(2008)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실시한 이후 21인 이상 보육시설의 부모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보고하였고, 이정숙(2007)은 평가인증에 참여한 보육시설의 어머니가 참여하지 않은 시설의 어머니보다 보육시설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보육시설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부모들의 인지 정도, 인식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모들의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낮다. 보육시설 중에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이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김영애, 2008),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대해 들 어본 적이 없는 부모가 30~40%에 이르고 이르며, 특히 평가인증 기관이 아닌 보육 시설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들의 인지가 낮다(박자연·김희진, 2008). 또한 평가 인증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인지 뿐 아니라 현재 이용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서,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기관으로 인식하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인데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고 특히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김용인, 2008; 박자연·김희진, 2008).

평가인증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면 평가인증 결과가 이들의 보육시설 선택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경상남도 내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약 77.1%의 부모가 평가인증 여부가 기관을 선택 또는 자녀를 계속 등록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고(심인선, 2007), 반면 현재의 보육시설 선택시 어떠한 사항을 고려하였냐는 질문에 대해서 '기관의 평가인증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다는 응답은 매우 미미하였다(김영애, 2008; 김용인, 2008; 박자연·김희진, 2008). 또한 2009년도에 실시된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행의

평가와 추진방안 연구(서문희 외, 2009)에서는 부모가 아닌 시설장과 교사,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라는 점이 보육아동 모집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시설장의 40%, 교사의 약 60%가 평가인증시설이라는 사실이 보육아동 모집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평가인증의 통과 여부'가 부모의 보육시설 선택, 즉 아동모집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심인선(2007)과 서문희 외(2009)의 연구에서는 평가인증 여부를만 타깃으로 하여 질문을 한 결과이며, 다른 연구들의 경우 집에서 가까워서, 아는 사람의 추천, 원장의 자질, 보육 프로그램 등 보육시설을 선택하는 다양한 기준과 제시된 보기 중 하나에 평가인증 여부를 넣어 보육시설 선택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기준을 응답하게 한 결과이므로 응답의 결과는 차이가 날 수 있고 이에 대한 해석도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보육 비용 편익 관련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강혜규·박세경·원종욱·서문희 외, 2009)은 아이사랑카드로의 제도 전환에 따른 경제성 평가의 일환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기준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이사랑카드제도 도입에 의한 편익은 보육시설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이 편익으로 귀속되는 것을 가정하고 산정하였다. 아이사랑카드제도 도입으로 보육시설의 30%가 질적 개선을 하는 경우 총 1,574.5억원의 순편익이 발생하고, 10%가 질적 개선을 하는 경우는 총 406.9억원의 순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 보육의 공공성 관련 연구

공동육아와 공동체(정병호 외, 2003) 연구에서는 정부의 보육재정 지원이 매우 제한된 시기에 실시된 연구로 보육시설 설치 목적이 사회복지법인과 다른 별도의 보육법인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유아보육법과 공익법인법에 의거하여 민간보육시설도 법적 조건을 충족시키면 정부의 재정지원과 운영관리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인보육시설 지원센터를 마련하여 설치, 전환을 지원하는데, 시설규모는 40~60명을 제안하였으나, 출연 자산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육아정책개발센터(유희정 외, 2006)는 육아지원시설의 공공성을 검토하고 공공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육아지원시설 운영자의 75% 정도가 육아지원시

설을 비영리 시설로 간주한다. 육아지원시설의 공공성 제고 방안으로 투명한 공개 운영, 적절한 관리 감독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을 제안하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법인화 방안으로 법인 출연금 총당 비용 지원, 자산보상 지원, 안정적 운영보장 등을 제시하였다.

II. 보육시설 평가인증 현황과 편익

제2장에서는 제1차와 제2차 평가인증 지표와 운용체계의 차이를 검토하고, 보육시설 평가인증 점수 현황으로 전체적 총점의 분포, 평가인증 총점과 총점을 구성하는 점수들간의 관련성, 평가인증 보육시설의 인증 총점으로 구분한 집단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며, 또한 평가인증 제도의 편익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1. 제1차와 제2차 평가인증 지표와 운용체계의 차이

가. 평가지표 및 기준 점수

제2차 평가인증지표는 2006-2009년 1차 시행의 결과를 토대로 지표를 수정 보완하는 등 고도화하고, 기준점수를 상향 조정하였다.

첫째, 달성도가 높은 지표를 상향 조정하고 유사항목을 통합하였다. 1차 보육시설 평가인증 문항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일부 문항이 달성도 등의 이유로 적절성이 낮은 문항이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며, 영역별 문항수 차이가 커서 조정이 요구되었다(서문희 외, 2009). 이에 40인 이상 시설 지표를 중심으로 보면 달성도가 높은 51개 지표 중 26개 문항은 평정기준을 추가하고 11개 문항은 세부 기준을 상향조정하였으며, 14개 문항은 문항을 통합하였다(표 II-1-1 참조).

〈표 II-1-1〉 제1, 2차 평가인증 평가지표 비교

구분	제1차	제2차	비 고
지표 종류	- 40인 이상, 39인 이하 장애아전담	- 40인 이상, 39인 이하 장애아전담	동일
지표수	- 40인 이상 : 7영역 80항목 - 39인 이상 : 5영역 60항목 - 장애아전담 : 7영역 85항목	- 40인 이상 : 6영역 70항목 - 39인 이하 : 5영역 55항목 - 장애아전담 : 7영역 75항목	· 항목 10개 축소 · 항목 5개 축소 · 항목 10개 축소

둘째,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두 개 항목을 신설하여 교수방법과 문제해결 및 호기심을 장려하였다(표 II-1-2, 표 II-1-3 참조).

셋째, 평가인증 통과 기준 점수를 73.33점에서 75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표 II-1-2〉 40인 이상 시설 평가지표 변경 내용

구분	문항동일	평정기준 조정			신설문항
		평정기준 추가	세부기준 상향	문항통합	
보육 환경	2문항 (대1-9,10)	4문항 (대1-1,2,3,11)	5문항 (대1-4,5,6,7,8)	-	-
운영 관리	2문항 (대2-7,12)	3문항 (대 2-1,4,10)	3문항 (대2-3,9,11)	4문항 (대 2-2,5,6,8)	-
보육 과정	1문항 (대 3-1)	11문항 (대3-2,3,4,5,6,8,9,10,11,12,14)	-	2문항 (대3-7,13)	-
상호 작용과 교수법	7문항 (대4-1,2,3,6,7,8,9)	-	-	2문항 (대4-4,5)	2문항 (대4-10,11)
건강과 영양	2문항 (대 5-8,9)	4문항 (대5-3,7,11,12)	2문항 (대 5-1,4)	4문항 (대5-2,5,6,10)	-
안전	3문항 (대6-2,3,6)	4문항 (대6-7,8,9,10)	1문항 (대 6-5)	2문항 (대6-1,4)	-
합계	17문항	26문항	11문항	14문항	2문항
			51문항		

〈표 II-1-3〉 39인 이하 시설 평가지표 변경 내용

구분	문항동일	평정기준 조정			신설문항
		평정기준 추가	세부기준 상향	문항통합	
보육 환경 및 운영관리	-	6문항 (소1-3,7,8,9,10,11)	1문항 (소1-6)	2문항 (소1-1,5)	2문항 (소1-2,4)
보육 과정	2문항 (소2-1,3)	3문항 (소2-2,7,8)	5문항 (소2-5,6, 9,10,11)	-	1문항 (소2-4)
상호 작용과 교수법	8문항 (소3-1,2,3,5,6,7,8,9)	-	-	1문항 (소3-4)	2문항 (소3-10,11)
건강과 영양	2문항 (소 4-8,9)	5문항(소4-2,3,7,11,12)	2문항 (소4-1,4)	3문항 (소5-5,6,10)	-
안전	3문항 (소5-2,3,6)	5문항 (소5-4,7,8,9,10)	1문항 (소5-5)	1문항 (소5-1)	-
합계	15문항	19문항	9문항	7문항	5문항
			35문항		

나. 평가인증 운영체계

1) 운영체계 개선

평가인증 제2차 시행에서는 평가인증 신청 등 참여 자격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인증 취소 사유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운영체계를 개선하였다.

그동안 평가인증 참여자격을 인가 후 운영기간 1년 이상의 보육시설로 한정하였으나 이를 완화하여 운영기간 제한 없이 모든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 보육시설이 일정 기간 운영하여야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평가인증 진행과정 중 현장관찰 시 현원이 정원의 삼분의 일 이상이 되어야 관찰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인증취소 사항이었던 소재지 변경, 정원 증·감에 따른 시설 환경 변화시 무조건 취소하지 않고 담당자의 확인방문을 통해 질적 수준에 변화가 없을 시 인증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지자체 역할 강화

<표 II-1-4>는 평가인증 과정에서의 지자체가 확인하여야 하는 기본사항의 확대, 변화를 나타낸다.

〈표 II-1-4〉 제1, 2차 기본확인 사항 변경 내용

구분	제1차	제2차	비 고
필수항목	① 정원준수 ② 예·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비 ③ 상해보험 가입	① 정원준수 ② 예·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비 ③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상해, 화재, 배상보험) 가입 ④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	
기본항목		①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② 보육실의 설치기준 ③ 종사자의 배치기준 ④ 종사자의 정기 건강검진 ⑤ 예·결산서 및 재무회계 관련 ⑥ 비상대피시설 설치 ⑦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 민원사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여야 하는 기본 사항은 법적 준수 사항으로 필수항목 4개, 기본항목 7개로, 이를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필수사항은 과거와 비교하여 보험과 행정처분이 강화되었으며, 기본항목으로 보육시설 및 보육실 설치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종사자 건강검진, 예·결산서 및 재무회계 관련, 비상대피시설 설치,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 민원사항 등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기본사항확인도 점수 산출에 새로 포함되었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의 평가인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인증 설명회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평가인증 참여에 따른 법적 준수사항 확인은 지도점검 실적으로 인정하여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성을 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점수비중 조정

1차 평가인증 평가에서 보육전문가들은 점수 배점 비중에 대해서는 자체점검보고서는 하향조정, 현장관찰보고서는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수이었다. 2차 평가인증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인증 점수 산출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체점검보고서의 비중을 25%에서 10%로 낮추고 기본사항 확인을 신설하여 10%를 배정하였으며, 현장관찰보고서 점수를 50%에서 55%로 높였다.

〈표 II-1-5〉 제1, 2차 점수비중 변경 내용

구분	제1차	제2차	비고
자체점검보고서	25%	10%	15% 감소
기본사항확인서	-	10%	10% 신설
현장관찰보고서	50%	55%	5% 증가
심의위원의견서	25%	25%	변경 없음
총계	100%	100%	-

4) 심의 강화

심의내용을 세분화하였다. 보육시설의 특징과 장점, 평가인증지표에 따른 영역별 개선 노력, 보고서에 나타난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우수사례 및 부적절사례, 보고서 간 대비오차에 각각 동일한 배점을 부여하였다.

평가인증 심의결과와 함께 종합평가서를 보육시설에 전달함으로써 향후 보육시설

운영개선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표 II-1-6〉 심의기준 내용

심의기준	배점	심의자료
1. 보육시설의 특징과 장점	5	
2. 평가인증지표에 따른 영역별 개선 노력	5	자체점검보고서
3. 보고서에 나타난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5	기본사항확인서
4. 우수사례 ¹⁾ 및 부적절사례 ²⁾	5	현장관찰보고서
5. 보고서 간 대비오차	5	

주: 1) 우수사례: 실내공기질 측정, 1급 교사가 전체교사의 30% 이상, 1년 이상 근무교사가 전체교사의 70% 이상,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운행, 놀이시설 설치 검사(40인 이상), 취사부 임용(39인 이하)
 2) 부적절사례: 설치기준 위반(인가공간의 용도 무단 전용), 종사자의 근무상황 부적절, 반별 초과보육 허용 범위 초과,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영유아 재원사항 부적절, 혼합반 구성 원칙 무시
 3) 보고서 간 대비오차: 자체점검보고서 총점과 현장관찰보고서 총점 간 차이점수를 의미

2. 제1차 시행 평가인증 보육시설의 점수

가. 보육시설 평가인증 점수 현황

1) 보육시설 평가인증 점수 개요

2006년 1기~2009년 4기까지 1차 평가인증 과정에 참여한 모든 시설들의 결과별 총점 및 연도별 점수는 <표 II-2-1>, <표 II-2-2>, <표 II-2-3>과 같다.

먼저 인증시설 총 평균 점수는 시설유형별로 2.61~2.78점이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87.0~92.7점이다. 인증을 받은 시설도 유형별로 최저 점수가 2.20점이고, 최고 점수는 2.99점으로 인증을 받은 시설들 간에도 점수 격차가 크다. 평가인증을 받은 장애아전담보육시설들의 평균 점수가 2.78점으로 비교적 높다. 인증유보 보육시설은 총점으로는 최고 2.74점까지도 분포한다(표 II-1-1 참조).

2006년 1기부터 2009년 4기까지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의 점수분포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인증시설 중 95점 이상이 11.8%, 90점 이상이 26.2%이고, 반면에 80점 미만은 17.0%이다. 전체적으로 평가인증에 통과한 시설 중 40%가 90점 이상을 받는 등 상당수의 시설이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75점 이하도 4.8%로 평가인증 통과 시설들간의 점수 차이도 적지 않다(표 II-2-2 참조).

〈표 II-2-1〉 평가인증 참여 결과별 총 점수 평균

단위: 점, 개소

인증결과	운영형태	원점수		100점 환산		(수)
		평균 (표준편차)	최하~ 최고	평균 (표준편차)	최하~ 최고	
인증	39인 이하	2.63(.19)	2.20~2.99	87.7(6.36)	73.33-99.72	(10,581)
	40인 이상	2.61(.19)	2.20~2.98	86.9(6.43)	73.33-99.48	(8,889)
	장애아전담	2.78(.13)	2.23~2.99	92.7(4.48)	74.26-99.78	(135)
	전체	2.62(.19)	2.20~2.99	87.4(6.41)	73.33-99.78	(19,605)
인증유보	39인 이하	2.19(.17)	1.72~2.63	73.0(5.82)	57.36-87.50	(334)
	40인 이상	2.26(.16)	1.70~2.74	75.6(5.20)	56.56-91.44	(476)
	전체	2.24(.17)	1.70~2.74	74.6(5.62)	56.56-91.44	(810)
불인증	39인 이하	1.94(.16)	1.63~2.40	64.7(5.40)	54.28-79.89	(37)
	40인 이상	1.93(.17)	1.48~2.36	64.5(5.74)	49.27-78.54	(115)
	전체	1.94(.17)	1.48~2.40	64.5(5.64)	49.27-79.89	(152)

주 : 2006년 1기~2009년 4기까지의 시설을 대상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2010. 3). 내부자료

〈표 II-2-2〉 평가인증 참여시설 결과점수 분포

단위: %(개소)

구분	인증						불인증 73.32점 이하	계(수)
	95점이상	90~94.99	85~89.99	80~84.99	75~79.99	73.33~74.99		
전체비율	11.8	26.2	24.7	18.5	12.2	4.8	1.7	100(20,567)
인증시설 누적비율	12.4	39.9	65.7	84.5	96.2	100.0	na	100(19,605)

주 : 2006년 1기~2009년 4기까지의 시설을 대상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2010. 3). 내부자료

평가인증을 받은 결과별 평균 점수를 연도별로 보면, 연도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표준편차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제도 실시 초기에 비하여 후반부로 오면서 평가인증을 받는 시설들의 점수가 평균에 회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겠다. 시설 유형별로는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의 점수가 40인 이상 및 39인 이하 일반 보육시설에 비하여 평균 점수가 높다(표 II-2-3 참조).

〈표 II-2-3〉 연도별 평가인증 참여시설 총 점수 평균

단위: 점, 개소

구분	인증		인증유보		불인증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2006								
20인 이하 보육시설	2.63	0.21	2.29	0.12	2.00	0.18	2.60	0.24
21인 이상 보육시설	2.60	0.21	2.31	0.11	1.93	0.18	2.56	0.25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2.80	0.17	-	-	-	-	2.80	0.17
2007								
20인 이하 보육시설	2.66	0.20	2.31	0.12	1.88	0.12	2.64	0.21
21인 이상 보육시설	2.65	0.19	2.31	0.12	1.89	0.15	2.64	0.21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2.78	0.13	-	-	-	-	2.78	0.13
2008								
20인 이하 보육시설	2.65	0.19	2.17	0.20	1.89	0.13	2.64	0.20
21인 이상 보육시설	2.60	0.18	2.27	0.15	2.01	0.11	2.58	0.20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2.79	0.08	-	-	-	-	2.79	0.08
2009								
20인 이하 보육시설	2.62	0.19	2.15	0.16	-	-	2.60	0.20
21인 이상 보육시설	2.56	0.18	2.21	0.20	-	-	2.54	0.20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2.75	0.12	-	-	-	-	2.75	0.12

주 : 2006년 1기~2009년 4기까지의 시설을 대상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2010. 3). 내부자료

〈표 II-2-4〉는 평가인증 참여시설의 전체 평균 및 영역별 평균점수를 정리한 표이다. 40인 이상, 39인 이하 시설 모두 상호작용 영역의 점수가 2.8점 이상으로 다른 영역에 비하여 높고, 안전 영역의 평균 점수가 2.7점 미만으로 가장 낮다.

전체 점수가 가장 높은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은 인증유보 및 불인증 시설이 전혀 없고 인증 시설의 점수 분포도 전 영역에 걸쳐 2.66점에서 2.89점으로 전반적으로 평균 점수가 높은 편이나 다른 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안전영역에서 평균점수가 가장 낮으며,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영역은 상호작용과 가족·지역사회와의 협력으로 나타났다.

- 2) 제1차 평가인증에서 총점은 영역별 점수(자체점검보고서 점수 25% + 현장관찰결과보고서 점수 50%)와 심의점수 25%를 합하여 3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이며, 각 영역은 자체점검보고서 점수 25% + 현장관찰결과보고서 점수 50%를 3점으로 환산함.

〈표 II-2-4〉 평가인증 참여 결과별 영역별 평균 점수

단위: 점(개소)

구분	인증		인증유보		불인증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39인 이하 시설								
전체	2.63	0.19	2.19	0.17	2.19	0.17	2.62	0.21
영역1: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2.79	0.12	2.59	0.16	2.59	0.16	2.78	0.13
영역2: 보육과정	2.73	0.19	2.17	0.24	2.17	0.24	2.71	0.22
영역3: 상호작용	2.86	0.13	2.66	0.24	2.66	0.24	2.86	0.14
영역4: 건강과 영양	2.72	0.16	2.42	0.21	2.42	0.21	2.71	0.17
영역5: 안전	2.67	0.17	2.36	0.23	2.36	0.23	2.66	0.18
(수)	(10,581)		(334)		(37)		(4,060)	
40인 이상 시설								
전체	2.61	0.19	2.27	0.16	2.27	0.16	2.58	0.22
영역1: 보육환경	2.78	0.16	2.58	0.23	2.58	0.23	2.76	0.18
영역2: 운영관리	2.72	0.16	2.47	0.20	2.47	0.20	2.70	0.18
영역3: 보육과정	2.74	0.17	2.38	0.27	2.38	0.27	2.72	0.21
영역4: 상호작용	2.81	0.16	2.65	0.22	2.65	0.22	2.79	0.17
영역5: 건강과 영양	2.72	0.17	2.46	0.22	2.46	0.22	2.70	0.19
영역6: 안전	2.58	0.19	2.27	0.22	2.27	0.22	2.56	0.21
영역7: 가족·지역사회와의 협력	2.75	0.19	2.41	0.30	2.41	0.30	2.73	0.22
(수)	(8,889)		(476)		(115)		(6,578)	
장애아전담 시설								
전체	2.78	0.13					2.78	0.13
영역1: 보육환경	2.83	0.14					2.83	0.14
영역2: 운영관리	2.84	0.10					2.84	0.10
영역3: 보육과정	2.87	0.14					2.87	0.14
영역4: 상호작용	2.89	0.13					2.89	0.13
영역5: 건강과 영양	2.82	0.12					2.82	0.12
영역6: 안전	2.66	0.17					2.66	0.17
영역7: 가족·지역사회와의 협력	2.89	0.11					2.89	0.11
(수)	(135)						(107)	

주 : 2006년 1기~2009년 4기까지의 시설을 대상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2010. 3). 내부자료

평가인증결과의 영역별 점수는 영역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평가인증 시설의 영역별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40인 이상의 경우 4영역 상호작용 93.5점, 1영역 보육환경 92.6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6영역 안전은 85.9점으로 나타났다. 39인 이하의 영역별 점수는 3영역 상호작용 95.4점, 1영역 보육

환경 및 운영관리 93.0점으로 높고, 6영역 안전은 89.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두 유형 모두에서 안전 영역의 점수가 타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서, 안전에 대한 교육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함을 나타냈다.

〈표 II-2-5〉 운영형태별 영역 점수: 40인 이상 시설

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하 ~ 최고
전체	86.9 (6.44)	73.40 ~ 99.38
영역1: 보육환경	92.6 (5.26)	73.33 ~ 100
영역2: 운영관리	90.6 (5.37)	73.50 ~ 100
영역3: 보육과정	91.4 (5.64)	73.33 ~ 100
영역4: 상호작용	93.5 (5.20)	73.74 ~ 100
영역5: 건강과 영양	90.6 (5.70)	73.50 ~ 100
영역6: 안전	85.9 (6.32)	73.33 ~ 100
영역7: 가족·지역사회와의 협력	91.7 (6.23)	73.61 ~ 100

〈표 II-2-6〉 운영형태별 영역 점수: 39인 이하 시설

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하 ~ 최고
전체	87.8 (6.37)	73.33 ~ 99.72
영역1: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93.0 (4.12)	75.93 ~ 100
영역2: 보육과정	91.0 (6.24)	73.50 ~ 100
영역3: 상호작용	95.4 (4.23)	73.74 ~ 100
영역4: 건강과 영양	90.6 (5.29)	73.81 ~ 100
영역5: 안전	89.1 (5.68)	73.33 ~ 100

한편 <표 II-2-7>은 인증을 받은 시설들의 자체점검보고서 점수와 관찰점수와의 차이인 대비오차 점수 분포이다. 이 대비오차 점수는 심의위원 점수 25점 중의 일부로 자동 산출된다. 전체적으로 총점 비율간의 차이가 0~5%인 10점이 44.8%이고, 5~7.5%인 8점이 17.6%이다. 반면에 총점 비율간의 차이가 15%이상으로 0점을 받은 시설이 7.0%이며 12.5~15%로 2점을 받은 시설도 6.5%이다. 시설유형별로는 민간보육시설이 0점의 비율이 9.2%, 2점이 8.7%로 다른 유형의 시설에 비하여 다소 높아서, 일부 민간보육시설이 자신 보육시설의 질 평가에서 객관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2-7〉 인증시설의 자체점검보고서와 관찰평가점수와의 대비오차 점수 분포
단위: %(개소)

구분	0	2	4	6	8	10	계(수)
전체	7.0	6.5	11.0	13.1	17.6	44.8	100.0(19,605)
국공립보육시설	3.2	3.4	5.8	10.7	17.2	59.6	100.0(1,508)
법인보육시설	6.5	6.6	10.5	14.0	16.3	46.2	100.0(1,296)
민간보육시설	9.2	8.7	12.7	15.0	16.9	37.5	100.0(8,086)
직장보육시설	2.2	1.1	2.7	11.8	17.7	64.5	100.0(186)
가정보육시설	5.9	5.0	10.5	11.6	18.6	48.4	100.0(8,508)
부모협동보육시설	0.0	9.5	4.8	14.3	9.5	61.9	100.0(21)

주 : 2006년 1기~2009년 4기까지의 시설을 대상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2010. 3). 내부자료

2) 보육시설 평가인증 상위 점수의 분포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 중 점수가 높은 상위 점수 분포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먼저 총점 90점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은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의 40%이다. 전체 보육시설을 기준으로 보면 22.0%에 해당된다. 두 번째로 모든 영역이 모두 90점 이상인 시설은 4,076개소로 전체 보육시설의 11.5%, 인증시설의 20.8%를 차지한다. 세 번째로 평가인증 통과시 총점이 95점 이상인 시설은 2,426개소로 전체 보육시설의 6.8%, 인증시설의 12.4%이다(표 II-2-8, 표 II-2-9 참조).

〈표 II-2-8〉 90점 이상 보육시설 수 및 전체 시설 대비 비율('10. 2월)
단위: 개소,(%)

구분	국공립	국공립 외					소계	총계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전체	1,917	1,470	370	17,359	66	14,368	33,633	35,550
90점 이상	924 (48.2)	585 (39.8)	193 (52.2)	3,937 (22.7)	9 (13.6)	2,225 (15.5)	6,949 (20.7)	7,819 (22.0)
전영역 90점 이상	450 (23.5)	231 (15.7)	82 (22.2)	2,477 (14.3)	3 (4.5)	833 (5.8)	3,626 (10.8)	4,076 (11.5)
95점 이상	389 (20.3)	216 (14.7)	71 (19.2)	1,228 (7.1)	4 (6.1)	518 (3.6)	2,037 (6.1)	2,426 (6.8)

〈표 II-2-9〉 90점 이상 보육시설 수 및 인증시설 대비 비율('10. 2월)

단위: 개소, (%)

구분	국공립	국공립 외						총계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소계	
전체	1,508	1,296	186	8,508	21	8,086	33,633	19,605
90점 이상	924 (61.3)	585 (45.1)	139 (74.7)	3,937 (46.3)	9 (42.9)	2,225 (27.5)	6,274 (18.7)	7,819 (39.9)
전영역 90점 이상	450 (29.8)	231 (17.8)	82 (44.1)	2,477 (29.1)	3 (14.3)	833 (10.3)	3,626 (10.8)	4,076 (20.8)
95점 이상	389 (25.8)	216 (16.7)	71 (38.2)	1,228 (14.4)	4 (19.0)	518 (6.4)	2,037 (6.1)	2,426 (12.4)

〈표 II-2-10〉 시·도별 평가인증 상위 점수 보육시설 비율('10. 2월)

단위: %

구분	총점 90점 이상		전영역 90점 이상		총점 95점 이상	
	전체시설 대비	인증시설 대비	전체시설 대비	인증시설 대비	전체시설 대비	인증시설 대비
전체	22.0	39.9	11.5	20.8	6.8	12.4
서울	22.3	36.7	11.2	18.4	6.7	11.0
부산	22.2	29.4	9.4	12.4	5.4	7.2
대구	18.1	32.4	9.3	16.7	5.8	10.4
인천	24.1	38.3	11.4	18.2	6.1	9.8
광주	27.8	34.8	14.7	18.4	6.9	8.6
대전	23.5	41.5	12.6	22.3	6.3	11.1
울산	24.5	40.3	8.6	14.2	7.6	12.4
경기	17.0	45.3	9.3	24.9	5.5	14.6
강원	31.1	39.9	13.7	17.6	8.1	10.4
충북	30.0	47.6	14.9	23.5	8.9	14.1
충남	21.5	43.2	12.5	25.1	7.6	15.3
전북	31.7	42.6	20.7	27.7	10.6	14.2
전남	21.6	32.8	9.3	14.1	5.2	7.9
경북	31.8	50.5	17.2	27.3	12.4	19.6
경남	17.5	34.4	9.8	19.3	6.3	12.4
제주	34.7	54.0	17.1	26.7	13.1	20.5

전체시설 비율 기준으로 시설유형별로는 총점 90점 이상 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이 48.2%이고 법인 시설과 직장 시설이 40% 수준으로 유사하며, 가정이 22.7% 민간과 부모협동 보육시설이 유사하게 14~15% 수준이다. 모든 영역이 90점 이상인 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이 23.5%이고 직장 시설이 22.2%이며, 법인 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이 14~16% 수준으로 유사하며 민간시설이 5.8%, 부모협동 시설이 4.5%이다. 총점이 95점 이상은 국공립보육시설이 20.3%이고 직장 시설이 19.2%이며, 법인 시설이 14.7%, 가정보육시설이 7.1%, 부모협동 시설이 6.1%이고 민간시설이 3.6%로 가장 낮다(표 II-2-8 참조).

다음 이들 상위 점수를 받은 시설 비율의 시·도별 차이를 보면 총점이 95점 이상인 시설은 시설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제주, 경북, 전북이 10%가 넘는 반면에 전남, 부산, 대구, 경기도는 5%대이다(표 II-2-10 참조).

나. 평가인증 점수의 구성 관련 의견 및 점수들간의 상관성

1) 점수 구성 방법 및 관련 의견

가) 점수 구성 요소³⁾

인증여부를 결정할 점수 산정은 보육시설 자체점검보고서, 현장관찰결과보고서, 심의위원회 의견서가 각각 25%, 50%, 25%가 반영된다. 심의위원 점수 중 10%는 자체점검보고서와 현장관찰보고서와의 대비오차 점수로 자동적으로 산출하여 포함된다.⁴⁾ 이외는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보육시설의 개선 노력, 보육시설의 특·장점 각 5%로 구성된다.

2009년 공무원 심의위원, 현장관찰자 모두 3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의 자료 반영비율 적절성 조사에서 높게 평가된 것은 평가인증 심의위원회 의견서로 87.3%가 적절하다고 하였고, 그 다음은 현장관찰 결과보고서로 66.5%가 적절하다고 하였으며, 가장 적절성이 낮은 것은 자체점검보고서로 57.8%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부적절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의견은 현장관찰보고서는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고 자체점검보고서과 심의위원의견서는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향

3) 가), 나)는 2009년에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실시한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행의 평가와 추진방안 연구(서문희·김은기·김명순 외, 2009)에서 발췌 요약하였음.

4) 총점 비율간의 차이가 0~5%는 10점, 5~7.5%는 8점, 7.5~10%는 6점, 10~12.5%는 4점, 12.5~15%는 2점, 15%이상은 0점을 부여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보다 많았다. 현장관찰자는 특히 현장관찰보고서를 상향 조정하고 자체점검보고서 점수를 하향조정하자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시설장과 교사는 자체점검 점수 반영 제도에 대하여 시설장의 55.6%, 교사의 66.4%가 적절 또는 매우 적절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전문가 평가와 차이를 보였다.

나) 심의위원 점수 구성

심의위원 의견서 점수 25%의 구성과 비율의 적절성에 대한 심의위원 조사결과는 자체점검 결과 및 현장관찰결과와의 대비오차 10%는 67.0%,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5%에 대해서는 62.9%, 보육시설의 개선 노력과 보육시설의 특·장점에 대해서는 71.9%가 적절하다고 하여 전반적인 적절성 평가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대비오차 점수에는 26.8%가 하향 조정을 희망하였으며 일부는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5%에 대해서는 34.0%가 상향 조정을 희망하였고 보육시설의 개선 노력과 보육시설의 특·장점에 대해서는 21.9%가 상향 조정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특·장점에 대해서는 하향조정을 희망한 비율은 소수이지만 특·장점이 질적 수준과 구분하기 어렵고, 또한 글 솜씨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심의의견서 점수 배점이 1, 3, 5점의 세 단계로 주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보다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특히 대학교수 심의위원들에게서 부적절하다는 비율이 높았다. 부적절하다는 응답자는 대안으로 3점과 5점으로 구분하자는 의견, 4점 구분 시도 등을 제시하였다.

2) 점수들간의 관련성

다음은 이러한 평가인증 총점과 구성 점수들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총점에 대한 점수별 반영비율은 자체점검 25%, 현장관찰 50%, 심의 25%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비율이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평가인증 점수인 총점에 대한 신뢰도를 추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분석에 이용된 각 점수는 모두 100점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4가지 종류의 점수들 간의 단순상관계수 산출 결과, 2006년 1기~2009년 4기까지의 인증결과 발표시설 20,567개소의 평가인증 총점은 총점과 자체점검, 현장관찰 및 심의점수와 대부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관계수는 총점과 현

장심의합에서 가장 높고 총점과 자체점검 점수와는 가장 낮았다. 총점과의 상관관계 계수는 현장관찰점수와 0.95, 심의점수와는 0.93의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점수가 높을수록 총점도 높아진다. 그러나 자체점검점수와 총점과의 상관계수는 0.086으로 상관성이 낮다. 이는 2009년 연구에서 공무원 심의위원, 현장관찰자가 심의 자료 반영비율 적절성 조사에서 자체점검보고서의 적절성을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는 점과도 맥을 같이 한다.

한편, 현장심의점수는 자체점검과 $r=-.227$ 의 부적상관을 나타내 자체점검 점수가 높을수록 현장심의 점수는 낮다.

〈표 II-2-11〉 총점과 자체점검, 현장관찰 및 심의점수와의 상관관계

구분	자체점검	현장관찰	심의	현장심의합	총점
자체점검	1				
현장관찰	.142***	1			
심의	-.227***	.799***	1		
현장심의합	-.085***	.924***	.968***	1	
총점	.086***	.949***	.929***	.985***	1

주: n=20,567

3. 평가인증 점수와 시설장 평가에 의한 질적 수준

제3절에서는 평가인증 총점과 시설장 응답으로 파악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간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2009년 보육실태조사 시설조사 결과 3,204개소 자료 중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 1,823개를 확인하여⁵⁾ 평가인증시 실제 총점과 연계하여 실제 총점과 시설장이 응답한 보육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안전, 건강 및 위생, 영양, 가족 및 지역사회 연계 실태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이는 평가인증 점수가 73.3점으로 실제 인증 점수는 100점 가까이까지 그 폭이 넓으므로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들간의 점수에 따라 질적 수준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집단 구분은 총점을 기준으로 95점 이상, 90점 이상 95점 미만, 85점 이상 90점

5) 이는 조사 대상 3,204개소 중 56.9%에 해당됨. 조사 시점이 2009년 4-6인데, 2009년 8월 17일 기준으로 인증에 통과한 시설은 14,031개소로 33,499개소('08. 12월말 기준) 중 41.9%와 비교하면 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율이 다소 높음.

미만, 80점 이상 85점 미만 및 80점 미만으로 구분하였다. 집단간의 비중은 95점 이상이 16.7%, 90점 이상 95점 미만이 30.3%이며 85점 이상 90점 미만이 23.6%, 80점 이상 85점 미만이 17.1%, 80점 미만이 12.4%이었다(표 II-3-1 참조).

<표 II-3-1> 2009년 보육시설실태조사 대상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점수 등급별 분포
단위: %(개소)

구분	비율	(수)
95점 이상	16.7	(304)
90점 이상~95점 미만	30.3	(552)
85점 이상~90점 미만	23.6	(430)
80점 이상~85점 미만	17.1	(311)
73.3점 이상~80점 미만	12.4	(226)
계	100.0	(1,823)

<표 II-3-2>는 보육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안전, 건강 및 위생, 영양, 가족 및 지역 사회 연계 실태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요약이다. 이를 보면 두 가지 특성을 알 수 있다.

첫째, 평가인증 점수별로 나눈 5가지 등급과 시설장이 응답한 서비스 수준간의 차이가 문항별로 차이를 보인다. 특히 표준보육과정 등 프로그램 운영과 가족 및 지역 사회 연계에서는 등급별로 차이가 유의하다는 문항 비율이 높은 반면에 건강 및 위생 영역에서는 등급별 차이가 있는 문항이 소수이다. 즉, 건강 및 위생 영역은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들이 대부분 일정 수준을 모두 유지하지만 표준보육과정, 가족 및 지역사회 연계 영역에서는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들간에도 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평가인증 점수별로 나눈 5가지 등급과 시설장이 응답한 서비스 수준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분석된 문항의 경우에도, 그 내용을 보면 95점 이상과 그 이하 점수 집단이 일관성 있게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고 95점 이하인 집단간에는 문항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일관성 있게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총점을 기준으로 평가인증 시설을 등급화 할 경우에 기준 점수가 95점이 가장 적절함을 시사한다. 기준이 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이 시설장의 응답 결과라는 점에서 95점이 시설장들이 동의, 수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 차이의 기준이 된다고 하겠다.

〈표 II-3-2〉 평가인증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총점 등급별 보육서비스에 대한 시설장 응답의 차이 검증 결과

변인		등급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	비고
보육프로그램 운영			
표준보육 과정 운영	40인 이상	보육과정 정기적 평가 및 반영, 통합적 일과 운영에 있어 등급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그렇다' 응답비율이 1등급에서 가장 많음 ▪ 구체적이고 연계성 있는 보육계획안 수립, 균형 있는 일과 운영은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 적절치 않음
	39인 이하	선택활동에 있어 연령별로 다르게 계획·실행함에 있어 등급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등급이 타등급에 비해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월등히 높음. ▪ 구체적이고 연계성 있는 보육계획안 수립, 균형 있는 일과 운영은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 적절치 않음
영역별 보육활동 자료 구비 정도 및 수행		모든 영역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영역에 있어 '자료가 충분하며 매일 활동한다'에 대한 응답비율이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타 등급간 차이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남. ※ 친사회적 활동 및 일상생활: 자료분석가
영역별 보육프로그램 보유 및 활용 여부		보육프로그램 보유 비율 및 활용 여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보유 비율은 1등급이 타 등급에 비해 월등히 높음.
연령 특성을 고려한 보 육실 공간 구성 (영아, 유아)		영아: 차이 없음 유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타등급간 차이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남.
건강 및 위생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 를 위한 문서화된 절차 유무 및 교사교육		없음	
전염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 및 보호자 공지 여부		없음	
영유아 연령에 따른 예 방접종 여부 확인 및 확인 시기		없음	
영유아 정기 건강검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건강검진 여부, 방법, 단체 검진시 비용 부담 방법

(표 계속)

변인		등급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	비고
청결과 위생, 건강 및 영양 관리	40인 이상	조리실 관리, 놀잇감 관리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장실·세면장, 식수,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손씻기, 영양관리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 적절치 않음
	39인 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 적절치 않음
교실외 공간 청소 담당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등급에서 교사의 청소 비율이 적고 주방 담당인력 및 청소전담인력이 담당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급간식			
식재료 구입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등급에서 위탁업체 활용 비율이 높게 나타남
식단 작성 방법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등급에서 영양사나 담당자가 작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식단표 게시 여부		없음	
보존식 운영 및 게시 여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등급에서 보존식 운영 및 게시 비율이 높게 나타남.
유기농 식재료 사용 여부		없음	
조리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 적절치 않음
조리 담당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등급에서 유자격 취사부 비율이 높게 나타남.
안전(차량 포함)			
안전교육 실시 여부 (2008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교육, 약물오남용교육, 재난대비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실종·유괴 예방방지 교육
안전관리 매뉴얼, 응급 처치 매뉴얼 보유여부		없음	
지난 1년간 안전사고 횟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간 발생한 모든 종류의 안전사고(차량 사고, 화상, 추락 등)별 발생 횟수의 합계를 범주화함(1회, 2회, 3회이상)
비상연락망 유무		없음	
비상연락망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비상연락망을 합산함
안전점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시여부, 실시방법
등하원시 인계과정 규칙에 대한 문서보유 여부		없음	
어린이통학버스 등록차량수		없음	

(표 계속)

변인	등급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	비고
어린이통학버스 미등록 차량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있음	
36개월 미만 영아에 대한 차량보호장구 설치 여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있음	가장 높은 등급(1등급)이 타 등급(2,3,4등급)에 비해 '모두를 대상으로 설치' 비율이 월등히 높음.
차량이용시 36개월 미만 영아에 대한 보호자 동반여부	없음	
가족 및 지역사회 연계		
영아보호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의 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있음	가장 높은 등급(1등급)이 타등급(2,3,4등급)에 비해 보호자와의 의사소통방법의 수가 4개 이상인 비율이 월등히 높음
부모교육프로그램 제공 여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있음	가장 높은 등급(1등급)이 타등급(2,3,4등급)에 비해 부모교육제공 비율이 월등히 높음
연간부모교육개최횟수	없음	부모교육개최횟수를 범주화(3회 이하, 4~6회, 7~10회, 11회이상)
지역사회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	없음	
연평균 지역사회 시설 및 기관 이용 횟수	없음	연평균 보건소,소방서,경찰서,도서관,문화시설,체육시설,보육정보센터,근린공원,기타 시설 이용 횟수
기타 운영		
보육시설운영위원회 구성여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있음	가장 높은 등급(1등급)이 타등급(2,3,4등급)에 비해 보육시설운영위원회 구성률이 월등히 높음
재무회계규칙 준수여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있음	가장 높은 등급(1등급)의 재무회계규칙준수율은 100%에 가까움

다음은 위에서 나타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의 분석결과를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가. 보육프로그램 운영

앞의 표에 제시한 것처럼 평가인증 시설의 보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된 4가지 문항 모두 평가인증 총점 점수 등급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 표준보육과정 운영

정부는 2006년 11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표준보육과정을 마련하였다.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는 2009년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 중 보육과정에 해당하는 지표 항목을 활용하여 보육시설들이 이러한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얼마나 잘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평가인증지표들은 보육시설 규모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 40인 이상/39인 이하 보육시설을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는 바, 평가인증 결과에 따른 등급별로 표준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교차분석하였다.

〈표 II-3-3〉 표준보육과정 운영 - 40인 이상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X ² (df)
보육과정 정기적 평가 및 반영						
전체	1.0	5.2	42.8	51.0	100.0(908)	
1등급	0.0	2.4	29.8	67.9	100.0(168)	42.8(12)***
2등급	0.0	5.3	39.6	55.1	100.0(265)	
3등급	1.8	4.9	48.9	44.4	100.0(223)	
4등급	2.1	6.2	52.1	39.7	100.0(146)	
5등급	1.9	8.5	46.2	43.4	100.0(106)	
통합적 일과 운영						
전체	4.5	8.8	45.0	41.6	100.0(908)	
1등급	1.8	5.3	37.3	55.6	100.0(169)	57.5(12)***
2등급	5.3	5.7	39.0	50.0	100.0(265)	
3등급	3.1	9.9	53.8	33.2	100.0(223)	
4등급	6.2	10.3	54.1	29.5	100.0(146)	
5등급	7.5	17.9	41.5	33.0	100.0(106)	

주: *** $p < .001$

먼저, 40인 이상 시설에 대한 네 가지 지표(구체적이고 연계성 있는 보육계획안 수립, 보육과정 정기적 평가 및 반영, 통합적 일과 운영, 균형있는 일과 운영) 중 '보육과정 정기적 평가 및 반영', '통합적 일과 운영'의 두 가지 지표에서 평가인증 점수 등급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40인 이상 시설에서는 5등급 평가에서 등급이 높을수록 보육과정이 정기적으로 평가되고, 그 결과가 운영에 반영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고, 일과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특히 1

등급의 시설이 '매우 그렇다'에 답한 비율이 높아 타 등급과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2) 영역별 보육활동

2009년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의 '보육환경' 영역 중 보육활동 자료에 대한 지표를 참조하여 총 9개 항목에 대해 자료의 충분성과 활용 정도를 평가한 결과도 평가인증 총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료의 충분성과 활용 정도에 대한 9개 항목 모두에서 평가인증 점수 등급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소근육 활동, 언어활동, 기본 생활습관, 수·과학 활동, 창의적인 음률활동, 창의적인 미술활동, 역할놀이, 쌓기놀이, 영아특화된 활동에 대해 평가인증 점수 등급이 높은 시설일수록 '자료가 충분하며 매일 한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평가인증 점수 1등급 시설은 타등급 시설보다 그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가인증 점수에 따라 활동 자료의 구비 및 수행에는 질적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1등급 시설의 활동 자료 구비 및 수행은 타 등급에 비해 차별화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II-3-4〉 활동자료 구비 정도 및 수행

단위: %(명)

구분	자료 없으며, 거의 하지 못함	자료 조금 부족, 주 2회 이하 실시	자료 어느 정도 있으며, 주 3회 이상 실시	자료 충분, 매일 실시	계(수)	$\chi^2(df)$
대·소근육 활동						
전체	0.3	10.3	47.0	42.4	100.0(1,804)	48.9(12)***
1등급	-	4.7	41.2	54.2	100.0(301)	
2등급	-	9.9	43.8	46.4	100.0(548)	
3등급	0.5	12.4	47.9	39.2	100.0(426)	
4등급	1.0	11.7	52.4	35.0	100.0(309)	
5등급	0.5	12.7	53.6	33.2	100.0(220)	
언어활동						
전체	0.2	5.9	40.8	53.0	100.0(1,803)	23.8(12)**
1등급	0.3	3.3	34.0	62.4	100.0(303)	
2등급	-	7.3	38.3	54.4	100.0(546)	
3등급	0.5	5.4	45.6	48.5	100.0(423)	
4등급	-	8.1	42.4	49.5	100.0(309)	
5등급	0.5	4.1	45.0	50.5	100.0(222)	

(표 계속)

구분	자료 없으며, 거의 하지 못함	자료 조금 부족, 주 2회 이하 실시	자료 어느 정도 있으며, 주 3회 이상 실시	자료 충분, 매일 실시	계(수)	$X^2(df)$
기본생활습관						
전체	0.3	5.6	34.1	60.0	100.0(1,802)	
1등급	-	3.3	28.1	68.6	100.0(303)	19.9(12) [#]
2등급	0.2	6.8	33.1	60.0	100.0(547)	
3등급	0.7	5.5	36.0	57.8	100.0(422)	
4등급	-	6.2	36.4	57.5	100.0(308)	
5등급	0.5	5.4	38.3	55.9	100.0(222)	
수·과학활동						
전체	0.8	13.4	46.1	39.7	100.0(1,795)	
1등급	0.3	8.9	43.7	47.0	100.0(302)	20.2(12) [#]
2등급	0.6	15.7	43.5	40.3	100.0(543)	
3등급	1.2	14.0	48.1	36.7	100.0(420)	
4등급	1.6	14.0	48.4	36.0	100.0(308)	
5등급	0.5	12.2	48.6	38.7	100.0(222)	
창의적인 음률 활동						
전체	0.6	15.5	45.6	38.3	100.0(1,797)	
1등급	0.3	11.6	40.7	47.4	100.0(302)	33.3(12) ^{**}
2등급	0.4	15.2	45.8	38.6	100.0(546)	
3등급	0.2	17.8	45.0	37.0	100.0(422)	
4등급	0.7	19.9	45.1	34.3	100.0(306)	
5등급	1.8	10.9	53.8	33.5	100.0(221)	
창의적인 미술 활동						
전체	0.3	11.7	49.2	38.8	100.0(1,798)	
1등급	-	7.3	45.5	47.2	100.0(303)	27.5(12) ^{**}
2등급	0.2	12.1	47.4	40.3	100.0(546)	
3등급	0.5	14.0	49.3	36.3	100.0(422)	
4등급	0.7	14.7	49.5	35.2	100.0(307)	
5등급	0.5	8.6	57.7	33.2	100.0(220)	
역할놀이						
전체	0.5	7.3	32.8	59.4	100.0(1,802)	
1등급	0.3	3.6	23.4	72.6	100.0(303)	35.8(12) ^{***}
2등급	0.2	7.2	32.7	59.9	100.0(544)	
3등급	0.7	8.0	36.2	55.1	100.0(423)	
4등급	1.0	9.4	33.2	56.5	100.0(310)	
5등급	0.5	8.6	38.7	52.3	100.0(222)	

(표 계속)

구분	자료 없으며, 거의 하지 못함	자료 조금 부족, 주 2회 이하 실시	자료 어느 정도 있으며, 주 3회 이상 실시	자료 충분, 매일 실시	계(수)	$\chi^2(df)$
쌓기놀이						
전체	0.1	3.1	29.3	67.4	100.0(1,788)	28.2(12)**
1등급	-	0.7	21.3	78.1	100.0(301)	
2등급	-	3.5	30.5	66.0	100.0(541)	
3등급	0.2	2.8	32.0	64.9	100.0(422)	
4등급	-	4.9	29.8	65.2	100.0(305)	
5등급	0.5	3.7	31.5	64.4	100.0(219)	
영아 특화된 활동						
전체	5.8	20.5	40.6	33.0	100.0(1,159)	31.0(12)**
1등급	6.3	14.1	38.5	41.1	100.0(192)	
2등급	6.2	19.7	40.9	33.2	100.0(340)	
3등급	7.4	19.3	43.9	29.4	100.0(269)	
4등급	5.3	28.2	31.6	34.9	100.0(209)	
5등급	2.0	22.1	49.7	26.2	100.0(149)	

주: # $p < .1$, * $p < .05$, ** $p < .01$, *** $p < .001$

3)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보유 및 활용

2009년도 보육실태조사에서는 정부가 2007년에 개발하여 보급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각 시설의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보유 여부와 활용 실태를 살펴보았는데, 이를 시설의 평가인증 점수의 등급별로 차이 검증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평가인증 등급별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보유는 등급간 차이가 유의수준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체로 등급이 높은 시설이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보유율이 높았다. 특히, 평가인증 1등급 시설의 보유율이 높아서 2등급이하의 시설이 보유율이 82~85% 수준에 비슷하게 머무르고 있는 것에 비해 92.5%로 보유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부가 보급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이의 실제 활용 여부를 살펴본 결과, 이 또한 시설의 평가인증 등급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여기서는 가장 등급이 낮은 5등급 시설의 보육프로그램 활용률이 타등급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II-3-5〉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보유 및 활용 여부

단위: %(명)

구분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보유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활용 여부			
	그렇다	아니다	계(수)	$X^2(df)$	그렇다	아니다	계(수)	$X^2(df)$
전체	85.4	14.6	100.0(1,730)		94.4	5.6	100.0(1,478)	
1등급	92.5	7.5	100.0(292)	16.6(4)**	94.8	5.2	100.0(270)	8.7(4)#
2등급	85.0	15.0	100.0(528)		96.2	3.8	100.0(449)	
3등급	85.1	14.9	100.0(410)		94.8	5.2	100.0(349)	
4등급	82.6	17.4	100.0(287)		92.0	8.0	100.0(237)	
5등급	81.2	18.8	100.0(213)		91.3	8.7	100.0(173)	

주: # $p < .1$, ** $p < .01$

4) 보육공간 구성

평가인증 보육시설의 점수 등급별로 보육실 공간 구성이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는지에 차이가 있다. 영아와 유아를 구분하여 교차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3-6〉 보육실 공간 구성

단위: %(명)

구분	전혀 고려 안됨	별로 고려 안됨	다소 고려됨	매우 고려됨	계(수)	$X^2(df)$
유아						
전체	0.3	3.1	50.5	46.1	100.0(1,420)	
1등급	0.4	3.9	39.8	55.8	100.0(231)	20.7(12)#
2등급	0.5	3.1	49.4	47.0	100.0(415)	
3등급	0.3	1.8	54.4	43.6	100.0(342)	
4등급	-	3.6	57.9	38.4	100.0(302)	
5등급	0.5	4.5	50.2	44.8	100.0(221)	
영아						
전체	0.5	4.0	52.5	43.0	100.0(1,788)	
1등급	1.3	4.3	44.8	49.5	100.0(299)	20.3(12)#
2등급	0.4	4.8	52.1	42.7	100.0(541)	
3등급	0.5	2.6	55.8	41.2	100.0(425)	
4등급	0.0	3.6	57.9	38.4	100.0(302)	
5등급	0.5	4.5	50.2	44.8	100.0(221)	

주: # $p < .1$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육실 공간을 구성함에 있어 각 시설의 평가인증 점수 등급

별로 영아와 유아 모두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육실 공간구성을 하였는지는 시설의 평가인증 등급간 차이를 보였다.

즉, 평가인증 등급이 높은 시설일수록 보육실 공간 구성에 있어 유아의 특성을 '매우 고려하였다'라는 비율이 높았고, 특히 1등급 시설의 경우 그 비율이 타등급 시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나. 건강, 청결 및 위생

평가인증 보육시설의 건강관리는 총점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위한 문서화된 절차 유무 및 교사교육, 전염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 및 보호자 공지 여부, 영유아 연령에 따른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확인 시기, 영유아 정기 건강검진 네 가지 문항 모두 차이가 없다.

한편 보육시설의 청결과 위생에 관해 40인 이상 시설과 39인 이하 시설에 대해 각각 6가지 항목에 대하여 평가인증 점수 등급을 연동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는데, 40인 이상 시설에 있어 6가지 항목 중 조리실, 급식설비, 식기류, 식자재, 배식관리가 청결하고 위생적인지의 한 가지 문항만 등급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3-7〉 청결과 위생 - 40인 이상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chi^2(df)$
조리실: 급식설비, 식기류, 식자재, 배식관리가 청결하고 위생적						
전체	-	-	19.4	80.6	100.0(911)	
1등급	-	-	11.0	89.0	100.0(173)	23.1(4)***
2등급	-	-	15.0	85.0	100.0(266)	
3등급	-	-	24.2	75.8	100.0(223)	
4등급	-	-	29.0	71.0	100.0(145)	
5등급	-	-	21.2	78.8	100.0(104)	

주: ** $p < .001$

먼저 등급이 높은 시설일수록 조리실, 급식설비, 식기류, 식자재, 배식관리가 청결하고 위생적인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1등급 시설의 경우 90% 가까이 조리실, 급식시설, 식기류, 식자재, 배식관리가 매우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답하여 타등급 시설에 비해 주방의 청결, 위생관리가 철저한 것으로 사료된다.

보육시설에서는 영유아와 종사자의 건강 및 위생관리를 위해 실내공기 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며, 2008년 1월부터 「다중이용시설 등 공기질내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내공기 질 유지기준, 권고관리기준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에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시설조사에서는 해당 보육시설이 이에 관한 사항을 알고 있는지 조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평가인증 점수를 등급화 한 자료와 연동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내공기 질 측정대상이 되는 어린이집 중 이의 인지율은 약 41%에 불과하였으나 인지율의 차이는 평가인증 등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점수 등급이 높은 시설일수록 그 시설이 '실내공기 질 측정 대상 어린이집'임을 인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특히 1등급 시설의 경우 2등급 시설이 평균 수준인 42.3%의 인지율을 보였음에 반해 이보다 약 8%가량 높은 인지율을 보여 1등급과 타등급간의 인지율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3-8〉 실내공기 질 측정 대상 어린이집 인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알고 있음	모름	계(수)	$X^2(df)$
전체	41.2	58.8	100.0(1,805)	
1등급	50.5	49.5	100.0(801)	18.2(4)**
2등급	42.3	57.7	100.0(551)	
3등급	39.2	60.8	100.0(424)	
4등급	34.2	65.8	100.0(307)	
5등급	39.6	60.4	100.0(222)	

주: ** $p < .01$

보육시설에서 교실 이외의 공간 청소를 주로 담당하는 사람도 평가인증 총점 등급별 차이를 나타냈다. 즉, 등급이 낮은 시설일수록 보육교사나 시설장이 청소를 담당한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1등급 시설의 경우 청소만 담당하는 별도 인력이 있는 비율이 타등급 시설보다 현저히 높은 특징을 보였다. 즉, 1등급 시설의 경우 타등급 시설에 비해 비교적 청소에 대해서도 별도 인력을 갖춘 비율이 높는데, 이를 통해 보육교사나 시설장이 이 일을 겸임하여 하는 것보다는 별도 인력을 두는 것이 청소 관리가 더 잘 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3-9〉 교실 외 공간의 청소 담당

단위: %(명)

구분	보육 교사	주방 담당 인력	시설장	청소만 담당하는 별도 인력	장기 실습생 또는 보조 인력	기타	계(수)	$X^2(df)$
전체	63.0	10.8	11.1	7.9	1.2	6.1	100.0(1,794)	
1등급	54.4	12.5	9.1	12.8	2.0	9.1	100.0(296)	33.2(20)*
2등급	62.8	11.2	11.4	7.5	0.9	6.2	100.0(545)	
3등급	63.9	10.0	11.2	7.8	1.7	5.5	100.0(421)	
4등급	66.1	9.1	12.7	5.9	1.0	5.2	100.0(307)	
5등급	68.9	11.1	10.7	4.9	0.4	4.0	100.0(225)	

주: * $p < .05$

다. 급간식 및 영양 관리

2009년도 보육실태조사에서 실시한 아동의 건강 및 영양관리에서 주요 변인을 평가인증 점수 등급과 연동하여 교차분석한 결과 식재료 구입처, 식단작성방법, 보존식 운영 여부, 보존식 게시 여부에서 등급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농 재료 사용은 차이가 없었다.

〈표 II-3-10〉 식재료 구입처

단위: %(명)

구분	채재 시장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	위탁 업체	개인 사업자	일정하 지 않음	자체 조달	기타	계(수)	$X^2(df)$
전체	9.8	65.3	15.1	2.5	3.0	0.6	3.7	100.0(1,811)	
1등급	7.3	58.1	21.3	3.7	2.3	1.3	6.0	100.0(301)	48.2(24)**
2등급	8.2	64.9	16.7	2.5	2.7	0.4	4.5	100.0(550)	
3등급	10.3	65.3	15.5	2.3	3.5	0.7	2.3	100.0(426)	
4등급	11.7	70.6	10.0	1.6	3.6	0.3	2.3	100.0(309)	
5등급	13.3	68.9	8.9	2.2	3.1	0.4	3.1	100.0(225)	

주: ** $p < .01$

먼저, 식재료 구입처는 대체로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시설이 많지만, 그 이용률은 시설의 등급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채재시장도 등급이 낮은 시설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1등급 시설의 경우 다른 등급 시설에 비해 '위탁업체 이용'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식단 작성 방법은, 대체로 보육정보센터 자료를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등급간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영양사가 작성한다는 비율은 등급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반면 시설장이 작성한다는 비율은 등급이 낮은 시설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 평가인증 점수가 낮은 시설에서 비전문가에 의해 식단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표 II-3-11〉 식단 작성 방법

단위: %(명)

구분	보육정보 센터 자료 그대로	센터자료를	센터자료를	시설장 이 작성	영양사 가 작성	기타	계(수)	$X^2(df)$
		교사나 담당자 수정 보완	시설장이 수정 보완					
전체	20.3	31.8	31.1	2.9	10.2	3.7	100.0(1,822)	
1등급	22.0	30.9	27.3	2.6	12.5	4.6	100.0(304)	37.5(15)*
2등급	21.1	29.8	32.8	1.3	11.1	4.0	100.0(551)	
3등급	21.6	28.1	31.9	3.0	10.5	4.9	100.0(430)	
4등급	16.7	38.9	31.2	3.5	7.4	2.3	100.0(311)	
5등급	18.6	35.4	30.1	5.8	8.4	1.8	100.0(226)	

주: ** $p<.01$

〈표 II-3-12〉 보존식 운영 및 게시 여부

단위: %(명)

구분	운영				게시			
	그렇다	아니다	계(수)	$X^2(df)$	그렇다	아니다	계(수)	$X^2(df)$
전체	57.2	42.8	100.0(1,803)		66.6	33.4	100.0(1,022)	
1등급	62.6	37.4	100.0(302)	15.9(4)**	65.8	34.2	100.0(187)	11.6(4)*
2등급	59.9	40.1	100.0(544)		63.6	36.4	100.0(324)	
3등급	58.6	41.4	100.0(425)		62.4	37.6	100.0(245)	
4등급	49.5	50.5	100.0(307)		76.2	23.8	100.0(151)	
5등급	51.6	48.4	100.0(225)		73.0	27.0	100.0(115)	

주: * $p<.05$, ** $p<.01$

또한 평가인증 점수 등급별로 각 시설의 보존식 운영 여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등급이 높은 시설일수록 보존식을 운영하는 비율이 높았고 특히 1등급 시설은 60% 이상이 보존식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존식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 보존식을 게시하는지의 여부에서는 가장 등급이 낮은 4, 5등급 시설에서의 오히려 보존식 게시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3-13〉 자체 조리시 조리 담당자

단위: %(명)

구분	유자격 취사부	무자격 취사부	시설장	교사	영양사	기타	계(수)	$\chi^2(df)$
전체	44.8	24.8	27.5	1.1	0.4	1.3	100.0(1,788)	
1등급	54.7	24.0	19.0	1.3	0.3	0.7	100.0(300)	36.4(20)*
2등급	46.7	22.3	28.6	1.1	0.6	0.7	100.0(542)	
3등급	43.7	25.7	28.0	1.0	0.2	1.4	100.0(421)	
4등급	39.7	26.2	31.1	1.0	-	2.0	100.0(305)	
5등급	35.9	28.6	30.5	1.4	0.9	2.7	100.0(220)	

주: * $p < .05$

음식의 조리 방법에 있어서는 자체 조리한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자체 조리시에 조리담당자가 누구인지를 분석한 결과, 시설 등급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유자격 취사부의 비율에서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유자격 취사부가 조리를 담당하는 비율이 시설의 등급이 높을수록 높았으며, 특히 1등급 시설의 경우 2등급 이하의 시설에 비해 현저히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라. 안전(차량운행)

어린이집의 안전관리는 차량운행 관련 문항을 포함하여 총 11개 문항으로 조사하였는데 단 2개 문항에서만 평가인증 점수 등급별 차이를 보였다. 이는 어린이통학버스 등록 여부와 36개월 미만 영아에 대한 차량 보호장구 설치여부이다(표 II-3-14, 표 II-3-15 참조).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해당 차량을 등록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5등급 시설을 제외하고 등급이 높은 시설일수록 어린이통학버스 미등록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차량관리와 관련해 36개월 미만 영아에 대한 차량 보호장구 설치여부는 점수 등급이 높을수록 '모두를 대상으로 차량보호장구를 설치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1등급 보육시설의 경우 30.6%로 타 등급 시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II-3-14〉 어린이통학버스 미등록차량수

구분	단위: %(명)			$\chi^2(df)$
	없음	있음	계(수)	
전체	58.9	41.1	100.0(1,136)	11.0(4)*
1등급	69.2	30.8	100.0(143)	
2등급	61.4	38.6	100.0(324)	
3등급	56.0	44.0	100.0(282)	
4등급	53.5	46.5	100.0(226)	
5등급	57.1	42.9	100.0(161)	

주: * $p < .05$

〈표 II-3-15〉 36개월 미만 영아에 대한 차량 보호장구 설치여부

구분	단위: %(명)				$\chi^2(df)$
	모두를 대상으로 설치	일부 설치	설치하지 않음	계(수)	
전체	20.5	56.0	23.5	100.0(990)	21.6(8)**
1등급	30.6	49.2	20.2	100.0(124)	
2등급	20.1	60.8	19.1	100.0(283)	
3등급	19.5	50.2	30.3	100.0(251)	
4등급	17.3	61.8	20.9	100.0(191)	
5등급	18.4	54.6	27.0	100.0(141)	

주: ** $p < .01$

마. 가족 및 지역사회 연계

2009년도 보육실태조사에서 조사한 부모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의사소통에 대한 5개 문항을 시설의 평가인증 점수 등급을 연동하여 평가인증 등급별 부모의 이용편의 서비스 제공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두 문항에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시설들이 영유아의 보호자들과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들(연락장, 전화, 이메일, 직접대면, 홈페이지 등)의 수가 시설의 평가인증 점수 등급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평균적으로는 3가지의 의사소통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나, 1등급 시설의 경우는 4가지의 의사소통 방법을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고 또한 다른 등급의 시설에 비해 그 비율이 높았다. 이밖에도 1등급 시설은 5가지, 6가지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타등급 시설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여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즉, 1등급 시설의 경우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방법을 다각화하여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더 원활히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II-3-16〉 영유아보호자들과의 의사소통 방법 수

구분	단위: %(명)						계(수)	$\chi^2(df)$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전체	1.5	5.3	49.1	33.9	9.1	1.1	100.0(1821)	51.2(20)***
1등급	0.3	4.3	37.8	41.1	13.8	2.6	100.0(304)	
2등급	2.0	4.5	52.5	30.7	9.4	0.9	100.0(551)	
3등급	1.6	5.4	49.2	35.9	6.8	1.2	100.0(429)	
4등급	1.0	6.8	55.3	28.9	8.0	-	100.0(311)	
5등급	2.7	6.2	47.8	35.0	7.5	0.9	100.0(226)	

주: *** $p < .001$

다음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비율도 등급별로 차이가 난다. 전반적으로 약 82%의 보육시설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제공 비율이 높은 편이었는데, 총점 등급이 높은 시설일수록 부모교육을 제공한다는 비율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1등급 시설의 경우 2~5등급에 비해 제공한다는 비율이 월등히 높아서 90%에 가까운 비율을 나타낸 반면 3~5등급은 평균에 못 미치는 비율만이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17〉 부모교육프로그램 제공 여부

구분	단위: %(명)			계(수)	$\chi^2(df)$
	제공함	제공하지 않음			
전체	81.8	18.2		100.0(1823)	16.7(4)**
1등급	88.8	11.2		100.0(304)	
2등급	82.2	17.8		100.0(552)	
3등급	80.2	19.8		100.0(430)	
4등급	76.5	23.5		100.0(311)	
5등급	81.4	18.6		100.0(226)	

주: ** $p < .01$

바. 투명성 및 운영 공개

1)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평가인증 점수 등급별 보육시설운영위원회 구성 여부를 교차분석한 결과, 1등급 시설의 운영위원회 구성률이 타 등급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시설의 연간 운영위원회 개최 횟수 역시 총점 등급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개최 횟수가 0회인 경우와 1~2회, 3~4회, 5회 이상인 경우로 범주화하여 등급별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대체로 등급이 높은 시설이 등급이 낮은 시설에 비해 개최횟수가 많은 시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3등급 이상 시설의 경우 연간 1~2회 개최하는 경우가 70%이상으로 타 등급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였고, 전혀 개최하지 않은 경우도 4, 5등급은 3% 내외에 이르러 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짐작되었다.

〈표 II-3-18〉 보육시설운영위원회 구성 여부 및 구성시 개최 빈도

단위: %(명)

구분	구성여부			구성시 회의 개최 빈도				
	그렇다	아니다	계(수)	0회	1~2회	3~4회	5회이상	계(수)
전체	62.6	37.4	100.0(1,823)	1.5	69.4	24.0	5.1	100.0(1,121)
1등급	68.8	31.3	100.0(304)	-	64.9	29.7	5.4	100.0(202)
2등급	60.5	39.5	100.0(552)	0.6	64.8	29.4	5.2	100.0(330)
3등급	64.9	35.1	100.0(430)	1.8	70.6	23.5	4.0	100.0(272)
4등급	58.5	41.5	100.0(311)	3.3	77.2	13.3	6.1	100.0(180)
5등급	61.1	38.9	100.0(226)	2.9	74.5	17.5	5.1	100.0(137)
$\chi^2(df)$	9.3(4) [#]			33.2(12) ^{**}				

주: # $p<.1$, ** $p<.01$

2) 재무회계 규칙 준수

보육시설의 재무회계규칙 준수여부를 평가인증 점수 등급별 차이가 있는지 교차 분석한 결과, 특히 1등급 시설의 경우 재무회계규칙 준수율이 100%에 가까운 것으로 그 이하 등급과 차이를 나타냈다.

〈표 II-3-19〉 재무회계규칙준수여부

단위: %(명)

구분	준수하고 있다	준수하고 있지 않다	계(수)	$\chi^2(df)$
전체	97.3	2.7	100.0(1811)	9.5(4) [#]
1등급	99.7	0.3	100.0(303)	
2등급	97.1	2.9	100.0(550)	
3등급	96.3	3.7	100.0(428)	
4등급	96.4	3.6	100.0(305)	
5등급	97.8	2.2	100.0(225)	

주: # $p<.1$

4. 평가인증제도의 편익

가. 경제성평가의 목적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어 2009년 말까지 총 20,402개 보육시설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20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이중 국고지원금이 110억 그리고 자체수입이 약 95억원이었다.

평가인증제도는 도입과 운영에 국고와 자체수입이 투입된 공공사업인 만큼 사업의 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경제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용자 또는 국민전체의 편익 증대에 있다. 인증제도가 창출하는 각종 편익이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 이용자에게 전달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경제성평가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보육시설인증제도에 투입된 총예산과 인증제도의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가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경제성분석을 실시하였다.

나. 경제성 평가의 방법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편익비, 내부수익률분석 등이 있으며, 이들 방법의 차이는 여러 가지 대안을 비교할 수 있는가 없는 가로 구분될 수 있다.

1) 순현재가치방법(Net Present Value)을 이용한 비용·편익분석

통상적으로 비용·편익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순현재가치(NPV)를 사용하는 것이다. 수익(편익)에서 비용을 감한 값의 현재가치가 0 보다 크거나 작은 경우에 따라 분석대상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즉, 순현재가치방법은 수익에서 비용을 감한 값의 절대값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NPV = \sum_{t=1}^n \frac{B_t - C_t}{(1+r)^t} \dots\dots\dots 1)$$

B_t : t 시점의 편익, C_t : t 시점의 투입비용, r : 할인율(이자율)

비용과 편익이 수년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비용과 편익을 할인율(주로 이자율, 또는 물가상승률)로 현재가치화 하여 총합을 구한 다음 두 값을 비교하게 된다.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경우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2) 비용편익비(Cost Benefit Ratio: CBR)

편익의 총현재가치와 비용의 총현재가치와의 비교에 의해 산출한다. 산출된 비용편익비가 1보다 큰 경우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CBR = \frac{B}{C} = \frac{\sum_{t=1}^n B_t}{\sum_{t=1}^n C_t} \quad \dots\dots\dots 2)$$

3)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내부수익률의 경우, 투자대안의 수익률을 상호 비교하여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다. 즉, 현재가치(NPV)를 0으로 만드는 수익률 r^* 를 구하는 방법이다. 편익이 비용 보다 크다는 것을 가정하는 경우, 높은 할인율로 현재가치가 0이 된다는 것은 그 만큼 현재가치편익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IRR = \sum_{t=1}^n \frac{B_t - C_t}{(1 + r^*)^t} = 0 \quad \dots\dots\dots 3)$$

여러 투자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내부수익률(IRR)이 가장 높은 대안을 선택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복수의 대안에 대한 비교분석의 경우에 가장 적합하다.

편익과 비용의 절대규모 보다는 각기 다른 대안의 수익률을 비교하여 경제성이 가장 높은 사업계획을 선택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공공사업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단일 계획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방법 중에서 순현재가치를 이용한 비용편익분석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다. 비용과 편익의 계산

1) 비용의 계산

가) 평가인증의 연도별 소요예산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에 투입된 예산의 연도별 집행금액은 <표 II-4-1>과 같다.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한국보육진흥원의 평가인증사무국 운영예산이다. 평가인증사무국이 2005년 이래 평가인증사업을 위해 투입하는 예산내역은 결산 기준으로 총 205억 3천만원이고, 이 중 53.9%인 110억 6천만원은 국고 지원이며 94억 7천만원은 자체수입으로 충당되었다.

<표 II-4-1> 인증제도 도입 및 유지를 위한 연도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총계
예산 기준	합 계	835	2,720	4,413	5,678	6,026	19,672
	국고지원액	600	1,580	2,370	3,369	3,401	11,320
	자체수입	235	1,140	2,043	2,309	2,625	8,352
결산 기준	합 계	773	2,559	4,850	5,945	6,403	20,530
	국고지원액	600	1,580	2,370	3,109	3,401	11,060
	자체수입	173	979	2,480	2,836	3,002	9,470

- 주: 1) 결산기준에서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 제외
 2) 당초 08년도 국고 예산은 3,369백만원이었으나, 정부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3,109백만원으로 집행됨
 3) '07년부터는 전년도 인증수수료 수입 중 사업량 이월에 따라 함께 차기년도에 이월되는 전기이월수수료 수입예산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0). 내부자료

평가인증사무국의 인증관련 예산과는 별도로 시설이 인증준비과정에서 투입한 비용이 있다. 평가인증사무국의 자체설문조사에 따르면 2009년까지 4기까지 인증을 받은 시설 19,498개소의 평균 인증 준비 비용은 585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⁶⁾ 이 금액을 연도별 인증 시설수에 적용하면 인증에 투입된 시설의 투자금액이 계산된다.

6) 이는 질문지 조사로 비용별 급간을 나누어서 선택하도록 하였음. 비용급간은 ① 없음 ② 100만원 미만 ③ 1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④ 4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⑤ 7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⑥ 1,000만원 이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응답백분률 분포는 각각 0.8%, 3.9%, 29.7%, 26.7%, 17.8%, 21.1%임. 구간별로 중간 값을 적용하여 평균을 구하면 585만원임

〈표 II-4-2〉 인증제도 도입 및 유지를 위한 연도별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연도	인증시설수	투자비용(만원)	현재가치비용(2009년기준)
2005~2009	20,402	585	119,351
2010	7,303	585	42,722
2011	7,303	585	42,722
2012	7,303	585	42,722
2013	7,303	585	42,722
2014	7,303	585	42,722
2015	7,303	585	42,722
총계			375,783

주: 1) 인증시설수는 2009년 실적이 2015년까지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였음.

2) 시설당 투자비용은 2009년 수준인 585만원이 실질가치로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였음.

나) 비용계산의 기간 및 할인율

비용과 편익의 계산기간은 투입되는 예산과 편익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편익은 대체적으로 매년 균등하게 창출되나, 비용은 연도별로 큰 격차가 나는 경우가 많다. 비용이 연도별로 차이나는 것은 대형 공공사업의 경우, 고정비용성격의 시스템구축과 같은 비용이 사업초기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시스템구축과 같은 고정비용성격의 예산이 사업초기에 투입된 경우, 비용과 편익의 계산기간은 고정비용의 감가상각기간을 계산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보육평가 인증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대형시스템구축 등과 같은 비용보다는 매년 평가인증대상 시설수에 비례하여 예산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기간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용과 편익의 계산기간을 편의상 10년으로 산정하였다. 평가인증사업이 안정되는 기간을 10년으로 보고 10년간 비용과 편익의 규모를 계산하기로 하였다. 또한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화에 필요한 할인율은 편의상 5%로 정하였다.

다) 연도별 평가인증비용의 현재가치

2009년 이후의 비용은 2009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2009년 이전 금액은 할인율(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2009년도 금액으로 환산하였다. 인증사무국의 평가인증관련 예산의 2009년 현재가치는 61,405백만원으로 계산되었고 이 금액에 시

설의 투자비용의 2009년도 현재가치 총계인 375,783백만원을 합치면 총 비용은 437,188백만원으로 추계된다.

〈표 II-4-3〉 연도별 비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경상비용	현재가치비용(2009년기준)
2005	773	986
2006	2559	3110
2007	4850	5614
2008	5945	6554
2009	6403	6723
2010	6403	6403
2011	6403	6403
2012	6403	6403
2013	6403	6403
2014	6403	6403
2015	6403	6403
총계	58,948	61,405

주: 1) 2010년 이후 예산은 2009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2) 2010년 이전과 이후에 투입된 예산은 할인율 5%를 적용하여 2010년 기준 현재 가치화하였음.

2) 편익의 계산

가) 평가인증의 평가항목

인증제도의 편익은 보육시설의 질적 개선으로 나타날 것이다.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보육시설은 인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완을 실시할 것이고 이로 인한 효과는 이용자의 편익으로 실현될 것이다. 평가인증에 포함되는 평가항목은 시설규모에 따라 다르다. 40인 이상 시설의 평가항목은 6개영역 7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9인 이하 시설인 경우 5개영역 5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균적으로 볼 때,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과 받지 않은 시설은 이들 항목에서 질적 수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표 II-4-4〉 40인 이상 시설의 평가항목

영역	하위영역
영역 1. 보육환경(11항목)	가. 보육시설 환경 (3항목) 나. 보육활동 자료 (5항목) 다. 보육지원 환경 (3항목)
영역 2. 운영관리(12항목)	가. 시설의 운영관리 (3항목) 나. 보육인력 (3항목) 다. 가족과의 협력 (4항목) 라. 지역사회와의 협조 (2항목)
영역 3. 보육과정(14항목)	가.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 (7항목) 나. 보육활동 (7항목)
영역 4. 상호작용과 교수법(11항목)	가. 일상적 양육 (3항목) 나. 교사의 상호작용 (6항목) 다. 교수법 (2항목)
영역 5. 건강과 영양(12항목)	가. 청결과 위생 (8항목) 나. 질병관리 (2항목) 다. 급식과 간식 (2항목)
영역 6. 안전(10항목)	가. 실내의 시설의 안전 (5항목) 나. 영유아의 안전보호 (5항목)

〈표 II-4-5〉 39인 이하 시설의 평가항목

영역	하위영역
영역 1.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11항목)	가. 보육시설 환경 (3항목) 나. 시설의 운영관리 (3항목) 다. 보육인력 (3항목) 라. 가족과의 협력 (2항목)
영역 2. 보육과정(11항목)	가.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 (4항목) 나. 보육활동과 자료 (7항목)
영역 3. 상호작용과 교수법(11항목)	가. 일상적 양육 (3항목) 나. 교사의 상호작용 (6항목) 다. 교수법 (2항목)
영역 4. 건강과 영양(12항목)	가. 청결과 위생 (8항목) 나. 질병관리 (2항목) 다. 급식과 간식 (2항목)
영역 5. 안전(10항목)	가. 실내외 시설의 안전 (5항목) 나. 영유아의 안전보호 (5항목)

나) 이용자설문조사

위의 <표 II-4-4>와 <표 II-4-5>의 평가인증항목에 대해 인증기관과 비인증기관 간에 질적 수준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지를 객관적으로 가늠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 질적 수준의 차이가 이용자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하는지는 인증결과만으로 가늠하기 어려우며 인증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가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보육시설 이용자 설문조사 자료⁷⁾에 포함된 시설만족도 및 지불의사금액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인증에 따른 편익을 화폐가치화 해 보았다. 설문조사는 현재 이용하는 보육시설의 각종 보육환경을 구성하는 총 16개 항목의 질적 개선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5점 척도로 질문하였고, 이들 항목의 질적인 개선에 대해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부담을 할 의향이 있는지를 설문한 것이다. 설문조사의 16개 항목과 평가인증의 55~70개 항목과는 일치하지 않지만 부분집합으로 볼 수 있어 평가인증의 편익을 추정할 수 있는 대리 변수는 될 수 있다. 이용자 설문조사는 아이사랑카드 도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고 시·군·구의 보육료 지원 전담공무원이 추천한 보육시설이용자 1,177명에게 설문지를 송부하였고 최종 회수된 435사례를 분석한 것이다. 이들 이용자들의 보육시설 종류별 구분은 <표 II-4-6>과 같다. 총 435명의 응답자중 민간시설이용자가 149명으로 34.3%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국공립시설로 121명이다.

<표 II-4-6> 인증여부에 대한 이용자의 응답구분

단위: 개소, %

시설유형	인증시설	비인증	모르겠다	총계	시설유형별 이용률
국공립	101	5	15	121	27.8
법인	83	0	14	99	22.8
민간	96	19	34	149	34.3
가정	40	12	14	66	15.2
합계	320	36	79	435	100

주: 무응답은 “모르겠다”에 포함시켰음

설문조사에서 평가인증여부는 이용자의 인지에 의존하고 있다. 이용자가 자신이

7) 강혜규 외(2009). 아이사랑카드제도 도입의 체계구축 및 효과성 평가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용하고 있는 시설의 평가인증여부에 대한 응답구분은 <표 II-4-6>과 같다. 평가인증여부가 응답자의 인지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평가인증과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증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연구의 한계를 갖고 있다.

다) 인증여부에 따른 이용자의 시설만족도 수준

평가인증에 따른 이용자편익을 추계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국공립 시설을 제외한 법인, 민간, 가정시설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국공립의 경우, 질적인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고 이용자의 선호도가 높아 인증과 비인증간 격차를 분석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설문조사에 만족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보육시설의 거리' 와 '시설의 이동수'는 평가인증 항목과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만족도 및 지불의사금액분석에서 제외시켰다.

<표 II-4-7>은 민간의 인증시설과 비인증시설간 이용자의 항목별 만족도 수준을 비교한 것이다.

<표 II-4-7> 민간 인증과 비인증간 항목별 만족도

단위: 점(개소)

설문항목	평균		차이 (B-A)
	민간비인증 (A)	민간인증 (B)	
1-1) 시설의 청결성	3.97	4.03	0.06
1-2) 시설의 노후정도	3.93	3.79	-0.14
1-3) 시설의 안정성	3.81	3.87	0.06
1-4) 조명 및 내부인테리어	3.74	3.80	0.06
2-1) 시설장의 전문성	3.90	4.02	0.12
2-2) 시설장의 호감 및 친절함	4.10	4.20	0.11
2-3) 시설장의 성실성	4.13	4.20	0.07
3-1) 교사의 전문성	3.77	4.00	0.22
3-2) 교사의 호감 및 친절함	4.00	4.19	0.19
3-3) 교사의 성실성	4.00	4.18	0.18
4-1) 교육자료의 양적 충실성	3.26	3.69	0.43
4-2) 교육자료의 질적 충실성	3.26	3.72	0.46
5) 급식 및 간식	3.84	3.86	0.02
6) 보육프로그램 내용	3.74	3.88	0.14
7) 위급상황 대처능력	3.65	3.85	0.20
총계(수)	(31)	(219)	2.19

분석대상 만족도 항목은 7개 부문 15개 항목으로 만족도는 1(매우 불만)~5점(매우 만족)으로 구분되었다. 만족도 조사에서 인증시설보다 비인증시설의 만족도가 높은 부문은 '시설의 노후정도'로 비인증시설이 0.14점 오히려 높았다. 이 항목을 제외하고는 14개 항목에서 인증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인증과 비인증시설 간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교육자료의 질적 충실성'으로 0.46점의 차이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격차가 나는 항목은 '교육자료의 양적 충실성'으로 0.43점 차이를 보였다. '교사의 전문성' 그리고 '위기상황 대처능력'도 0.2점대의 차이를 보였다.

두 집단간 15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 점수 차이의 합은 2.19점으로 분석되었다.

라) 시설의 질적 개선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

설문조사에서 시설 이용자들에게 현재 이용하는 보육시설의 보육환경의 개선에 얼마나 추가로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를 설문하였다. 지불의사금액은 월단위로 5천원부터 3만원까지 5천원단위로 설문하였고 3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금액을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설문되었다. 본 연구는 편익의 과대추정을 피하기 위해 3만원을 넘는 금액은 3만원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에서 '지불의사 없음' 그리고 '개선할 필요가 없음'으로 응답한 사례의 지불의사금액은 0원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평가인증항목과 설문항목간의 상대적 비중을 조정하기 위해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평가인증에서는 여러 항목으로 구성된 내용이 설문에서는 한 가지 항목으로 조사된 경우, 이 항목에 대해서는 높은 비중을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평가인증 세부항목 1개(가중치 3)와 1:1로 대응되는 설문항목은 상대가중치 1로 처리하였다. 예를 들어 설문조사 항목인 '보육프로그램의 내용'은 평가인증 항목에서는 여러 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가중치 8이 주어졌고 이를 상대가중치로 환산하면 2.67(8/3)이 된다. 인증시설과 비인증시설간 지불의사금액격차가 가장 많이 나는 항목은 '보육교사의 높은 전문성'으로 비인증시설이 이 항목의 질적 개선을 위해 월평균 5.1천원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높은 항목은 '교육자료의 양적 충실성'과 '교육자료의 질적 충실성'으로 3.8천원과 3.6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즉, 비인증시설의 이용자들은 추가적인 부담을 하더라도 15개 항목에 대한 질적 개선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15개 항목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의 합계는 24.5천원으로 분석되었고, 가중치를 적용하는 경우 지불의사금액의 합계는 52.4천원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이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은 인증의 효과는 아동 1인당 최대 5만 2천원(1

개월)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표 II-4-8>은 인증시설과 비인증시설간 항목별 지불의사금액의 차이를 계산한 것으로 세 가지의 합계를 보여주고 있다. 총계 1)은 모든 항목의 지불의사금액차액만큼 인증의 편익으로 보고 계산한 금액이고, 총계 2)는 전체 항목 중에서 가장 차액이 큰 세 개 항목(⑧+⑪+⑫)과 시설의 물리적 환경에 해당하는 항목(①~④)에 급식 및 간식항목(⑬)을 합친 금액만을 고려하는 경우이다. 총계 3)은 지불의사금액의 차액중 금액이 가장 크고 다른 항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금액이 큰 교사 전문성과 교육자료 세 개 항목(⑧+⑪+⑫) 만을 고려한 총액이다.

<표 II-4-8> 민간 인증과 비인증간 항목별 평균지불의사금액차이

단위: 천원

구분	비인증 (A)	인증 (B)	가중치	차이 (가중치 미적용) A-B	상대 가중치 (C)	차이 (가중치 적용) (A-B)×C
① 시설의 청소상태 및 청결성	1.94	1.01	8	0.94	2.67	2.50
② 시설의 노후상태	1.94	1.14	3	0.81	1	0.81
③ 시설의 안전성	2.5	1.88	8	0.62	2.67	1.65
④ 시설의 조명 및 내부인테리어	1.94	1.23	3	0.71	1.00	0.71
⑤ 시설장의 높은 전문성	1.11	0.49	8	0.62	2.67	1.66
⑥ 시설장의 친절 및 호의	1.39	0.42	5	0.97	1.67	1.61
⑦ 시설장의 성실성	1.11	0.42	5	0.69	1.67	1.15
⑧ 보육교사의 높은 전문성	6.11	1.01	8	5.10	2.67	13.61
⑨ 보육교사의 친절 및 호의	2.22	0.65	5	1.57	1.67	2.62
⑩ 보육교사의 성실성	1.67	0.52	5	1.15	1.67	1.91
⑪ 교육자료의 양적 충실성	6.94	3.05	6	3.89	2.00	7.78
⑫ 교육자료의 질적 충실성	6.39	2.79	6	3.60	2.00	7.19
⑬ 급식 및 간식	5.00	4.48	8	0.52	2.67	1.39
⑭ 보육프로그램 내용	3.33	2.79	8	0.54	2.67	1.44
⑮ 보육프로그램의 충실성	3.33	1.62	6	1.71	2.00	3.42
⑯ 위급상황 대처능력	3.33	2.21	8	1.13	2.67	3.00
총계 1) ①~⑯ 전체			100	24.56		52.46
총계 2) (①~④)+⑧+⑪+⑫+⑬				15.67		35.64
총계 3) ⑧+⑪+⑫				12.59		28.58

주: 항목별 지불의사금액은 <부록 1> 참조

마) 인증의 총편익

<표 II-4-8>에서 구한 1인당 편익금액(지불의사금액의 차액)중에서 총계2), 총계3)만을 고려하여 총 편익을 계산하였다. 총계1)은 현실적으로 인증평가의 대상이 되는 모든 항목에 대해 이용자가 편익을 느끼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제외하였고, 총계4)는 과소 추정 가능성으로 제외하였다. 이용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항목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부담을 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에서도 다른 항목에 비해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지불의사금액의 차액도 다른 항목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는 교육의 질 관련 항목과 시설의 물리적 환경 및 급식 등과 같이 단기적으로 평가인증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총편익의 계산은 총계 2)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순편익의 계산에서는 총계 3)을 총계 2)와의 비율로 조정하여 순편익을 구하였다.

<표 II-4-9> 인증시설 이용 영유아 수 현황

단위: 개소, 명

대상	개소수	영유아 정원
2005년 참여하여 인증 받은 시설	650	49,944
2006년 참여하여 인증 받은 시설	2,804	191,227
2007년 참여하여 인증 받은 시설	4,181	226,102
2008년 참여하여 인증 받은 시설	5,464	242,753
2009년 참여하여 인증 받은 시설	7,303	277,493
총계	20,402	987,519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0). 내부자료

평가인증의 총편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인증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를 알아야만 한다.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사무국의 내부자료에 의하면 2009년말 까지 평가인증에 참여하여 인증을 받은 시설의 수는 20,402개소이고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는 987,519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로 이들 아동수에 1인당 편익금액을 곱하면 연도별 이용자의 총편익이 계산된다.

해당 년도의 평가인증시설 아동 정원수 만큼 평가인증의 효과로 인해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하는 경우, 향후 2015년까지 편익금액을 계산하면 <표 II-4-10>과 같다.

〈표 II-4-10〉 인증에 따른 연간편익

단위: 명, 천원, 개월, 억원

연도	인증시설 아동정원 A	가중치적용 월편익금액 (천원) B	가중치 미적용 월편익금액 (천원) C	개월 D	연간편익금액 (가중치적용) 2009현재가치 (억원) A×B×D	연간편익금액 (가중치미적용) 2009현재가치 (억원) A×C×D
2005	49,944	35.64	15.67	12	213.6	93.9
2006	191,227	35.64	15.67	12	817.8	359.5
2007	226,102	35.64	15.67	12	966.9	425.6
2008	242,753	35.64	15.67	12	1,038.2	456.4
2009	277,493	35.64	15.67	12	1,186.7	521.7
2010	277,493	35.64	15.67	12	1,186.7	521.7
2011	277,493	35.64	15.67	12	1,186.7	521.7
2012	277,493	35.64	15.67	12	1,186.7	521.7
2013	277,493	35.64	15.67	12	1,186.7	521.7
2014	277,493	35.64	15.67	12	1,186.7	521.7
2015	277,493	35.64	15.67	12	1,186.7	521.7
합계					11,343.4	4,987.3

주: 1) 지불의사금액이 물가상승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편익금액 35.64천원(15.67천원)을 연도별 실질가치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할인율 적용이 불필요함.

2)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편익금액은 2009년 인증시설 정원의 동일한 지속을 가정하였음.

3) 순현재가치법에 의한 경제성 평가결과

순현재가치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평가인증의 순편익은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하는 경우 4736.9억~6,971.6억원으로 추계되고, 비용·편익비는 2.08~2.59가 된다. 설문조사와 실제 평가인증 항목간의 문항수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총계 2)에 의한 1인당 지불의사금액의 총합은 월 평균 15.67천원으로 가중치를 적용하는 경우 순편익은 6,971.6억원이고 비용·편익비는 2.59이다. 이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교육자료의 양적 충실성, 교육자료의 질적 충실성과 같은 교육의 질과 시설의 물리적 환경과 급간식의 질을 고려한 것이다.

총계 3)으로 보육교사의 전문성, 교육자료의 양적 충실성, 교육자료의 질적 충실성과 같은 교육의 질에 해당되는 항목만을 고려하는 경우, 이용자 1인당 지불의사금의 차액이 12.59천원이며, 가중치를 적용하는 경우 순편익은 4736.9억이고 비용·편익비

가 2.08이다.

편익의 과다, 과소 계상을 막기 위해 모든 항목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합계한 금액(총계 1)과 총계 4는 경제성 평가에서 적용하지 않았다.

〈표 II-4-11〉 평가인증의 경제성 평가결과

단위: 백만

구분	편익기준	총비용의 2009년 현재가치(A)	총편익의 2009년 현재가치(B)	순편익 (B-A)	비용편익비 (B/A)
가중치 적용	총계 2)	4,371.8	11,343.4	6,971.6	2.59
	총계 3)	4,371.8	9,108.7	4,736.9	2.08

5. 정책시사점

본 장의 분석 결과를 통하여 두 가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보육시설 실태조사 자료와 평가인증 점수를 연계한 분석결과, 평가인증 보육시설 총점을 기준으로 등급화를 할 경우에 기준 점수가 95점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평가인증 점수별로 나눈 5가지 등급과 시설장이 응답한 서비스 수준간의 차이가 문항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표준보육과정 등 프로그램 운영과 가족 및 지역 사회 연계에서는 차이 있다는 문항 비율이 높은 반면에 건강 및 위생 영역에서는 차이가 있는 문항이 소수이다. 평가인증 점수별로 나눈 5가지 등급과 시설장이 응답한 서비스 수준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분석된 문항의 경우, 그 내용을 보면 95점 이상과 그 이하가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다. 그러나 총점보다 영역별 점수를 적용할 경우에는 90점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도 6.8%에서 11.5%로 다소 증가하고, 영역별 점수에는 심의점수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논란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

다음으로 평가인증사업이 효과성이 높은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나가야 할 사업임이 나타났다. 편익분석 결과를 보면 순현재가치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평가인증의 순편익은 교사와 교육자료만 고려하면 4,736억원, 편익비 2.08이고, 교사와 교재교구 이외 물리적 환경과 급간식을 반영하면 6971.6억원, 편익비 2.59가 되어, 평가인증제도는 경제성이 확보된 사업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

Ⅲ. 평가인증 결과의 활용 실태와 관련 의견

제3장에서는 보육시설 평가인증 결과의 활용 실태 및 이와 관련된 의견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였다. 평가인증 결과 공개와 부모의 활용, 평가인증 시설간의 질적 수준 차이, 재정 지원과의 연계, 공공형 및 자율형 어린이집으로 구분하여 현황 및 시설장과 보육전문가 의견을 알아보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공개 및 부모의 활용

정부는 평가인증제도를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3년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모형'을 개발하는 등 준비작업을 실시하였고, 이어서 2004년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을 설치하였으며⁸⁾, 2005년도에 시범운영을 거쳐 2006년도부터 본격 시행하여 왔고, 현재 제2차 보육시설 평가인증이 시행 중이다.

이처럼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는 2003년도부터 준비 작업을 거쳐 2006년 이후 활발히 시행되며 정착되어 왔으며, 평가인증이 본격 시행되기 시작한 이후 평가인증을 통해 제도가 의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보육시설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도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불만은 아직도 적지 않다. 이는 보육시설의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이 질적으로 만족할 만한 보육시설을 찾기 힘들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질 높은 보육시설이 적기도 하겠으나 한편으로는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음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가인증은 전문가들의 동의를 거쳐 좋은 보육의 질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제시된 평가인증지표와 지침에 근거하여 보육시설을 평가하고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는 많은 보육시설 중에서도 자녀를 보낼만한 보육시설을 찾지 못해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귀중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따

8) 2004년 10월 여성개발원에 평가인증 업무가 최초로 위탁된 후, 2006년 1월 위탁 업무가 육아정책개발센터로 이관되었으며 2010년 1월 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음.

라서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관련 정보는 합리적인 보육시설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이에 현재 평가인증의 결과가 부모들에게 어떻게 공개되고 있으며, 부모들이 이 결과를 보육시설 선택기준으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평가인증 제도의 목적 중⁹⁾ 특히 부모들에게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보육시설 선택의 기준을 제공한다는 목적 달성에 현재 평가인증제도가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인증 결과의 공개'라는 측면과 관련해 살펴보도록 한다.

가. 실태

1) 공개 실태

현재 평가인증은 자체점검보고서, 기본사항 확인서, 현장관찰보고서, 심의위원회 의견서를 반영비율에 따라 반영하여 총점을 내고 있으며, 총점 및 영역별 기준점수에 의해 인증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인증 결과는 원래 인증, 인증유보, 불인증으로 구분되었으나, 대부분의 불인증 시설이 재참여를 통해 질적 수준을 개선함에 따라 2008년 4기부터 '인증'과 '인증유보'로 구분되고 있다. 평가인증에 참여한 보육시설에게는 그 결과가 평가인증국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e-mail, SMS로 개별 통보되고 인증된 기관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 현판이 발급되며, 인증 시설 명단은 보건복지부, 평가인증국, 시도 및 시·군·구,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부모들은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인지의 여부를 보육시설 입구에 부착되어 있는 '인증시설 현판'을 보고 알 수 있으며, 평가인증국 홈페이지의 <인증시설 찾기>나 전국 보육정보센터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다.

어린이집 중 원아모집시 부모들에게 평가인증 점수를 공개하는 어린이집은 약 30% 정도인데, 이중 23.9%는 총점만 공개하고 7.1%는 총점과 영역별 점수를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한다는 비율은 시설유형이나 지역별 차이가 거의 없다. 원

9)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목적에는 ①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함, ② 부모들에게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보육시설 선택 기준을 제공, ③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보육시설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여 보육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④ 정부가 보육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 등이 지적되고 있다(www.kcac21.or.kr/home_new/A02/A020101.jsp).

아모집에 평가인증 통과가 도움을 준다는 비율은 공개하는 비율 수준보다 조금 높은 38% 정도이다. 이 역시 지역이나 시설유형별로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으나 가정 보육시설이 다소 높은 편이다(표 III-1-1 참조).

〈표 III-1-1〉 평가인증 어린이집 원아모집시 평가인증 점수 공개 및 도움

단위: %(개소)

구분	공개여부			원아모집 도움정도					계(수)
	총점만	총점과 영역별 점수	공개 안함	전혀 안됨	안됨	보통	도움	매우 도움	
전체	23.9	7.1	69.0	4.4	11.9	45.1	33.2	5.3	100.0(226)
시설유형									
민간	23.3	6.7	70.0	5.0	13.3	47.5	28.3	5.8	100.0(120)
가정	24.5	7.5	67.9	3.8	10.4	42.5	38.7	4.7	100.0(106)
$X^2(df)$		0.13(2)				2.87(4)			
지역									
고양	25.2	7.8	67.0	7.0	9.6	44.3	33.9	5.2	100.0(115)
대구	22.5	6.3	71.2	1.8	14.4	45.9	32.4	5.4	100.0(111)
$X^2(df)$		0.50(2)				0.58(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관한 시설장 조사」 결과임

〈표 III-1-2〉 부모가 관심 가지는 평가인증 영역

단위: %(개소)

구분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	계(수)	$X^2(df)$
전체	39.3	3.1	4.9	9.8	35.3	7.6	100.0(224)	
시설유형								
민간	44.2	2.5	5.8	8.3	32.5	6.7	100.0(120)	3.77(5)
가정	33.7	3.8	3.8	11.5	38.5	8.7	100.0(104)	
지역								
고양	43.4	3.5	5.3	5.3	31.9	10.6	100.0(113)	9.40(5) [#]
대구	35.1	2.7	4.5	14.4	38.7	4.5	100.0(111)	

주: # $p < .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관한 시설장 조사」 결과임

한편, 시설장들은 부모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항목은 보육환경과 건강 및 영양이라고 보고하였다. 시설장의 10% 정도는 부모들이 상호작용 및 교수법에도 관심을 갖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시설유형별로 차이가 없으나 지역별로는 차이를 보

여서 고양시는 환경과 안전, 대구시는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영양 비율이 높다(표 III-1-2 참조).

2) 부모의 활용 실태

일반적으로 부모에게는 평가인증여부만 공개되고 평가인증 결과로 개별 보육시설에게 통보되는 영역별 점수나 총점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부모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평가인증 시설이 있는지를 검색해 보거나 관심을 두고 있었던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인지의 여부만을 알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평가인증제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평가인증 결과를 신뢰하는 부모들에게는 평가인증의 결과가 좋은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인지 자체가 떨어지는 부모에게 있어서는 평가인증 여부를 알고 있어도 이것이 보육시설 선택의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그간 부모들 중 상당수는 평가인증제도에 대해 인지도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이것에 등하원의 편리성, 우수한 보육프로그램, 보육환경, 청결상태, 교사의 자질 등 부모들이 보육시설 선택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이 모두 포함되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알려주는 기준이라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통계인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에 의하면 영유아 어머니 중 평가인증제를 잘 안다는 비율은 33.6%이며, 보육시설 이용자 중 선택시 평가인증의 영향을 받느냐는 질문에 15.7%만이 많이 받는다고 응답하였고 42.9%는 어느 정도 받으며, 41.4%는 아니라고 하였다.

평가인증시설의 확대와 더불어 평가인증에 대한 인지나 시설 선택시 선택 기준으로 고려한다는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평가인증이 부모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당초 목적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보육시설 입장에서도 평가인증 여부가 아동 모집에 큰 요인이 되지 못하고, 부모들도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건강과 영양 이외에 보육과정, 상호작용, 교수법 등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문적 보육 관련 영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이처럼 현재는 평가인증의 결과가 부모들에게 우수한 보육시설을 선택하는 기준으로써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원인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평가인증제도 자체와 제도의 개념, 의의 등 인증을 통과하였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하여 일반 부모들이 잘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일반

적으로 부모들이 보육시설 선택에 고려하는 주된 기준들이 평가인증지표에 대부분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이 부모들이 원하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평가인증 자체를 하나의 또 다른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홍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부모의 인식을 먼저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인증 결과가 부모에게 공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공개의 방법이 매우 소극적이며 공개되는 정보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입구에 있는 현판을 보거나 온라인을 통해 스스로 검색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극적인 방법으로서의 공개는 부모의 보육시설 선택에 있어 평가인증 결과 활용도를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평가인증 결과가 단지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만을 알려줄 뿐 평가인증 통과시설의 점수나 영역별 점수를 알려주지는 않고 있다. 평가인증 지표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도 부모가 특히 보육시설 선택 시에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인증 통과 시설들 내에서도 영역별 우수성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개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나. 관련 의견

1) 공개 정보

평가인증 공개정보에 대한 보육시설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표 III-1-3〉 평가인증 결과 공개 범위 확대에 대한 의견

단위: %(개소)

구분	현 수준 유지	더 많은 정보 공개	잘 모름	계(수)	$\chi^2(df)$
전체	77.3	14.1	8.7	100.0(462)	
시설유형					
민간	78.6	12.2	9.2	100.0(238)	1.54(2)
가정	75.9	16.1	8.0	100.0(224)	
지역					
고양	74.7	14.7	10.7	100.0(225)	2.54(2)
대구	79.7	13.5	6.8	100.0(23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관한 시설장 조사」 결과임

보육시설장들은 평가인증 상세 결과 공개에 대하여 77.3%는 통과여부만 공개하는 현재 상태 유지를 선호하였고, 14.1%만이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지역이나 시설유형별로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표 III-1-3 참조).

그러나 전문가 대부분은 현재의 공개와 부모의 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보육정보센터 보육전문가와 학계의 차이가 거의 없이 84% 정도가 현재 공개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고 단지 16% 정도는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표 III-1-4 참조).

〈표 III-1-4〉 평가인증여부 공개와 부모의 보육시설 이용

단위: %(명)

구분	충분	불충분	전체(수)
전체	15.6	84.4	100.0(77)
학계	15.8	84.2	100.0(38)
보육정보센터	15.4	84.6	100.0(3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대한 보육 전문가 조사」 결과임.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가 필요한 정보는 가능한 정보를 9가지로 분류하고 각 항목 전부에 대하여 필요성을 응답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총점 등급이 77.3%로 가장 높고, 다음이 영역별 점수 등급으로 59.1%이다. 다음은 비율이 좀 낮아져서 개선요구 사항 등 심의 결과 28.8%, 자체점검보고서 24.2%, 보육시설이 작성한 장단점 22.7%, 총점 21.2%, 영역별 점수 19.7%, 시·군·구내 순위 13.6% 순이다(표 III-1-5 참조).

〈표 III-1-5〉 평가인증 결과 공개가 필요한 항목

단위: %(명)

구분	시·군·구 내 순위	총점 등급	총점	영역별 등급	영역별 점수	항목 별 점수	시설 작성 장단점	자체점 검보고서	개선요구 사항 등 심의 결과	(수)
전체	13.6	77.3	21.2	59.1	19.7	4.5	22.7	24.2	28.8	(66)
학계	15.2	66.7	12.1	63.6	15.2	9.1	18.2	18.2	39.4	(33)
보육정보센터	12.1	87.9	30.3	54.5	24.2	-	27.3	30.3	18.2	(33)
X ² (1)	-	4.23*	3.26#	.564	.862	-	.78	1.32	3.62#	

주: # $p < .1$, * $p <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대한 보육 전문가 조사」 결과임.

평가인증 결과 공개에 대한 학계와 보육정보센터 전문가 간의 의견 차이는 다소 있다. 학계가 심의결과 공개를 선호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보육시설과 밀접하게 일하는 보육정보센터에서는 시설장이 작성한 장단점, 시설장 자체평가보고서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한편 공개시 총점이나 영역별 점수를 등급화할 경우 몇 등급이 적정한가에 대하여서는, 총점을 기준으로 보면 3등급이 55.8%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은 5등급 20.8%이며 2등급 10.4%의 순이었다. 전문가 집단별 우선 순위 1, 2위의 차이는 거의 없다. 영역별 점수에 대한 응답도 총점과 별 차이가 없다(표 III-1-6 참조).

〈표 III-1-6〉 평가인증 점수 공개시 적절한 등급화

단위: %(명)

구분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타	전체(수)
총점 등급						
전체	10.4	55.8	7.8	20.8	5.2	100.0(77)
학계	7.9	52.6	13.2	21.1	5.3	100.0(38)
보육정보센터	12.8	59.0	2.6	20.5	5.1	100.0(39)
영역별 점수 등급						
전체	6.8	59.5	6.8	18.9	8.1	100.0(74)
학계	5.4	54.1	13.5	21.6	5.4	100.0(37)
보육정보센터	8.1	64.9	-	16.2	10.8	100.0(3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대한 보육 전문가 조사」 결과임.

〈표 III-1-7〉 평가인증 등급화에 대한 시설장 의견

단위: %(개소)

구분	반대	어느 정도 반대	어느 정도 찬성	찬성	상관 없음	계(수)	$X^2(df)$
전체	48.7	18.2	22.5	5.4	5.2	100.0(462)	
시설유형							
민간	45.0	19.7	26.5	4.2	4.6	100.0(238)	7.13(4)
가정	52.7	16.5	18.3	6.7	5.8	100.0(224)	
지역							
고양	48.9	17.8	22.7	4.4	6.2	100.0(225)	1.70(4)
대구	48.5	18.6	22.4	6.3	4.2	100.0(23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관한 시설장 조사」 결과임

〈표 III-1-8〉 평가인증 등급화 정도에 대한 시설장 의견

단위: %(개소)

구분	총점				영역 점수				계(수)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전체	22.1	67.0	4.4	6.6	22.5	67.0	4.4	6.1	100.0(412)
시설유형									
민간	21.4	71.0	2.9	4.8	22.0	70.3	3.3	4.3	100.0(210)
가정	22.8	62.9	5.9	8.4	23.0	63.5	5.5	8.0	100.0(202)
$X^2(df)$		5.43(3)							
지역					20.4	68.4	6.1	5.1	
고양	20.2	68.7	6.1	5.1	24.4	65.7	2.8	7.0	100.0(198)
대구	23.8	65.4	2.8	7.9	23.8	65.4	2.8	7.9	100.0(214)
$X^2(df)$		4.59(3)				4.00(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관한 시설장 조사」 결과임

한편 시설장들은 평가인증 등급화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높다. 찬성한다는 비율은 27.9%이다. 민간 어린이집이 30.7%, 가정 25.0%로 민간어린이집 원장이 찬성하는 비율이 다소 높고 지역 차이는 없다(표 III-1-7 참조) 그런데 공개시 총점이나 영역별 점수를 등급화할 경우 몇 등급이 적정한가에 대하여서는 총점과 등급점수 모두 3등급이 67%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은 2등급 22% 순이다. 영역별 점수에 대한 응답도 총점과 별 차이가 없다(표 III-1-8 참조).

평가인증 공개시 총점이나 영역별 점수 등급을 3등급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는 것은 시설장과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한다.

2) 공개 대상 시설

평가인증은 제1차 시행('05~'09)과 2차 시행('10~)으로 나뉘는데, 이 두 시기의 평가인증은 평가지표와 운영체계가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도 평가지표가 고도화되었다. 본 조사에서는 '평가인증 결과 공개 대상은 어느 범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평가인증 결과 공개 범위를 조사하였다. 이는 평가인증 시 결과 공개에 대한 기본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었는데, 이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데 배경이 있다. 원칙적으로는 법 소급적용은 불가이지만, 한편에서는 평가인증 유효기간 동안 평가인증 점수가 유효하므로 공개가 현재 상태를 공개하는 것이라면 1차 평가인증 시설 점수 공개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

조사결과, 어린이집 원장은 제1, 2차 통과 시설 모두 공개하자는 비율이 47.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1, 2차에 상관없이 우수시설만이라는 비율이 20.8%이다. 시설유형별로 민간시설은 1, 2차 통과 시설 및 2차 통과시설 응답 비율이 높고, 가정보육 시설은 1, 2차에 상관없이 우수시설 및 1차와 2차 모두 통과시설 비율이 다소 높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지역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표 III-1-9 참조).

〈표 III-1-9〉 평가인증 결과 공개대상 범위에 대한 시설장 의견

단위: %(개소)

구분	제1차 또는 제2차 통과시설 모두	제1차 통과시설만	제2차 통과시설만	제1차와 제2차 통과시설	제1,2차에 상관없이 우수시설만	계(수)	$X^2(df)$
전체	47.7	8.8	11.0	11.7	20.8	100.0(453)	
시설유형							
민간	49.1	9.8	14.5	9.4	17.1	100.0(234)	11.42(4)*
가정	46.1	7.8	7.3	14.2	24.7	100.0(219)	
지역							
고양	43.1	9.2	10.6	11.5	25.7	100.0(218)	6.94(4)
대구	51.9	8.5	11.5	11.9	16.2	100.0(235)	

주: * $p <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관한 시설장 조사」 결과임

〈표 III-1-10〉 평가인증 결과 공개대상 범위에 대한 전문가 의견

단위: %(명)

구분	1차 또는 2차 통과 시설 모두	1차 통과 시설	2차 통과 시설	1차 인증 받고 2차 재인증 시설만	1차, 2차 상관없이 우수시설만	전체(수)
전체	21.5	1.5	44.6	24.6	7.7	100.0(65)
학계	9.1	0.0	57.6	21.2	12.1	100.0(33)
보육정보센터	34.4	3.1	31.3	28.1	3.1	100.0(3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대한 보육 전문가 조사」 결과임.

그러나 보육 전문가들은 어린이집 원장들과 달리 평가인증 결과 공개 대상 어린이집은 2차 통과 시설에 한하자는 비율이 44.6%로 가장 높고, 다음 1차 인증을 받고 2차 재인증 시설만 대상으로 하자는 비율과 1차 또는 2차 통과 시설 모두 공개 대상으로 하자는 비율이 각각 24.6%, 21.5%로 유사한 수준이다(표 III-1-10 참조).

이러한 응답 이유는 시설장은 1차, 2차 지표 간 난이도 차이 존재가 48.0%이고,

가장 최근의 결과가 부모 선택 기준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 33.5%인데 비하여, 전문가들은 1차 시행시 결과 공표에 대한 시설과 합의 부족 40.0%, 가장 최근의 결과가 부모 선택 기준에 의미가 있으므로 35.0%로 1순위 사유가 차이를 보였다. 각각 1/3 정도는 가장 최근의 결과가 부모 선택 기준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경향이다. 그러나 동일한 생각이 각각 다른 주장의 이유가 됨은 아이러니 하다(표 III-1-11 참조).

〈표 III-1-11〉 평가인증 결과 공개대상 범위 선택 이유

단위: %(개소)

구분	1차, 2차 지표간 난이도 차이 존재	1차 시행시 결과 공표에 대한 시설과 합의 부족	가장 최근의 결과가 부모 선택 기준에 의미가 있으므로	기타	계(수)
전체	44.0	21.1	33.7	1.2	100.0(493)
원장	48.0	18.5	33.5	-	100.0(433)
전문가	15.0	40.0	35.0	10.0	100.0(6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대한 시설장 조사」와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대한 보육 전문가 조사」 결과임.

3) 공개 방법

전문가 대부분은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공개방법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보육정보센터 보육전문가들의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92.1%로 학계 전문가 78.4% 보다 높다(표 III-1-12 참조).

〈표 III-1-12〉 평가인증시설 공개 방법 충분성

단위: %(명)

구분	충분	불충분	전체(수)	$X^2(df)$
전체	14.7	85.3	100.0(75)	
학계	21.6	78.4	100.0(37)	2.82(1) [#]
보육정보센터	7.9	92.1	100.0(38)	

주: # $p < .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대한 보육 전문가 조사」 결과임.

적절한 공개방법으로는 가능한 공개방법 전부에 대하여 응답하게 하는 방식으로 시설장과 전문가에게 조사하였는데, 조사 방식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무엇보다 부모에게 문서로 통보하자는 의견에서 시설장의 비율이 전문가들의 비율보다 높았고

전문가들은 일간지 홍보를 선호하는 차이를 보였다.

복수 응답하게 한 전문가는 정보센터 등 주요 공공 홈페이지에 게재가 87.7%, 보육시설 홈페이지에 공개 32.3%, 별도의 공개 전용 사이트 구축 18.5%, 일간지 발표 16.9%, 부모에게 서류로 통보는 7.7%만이 동의하였다. 보육정보센터에서 일간지 발표를 선택한 비율이 높고, 학계는 보육시설 홈페이지를 선택한 비율이 높다(표 III-1-13 참조).

시설장에게도 적절한 평가인증 공개방법을 중복응답으로 조사하였는데, 부모에게 문서로 통보하지는 응답 비율이 28.1%로 전문가 7.7%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높았다(표 III-1-14 참조).

〈표 III-1-13〉 적절한 평가인증 결과 공개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부모에게 문서로 통보	주요 공공 홈페이지 게재	보육시설 홈페이지에 공개	별도의 공개 전용 사이트 구축	일간지 발표	(수)
전체	7.7	87.7	32.3	18.5	16.9	(65)
학계	10.3	89.7	48.3	20.7	6.9	(29)
보육정보센터	5.6	86.1	19.4	16.7	25.0	(36)
$X^2(df)$	-	-	6.11(1)*	0.17(1)	-	

주: * $p<.05$,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대한 보육 전문가 조사」 결과임.

〈표 III-1-14〉 적절한 평가인증 결과 공개 방안에 대한 시설장 의견(중복응답)

단위: %(개소)

구분	부모에게 문서로 통보	주요 공공 홈페이지 공개	보육시설 홈페이지 공개	별도의 공개전용 사이트 구축	일간지 발표	(수)
전체	28.1	58.9	26.4	13.6	2.2	(462)
시설유형						
민간	27.3	55.0	27.3	16.4	2.1	(238)
가정	29.0	62.9	25.4	10.7	2.2	(224)
$X^2(df)$	0.17(1)	2.98(1)#	0.21(1)	3.15(1)#	-	
지역						
고양	20.4	56.0	28.9	12.0	3.1	(225)
대구	35.4	61.6	24.1	15.2	1.3	(237)
$X^2(df)$	12.84(1)***	1.50(1)	1.39(1)	1.00(1)	-	

주: # $p<.1$, *** $p<.001$,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관한 시설장 조사」 결과임

2.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차등화

가. 현황

1) 평가인증시설간의 질적 수준 차이

평가인증 보육시설의 항목 및 영역별 점수, 총점 등은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1차 시행시기 평가인증 결과는 각 영역과 총점에서 기준점수 73.33로 통과 여부가 결정되며, 1차 시행시기에 참여했던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점수는 평균 87점을 상회한다. 그러나 기준점수 통과만으로 평가인증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곧 인증 시설이라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큰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표 III-2-1〉 설립유형별 총점

단위: 점, 개소

구분	40인 이상			39인 이하		
	평균 (표준편차)	최하-최고	수	평균 (표준편차)	최하-최고	수
전체	86.9(6.44)	73.40-99.38	8,889	87.8(6.37)	73.33-99.72	10,581
국공립	90.5(5.69)	73.38-99.17	1,413	92.0(5.29)	73.56-98.06	70
법인	87.8(6.48)	73.33-99.48	1,208	90.6(4.03)	82.00-95.92	9
민간	85.8(6.23)	76.31-99.48	6,091	85.2(6.12)	73.33-99.17	1,966
직장	92.4(4.98)	81.52-96.56	164	92.1(4.35)	82.22-97.67	22
가정	-	-	-	88.3(6.28)	73.33-99.72	8,506
부모협동	88.2(5.15)	73.33-99.48	13	87.2(8.82)	75.86-96.97	8

평가인증 통과 평균점수를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40인 이상 보육시설의 경우 직장 92.4점, 국공립 90.5점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민간보육시설은 85.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민간보육시설과 법인보육시설에서는 시설간 격차가 다른 시설에 비해 큰 것을 알 수 있다. 39인 이하 보육시설에서도 직장 92.1점, 국공립 92.0점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민간은 85.2점, 가정 88.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시설간 격차도 역시 크게 나타났다.

한편 2010년에 실시된 2차 평가인증에서는 현재 5기까지 인증심의를 완료하였는데, 지표의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평가인증 총점이 신규 시설은 87.3점, 재인증 시설은 90.5점으로 제1차 시행의 평균 점수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표 III-2-2 참조).

〈표 III-2-2〉 2차 시행 평가인증 시설수 및 총점 평균

구분	신청	통과	총점 평균
신규시설(1-5기)	3,698	2,801	87.38
재인증시설(1기)	504	428	90.52

단위: 개소, 점

2) 인증시설 사후관리 현황

인증시설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점수가 낮은 인증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인증시설 사후관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방문지원, 신입종사자 교육 및 정보제공, 인증취소관리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방문지원에 대한 요구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인증유효기간 동안 자체점검을 통해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유지 및 향상시키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로 제출한다. 2010년 11,889개소가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둘째, 보육시설 종사자의 잦은 이동 등 보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증 이후 임면된 신입시설장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평가인증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2009년부터 신입시설장 교육을 의무화 하여 2010년에 849명이 참여하였다. 신입교사 교육 개최 지역은 16개 시·도에서 39개 시·도 및 시·군·구로 확대하였다.

셋째, 인증시설 방문지원은 방문지원자가 보육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질적 수준 등을 확인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법을 상담 및 지원하고, 평가인증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2008년 건강과 영양 및 안전영역 중점에서 2009년 평가인증 전 영역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2009년부터 방문지원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문지원자를 선발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2010년에 345개소 방문지원을 실시하였다.

넷째, 인증취소 사유 발생 시설 관리로 소재지 및 운영형태 변경에 한하여 확인방문 과정을 도입하였다. 운영형태 변경시 지표 유형도 달라진다.

다섯째, 2010년에 인증시설 컨설팅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17개 보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49명의 컨설턴트를 선정, 교육하여 663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하였다.

〈표 III-2-3〉 영역별 지원내용

영역	내용
보육환경	보육시설 환경 구성을 위한 보육실의 공간배치의 원리 및 방법,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흥미영역별 자료 구비의 중요성 및 제공방법
운영관리	보육시설의 주요 정보 구성 및 안내방법, 보육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근무환경 및 지원방법, 원아 적응 및 정보 관리 방안
보육과정	보육시설별 특성(반 구성, 혼합반 등)에 맞는 보육계획안 수립 및 흥미영역별 활동 운영 방법
상호작용	자유선택 및 일상생활 활동 중 교사 상호작용의 중요성,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바람직한 상호작용 원칙 및 방법, 개별 영유아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
건강과 영양	영유아기 성장발달을 위한 건강과 영양의 특성, 위생적 생활습관 지도의 중요성 및 방법, 전염성 질환 및 아픈 영유아를 처리원칙 및 방법
안전	일상생활 안전의식의 중요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안전점검 방법, 영유아의 안전을 위한 성인의 역할, 시설 및 설비 설치·관리 방법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양방향적인 가정과의 의사소통 필요성과 다양한 방법, 취약 아동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 지역사회 기관 활용 방안

나. 관련 의견

1) 유효기간 차등화 방안

평가인증 통과 시에 우수한 결과를 받은 평가인증 시설은 유효기간을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전문가들은 약 70%는 찬성하고 30% 정도가 반대하는데, 찬성률은 학계의 찬성의견이 75.0%로 보육정보센터 65.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표 III-2-4 참조).

〈표 III-2-4〉 평가인증결과에 따른 유효기간 차등화 방안

구분	찬성	반대	계	$\chi^2(df)$
전체	70.3	29.7	100.0(74)	0.75(1)
학계	75.0	25.0	100.0(36)	
보육정보센터	65.8	34.2	100.0(3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대한 보육 전문가 조사」 결과임.

다음은 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인증결과를 연장할 경우에 갖추어야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복수로 질문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학계에서 가장 희망하는 기준은 일정점수 이상의 평가인증 결과로 88.2%가 희망하였으며 다음이 제1차 평가인증 경험이 있었던 재인증 대상시설과 심의시 심사하는 부적절한 사례 없음으로 각각 52.9%, 44.1%가 희망한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은 기본사항 점검결과 10점 만점인 시설로 41.2%가 희망하였다. 이외 재직교사 자격기준, 대비오차 결과에 따른 만점 등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보육정보센터 역시 평가인증 결과기준을 84.8%로 가장 희망하였으며 다음으로 심의시 심사하는 부적절한 사례없음과 점검결과 10점 만점인 시설이 각각 66.1%, 51.5%로 학계와 비교하였을 때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표 III-2-5 참조).

〈표 III-2-5〉 인증결과를 연장할 경우 기준

단위: %(명)

구분	재인증 대상시설	평가인증 결과	대비오차 결과에 따른 만점	심의시 부적절 사례없음	10점 만점인 시설	재직교사 자격 기준	기타	(수)
전체	47.7	86.5	28.4	55.4	46.4	35.9	12.0	(67)
학계	52.9	88.2	26.5	44.1	41.2	32.4	11.8	(34)
보육정보센터	42.4	84.8	30.3	66.7	51.5	39.4	12.1	(3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대한 보육 전문가 조사」 결과임.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 추가적인 연장기간의 적절성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2년 추가연장이 5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1년 추가연장 37.3%, 1년 미만 추가연장 7.5% 순으로 나타났다(표 III-2-6 참조).

〈표 III-2-6〉 추가적인 연장기간

단위: %(명)

구분	1년 미만 추가연장	1년 추가 연장	2년 추가 연장	3년 이상 추가 연장	계(수)
전체	7.5	37.3	55.2	-	100.0(67)
학계	8.8	32.4	58.8	-	100.0(34)
보육정보센터	6.1	42.4	51.5	-	100.0(3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대한 보육 전문가 조사」 결과임.

유효기간 연장 시 서비스 질적 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연장시설에 대해 어떠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표 III-2-7>에 따르면 학계가 가장 바

라는 정책은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한 인증시설에 대한 교육 지원을 73.5%가 희망하였으며 다음이 질적 수준 점검을 위한 불시방문으로 52.9%가 희망한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은 인증시설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50%가 희망하였다. 한편 보육정보센터는 인증시설에 대한 교육 지원을 희망하는 비율이 학계에 비해 85.3%로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불시방문을 희망하는 비율은 44.1%로 다소 낮다.

〈표 III-2-7〉 유효기간 연장시설에 대한 정책수반

단위: %(명)

구분	불시방문	인증시설에 대한 교육 지원	인증시설에 대한 경제적 지원	지도점검 면제를 통한 인센티브	기타	(수)
전체	48.5	79.4	50.0	47.1	5.9	(68)
학계	52.9	73.5	50.0	47.1	-	(34)
보육정보센터	44.1	85.3	50.0	47.1	11.8	(3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대한 보육 전문가 조사」 결과임.

이상과 같은 보육전문가들의 인증 기간 차등화에 대한 의견을 요약하면 대상 어린이집 선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2년 정도 연장하지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이해된다.

3. 재정 지원과 연계

가. 재정지원과 연계 현황

1) 중앙정부

평가인증 결과를 기존 보육 재정 지원의 기준으로 본격적으로 활용하여 적용한 실적은 없다. 다만 일회성으로 약간의 인센티브를 지원한 적이 있으며, 또한 새로운 재정 지원 정책을 실시할 경우에 평가인증을 하나의 조건으로 제시한 실적은 찾을 수 있다.

현금성 지원으로는 주로 보육교사에게 수당으로 지급되었다. 2006년과 2007년도에는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일회성 수당 형태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그 액수는 총 50만원으로 25만원씩 2회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2009

년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에 한하여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였다. 2010년에는 일회성으로 400억원의 예산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 교사에게 50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지급하고, 농어촌 민간 가정 보육시설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2007년에는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 지원시 평가인증 신청을 기본조건의 하나로 채택하였다. 영아 기본보조금 채택과 달리 민간보육시설 유아 기본보조금은 시범사업¹⁰⁾을 거쳐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시범사업 보육시설은 시범사업 지역내 민간개인 및 가정 보육시설¹¹⁾ 대상으로 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시설의 신청을 받아 추진하도록 하였다. 기본보조금을 받으려는 조건을 보면 시설은 보육교사 전원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 시·도지사가 정하는 보육교사 최저기준 보수 수준 준수, 시·도지사가 재고시한 보육료 상한선 준수,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모든 반에서 준수,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회계 관리, 보육행정전산망 사용, 2006~2007(1기)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참여, 유아 기본보조금 지원금 중 일정 비율(20%)을 교사 보수 수준 인상으로 사용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2) 지방정부

지방정부의 보육정책 역시 국고 지원 사업 이외에 특수시책으로 지방정부 재정 지원 정책을 실시할 경우에 평가인증을 하나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 시·도 지원 정책

<표 III-3-1> 은 각 시·도의 평가인증 참여 또는 통과를 기준으로 하는 지원을 나타낸다. 평가인증 통과를 전제로 인건비 지원을 통한 공인 어린이집 제도를 실시하는 서울시와 부산시를 제외하고 보면¹²⁾, 대체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환경개선비 명목으로 1회성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일부에서 종사자에게도 일회성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이외에 전남과 충남, 전남에서 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기타 시

10) 유아 기본보조금은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의 수차례 논의된 끝에 2006년 5월 10일 총리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기본보조금 지원 제도와 가격규제 예외시설을 연계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어서 2차례의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¹⁾ 기본보조금 지원 제도 시범 실시를 통해 질 관리에 대한 사전 검증을 추진한 후에 확대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음.

11) 사립유치원도 포함됨.

12) 공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다음 제4절에서 별도로 다루고자 함.

설과 차별하여 수당을 지원하는데, 그 유형은 다양하다. 전남은 보육시설당 교사 인건비로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충남이 보조교사 인건비로 월 56만원을 지원한다. 이외 전북은 시설장 처우 개선비를 지원한다.

〈표 III-3-1〉 시·도별 평가인증 참여 및 통과시설 지원특수시책

단위: 천원

구분	구분	지원 대상	예산
서울	서울형 어린이집	- 인건비, 보육도우미, 기타 운영비 (보육료 수입의 10%)	
부산	부산 공보육 어린이집	- 인력 인건비 지원	20,000
인천	종사자 지원	- 20110년 평가인증참여시설 종사자 1인당 10만원	308,750
광주	종사자 지원	- 2009년도 평가인증통과시설 종사자 1인당 20만원	430,000
대전	환경개선비 지원	- 2010년까지 평가인증 통과 시설 · 20인이하시설 개소당 100만원 · 21인이상시설 개소당 150만원	70,000
충북	환경개선비 지원	- 2009년 평가인증 통과시설 개소당 200만원	600,000
충남	보조교사 인건비	- 평가인증에 통과하여 유지중인 보육시설 보조교사 인건비 월 56만원	2,850
전북	보육시설장 처우개선비	- '09년12월말 평가인증된 보육시설의 장	15,000
전남	보육교사 수당	- 평가인증통과 보육시설 종사자 월 5만원	50,000
경북	환경개선비 지원	- 평가인증통과시설, 신청시설(당해년도) 개소당 100만원	7,000
경남	난방연료비 지원	- 평가인증통과시설 가정 20만원, 민간 30만원	35,500
	환경개선비 지원	- 평가인증 통과 및 참여 가정 및 민간시설 개소당 200만원	400,000

나) 시·군·구 지원 정책

시·도 이외에 여러 시·군·구에서도 평가인증을 받았거나 참여하고 있는 시설을 지원한다. 그 유형은 보육시설에 대한 직접 지원과 종사자 지원 및 소요비용 지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을 중복 지원하는 지역도 있다.

시설지원은 환경개선비,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차량운영비 등으로 구분되는데 가장 많은 25개 시·군·구에서 환경개선비 명목의 비용을 지원한다. 이는 주로 경기도에서 많이 채택된 정책이다.

〈표 III-3-2〉 시도별 평가인증 참여 및 통과시설 지원 특수시책 요약

구분	시설 지원			중사차지원			소요 비용 지원	
	환경개선비 및 기자재비	방난방, 차량운영, 교재교구비	기타	수당	교육연수비	교통비	조력단 수당	수수료
서울	성동구, 마포구, 동작구, 구로구	강남구	광진구, 중랑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서대문구, 동작구, 강동구, 강북구			영등포구	용산구
부산		남구, 해운대구, 강 서구, 강서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 달성군				달성군			
인천				중구, 남동구				중구, 동구
광주				광산구				
대전								
울산		울주군						

(표 계속)

구분	시설 지원			종사자지원			소요 비용 지원	
	환경개선비 및 기자재비	방난방, 차량운영, 교재교구비	기타	수당	교육연수비	교통비	조력단 수당	수수료
경기	용인시, 평택시, 광주시, 김포시, 안성시, 하남시, 안평군, 화성시,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가평군	김포시, 구리시	성남시, 광명시, 의정부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군포시, 광주시, 이천시, 안천시, 과천시, 남양주시, 하남시, 의정부시, 포천시, 연천군,		오산시, 포 천시	안산시, 광명시, 군포시, 안성시	과천시, 파주시
강원		동해시	원주시					
충북	제천시, 진천군 청원군		충주시					
충남		당진군	진주시					
전북				김제시				
전남					신안군			
경북	김천시, 안동시, 청도군, 예천군 거창군, 함천군, 남해군, 의령군	경주시, 칠곡군 창원시	경산시, 영덕군 진해시	거제시, 양산시, 남해군				포항시 밀양시, 거제시, 남해군, 거창군
(수)	(25)	(13)	(15)	(25)	(2)	(2)	(5)	(10)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차량운영비 등 운영 비용은 13개 시·군·구에서 지원하며, 이외 13개 시·군·구가 격려금, 인센티브 등의 명목으로 시설에 일회성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종사자 지원은 가장 많은 지원 유형이 종사자 수당 지원으로 25개 시·군·구가 보육인력 수당을 지원한다. 특히 경기도의 여러 시·군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수당 지원은 대부분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지만 시설장에게 수당을 주는 지역도 있다. 수당은 1회성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월 단위로 일정하게 지급하기도 한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평가인증 관련 교통비나 교육연수비를 지원한다.

이외에 일부 지역에서 평가인증 조력자 수당이나 평가인증 참여수수료를 지원한다. 평가인증 참여수수료를 지원하는 시·군·구는 10개 지역인데, 이 중 4개 지역이 경남이다.

전체적으로 서울, 경기, 경상남북도가 비교적 평가인증 관련 특수시책을 채택한 시·군·구가 많고, 반면에 충남, 전북, 전남에서 평가인증 관련 지원 특수시책을 채택한 시·군이 상대적으로 소수이다.

나. 재정지원과 연계 관련 의견

1) 재정 중단 관련

평가인증 결과 활용과 관련하여 외부로부터의 가장 많은 비판은 재정지원과 연계하지 않음으로 질적 수준이 낮은 어린이집 퇴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에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지원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보육 재정 지원 항목별로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보육시설의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는 디스인센티브 방식에 대하여 찬반을 조사하였다.

〈표 III-3-3〉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보육시설의 재정적 지원 중단 찬성 비율

단위: %(명)

구분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영아 기본보조금	차등보육료	(수)
전체	86.3	84.5	62.5	56.2	(73)
학계	83.8	83.8	62.2	56.8	(37)
보육정보센터	88.9	85.3	62.9	55.6	(36)
$X^2(df=1)$	-	0.03	0.01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대한 보육 전문가 조사」 결과임.

조사 결과, 보육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재정 지원 중단에 찬성하는 지원 항목이 교재교구비와 차량운영비는 85% 수준이고 영아 기본보조금은 62.5%, 차등보육료는 56.2%로 조사되었다. 즉, 시설보조금, 부모보조금의 순이며, 시설보조금은 그 액수가 적은 항목이 찬성비율이 높다. 학계와 보육정보센터 보육전문가간의 차이는 거의 없다(표 III-3-3 참조).

평가인증을 기준으로 보육 재정 지원을 중단할 경우, 시설 운영이나 보육아동, 교사에게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갑자기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본 조사에서는 보육 재정 지원 항목별로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보육시설의 재정적 지원 중단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가, 둔다면 어느 정도 두어야 하는가를 조사하였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영아 기본보조금과 차등보육료는 모두 92.5%이고 교재교구비와 차량운영비는 각각 69.0%, 65.2%이다. 학계와 보육정보센터 보육전문가간의 의견은 영아 기본보조금과 차등보육료는 거의 차이가 없으나 교재교구비와 차량운영비는 다소 차이가 있어서 학계에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비율이 82.0%, 77.1%로 높고 보육정보센터는 각각 55.6%, 52.9%로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표 III-3-4 참조).

<표 III-3-4>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보육시설의 재정적 지원 중단시 유예기간

구분	단위: %(명)				(수)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영아 기본보조금	차등보육료	
전체	69.0	65.2	92.5	92.5	(71)
학계	82.9	77.1	96.9	93.5	(35)
보육정보센터	55.6	52.9	88.6	91.7	(36)
$X^2(df=1)$	6.19*	4.45*	-	.09	

주: * $p <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대한 보육 전문가 조사」 결과임.

<표 III-3-5>는 보육 재정 지원 항목별로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보육시설의 재정적 지원 중단으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할 경우 그 기간은 어느 정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 결과이다. 4개 항목 모두 1년이 절대적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년이다. 학계는 상대적으로 2년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다. 특히 차등보육료 지원 중단시 유예기간으로 학계와 보육정보센터가 각각 1년 57.7%, 74.2%, 2년 26.9%, 9.7%로 전체적으로는 1년을 선호하지만 보육정보센터는 1년, 학계는 2년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III-3-5〉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보육시설의 재정적 지원 중단시 유예기간

단위: %(명)

구분	6개월	1년	1년 6개월	2년	3년	전체(수)
교재교구비						
전체	-	76.1	2.2	17.4	4.3	100.0(46)
학계	-	70.4	-	22.2	7.4	100.0(27)
보육정보센터	-	84.2	5.3	10.5	-	100.0(19)
차량운영비						
전체	-	76.2	-	19.0	4.8	100.0(42)
학계	-	68.0	-	24.0	8.0	100.0(25)
보육정보센터	-	88.2	-	11.8	-	100.0(17)
영어 기본보조금						
전체	1.7	67.2	-	20.7	10.3	100.0(58)
학계	-	60.7	-	25.0	14.3	200.0(28)
보육정보센터	3.3	73.3	-	16.7	6.7	100.0(30)
차등보육료						
전체	3.5	66.7	-	17.5	12.3	100.0(57)
학계	-	57.7	-	26.9	15.4	100.0(26)
보육정보센터	6.5	74.2	-	9.7	9.7	100.0(3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대한 보육 전문가 조사」 결과임.

2) 인센티브

한편 어린이집 원장들은 평가인증을 받기 위하여 시설 개보수 비용도 들어가고 교사와 원장의 시간적 노력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처럼 애를 써서 평가인증을 받아도 별 인센티브가 없다는 불만을 많이 갖는다. 여러 지방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는 하지만 일회성이 많다. 일부에서는 재정지원으로 인센티브를 주기가 어려우므로 그 대신에 인증기간을 연장해 주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인증 인센티브로 무엇을 선호하는가에 대한 시설장들의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평가인증 인센티브로 시설장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환경개선비이고, 그 다음이 보육교사 수당,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 원장 수당의 순이고, 평가인증 유효기간 연장은 4.3%에 불과하였다. 시설장이 교사를 겸직하는 가정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보다 원장 수당을 선호하며 지역별로는 대구에서 보육교사 수당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다.

〈표 III-3-6〉 평가인증 인센티브(1순위)

단위: %(개소)

구분	환경개선비	교재교구비, 차량운행비 등 운영비	보육교사 수당	원장 수당	평가인증 유효기간 연장	계(수)	X ² (df)
1순위 전체	41.4	15.8	24.7	13.7	4.3	100.0(461)	
시설유형							
민간	40.8	20.2	28.6	5.5	5.0	100.0(238)	33.62(4) ^{***}
가정	42.2	11.2	20.6	22.4	3.6	100.0(223)	
지역							
고양	43.3	17.4	18.8	16.1	4.5	100.0(224)	9.21(4) [#]
대구	39.7	14.3	30.4	11.4	4.2	100.0(237)	
2순위 전체	17.2	21.7	28.2	17.2	15.7	100.0(447)	

주: # $p < .1$,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관한 시설장 조사」 결과임

4. 정책시사점

보육시설 평가인증 결과의 활용 실태 및 이와 관련된 의견을 살펴본 결과, 이에 대한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평가인증 결과는 인증시설만 대상으로 인증되었다는 점만 공개하므로 부모의 활용도 미미하여 정책적 개선이 필요함이 나타났다. 평가인증 결과가 부모에게 공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공개의 방법이 매우 소극적이며 공개되는 정보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현재 자발적으로 어린이집 중 원아모집시 부모들에게 평가인증 점수를 공개하는 어린이집은 약 30% 정도인데, 이중 23.9%는 총점만 공개하고 7.1%는 총점과 영역별 점수를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아모집에 평가인증 통과가 도움을 준다는 비율이 공개하는 비율 수준보다 조금 높은 38% 정도이다. 부모들 중 상당수는 평가인증제도에 대해 인지도 못하고 있다. 전국 통계인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에 의하면 영유아 모 중 평가인증제를 잘 안다는 비율은 33.6%이며, 보육시설 이용자 중 선택시 평가인증의 영향을 받느냐는 질문에 41.4%는 아니라고 하였다. 전문가 대부분은 현재의 공개와 부모의 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둘째, 향후 평가인증 관련 공개 자료는 총점 등급과 영역별 등급을 선호하고 등급은 2~3 등급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보육전문가는 공개가 필요한 정보로 총

점 등급이 77.3%로 가장 높고, 다음이 영역별 점수 등급이 59.1%이다. 한편 공개시 총점이나 영역별 점수를 등급화 할 경우 몇 등급이 적정한가에 대하여서는 3등급이 1순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은 5등급 20.8%이며 2등급 10.4%의 순이었다. 한편 시설장들은 평가인증 등급화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높고 찬성한다는 비율은 27.9%이지만, 공개시 총점이나 영역별 점수를 등급화 할 경우에는 3등급이 적절하다는 비율이 67.0%로 다수이고 2등급 22.1%이다. 즉, 평가인증 공개시 총점이나 영역별 점수 등급 3등급은 시설장과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한다.

셋째, 평가인증 통과 시에 우수한 결과를 받은 평가인증 시설의 유효기간을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약 70%는 찬성하고 30% 정도가 반대하므로, 정책으로 수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냈다.

넷째, 평가인증과 재정 지원 연계시 디스인센티브 방식으로 지원하던 예산의 지원 중단은 소소한 시설보조금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기본적 부모보조금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실시되는 것이 적절함을 나타낸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재정 지원 중단에 찬성하는 지원 항목이 교재교구비와 차량운영비는 85% 수준이고 영아 기본보조금은 62.5%, 차등보육료는 56.2%로 조사되었다.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가에 항목별로 교재교구비와 차량운영비는 65~69%이고 기본보육료와 차등보육료는 93%가 두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유예기간을 둘 경우 적정 기간은 1년이 67~76%로 높았다.

다섯째, 시설장들은 평가인증 인센티브로 환경개선비, 종사자 수당을 선호한다. 많은 지방정부가 여러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 중 보육교사 수당을 일회성 또는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편차가 커서 이를 중앙정부 정책으로의 수용 가능성 모색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IV.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 실태와 관련 의견

제4장에서는 새로운 어린이집 유형으로 공공형 어린이집과 보육료 규제 완화, 즉, 자율형 어린이집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였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은 두 가지 관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첫째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평가인증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이 최소한 국공립 수준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차이라면 공공형은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자율형은 그 비용을 부모가 부담한다는 점이다. 지방정부가 실시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실태와 이에 대한 보육전문가 및 시설장의 의견을 알아보고, 또한 보육료 규제를 완화는 자율형 어린이집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자 하였다.

1.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

평가인증과 간접적으로 연계된 다른 하나의 정책이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이다. 공공 어린이집이 아니고 공공형 어린이집은 공공어린이집에 준하는 민간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현재 서울과 부산에서 실시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는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인증 통과와 이외 추가적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공인 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국공립시설과 같이 보육교사와 시설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보육료 및 운영을 국공립보육시설에 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두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어서 공공형 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전문가와 시설장의 의견을 알아보려고 한다.

가.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사업 개요

1) 대상 및 절차 개요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대상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시 소재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되, 방과후 전담시설, 참여 신청마감일 현재 보육시설 운영과 관

런하여 행정처분¹³⁾ 중인 시설은 제외한다.

서울형어린이집 선정 절차는 자치구 신청서 접수, 자치구 기본요건 등의 충족여부 확인, 서울시 현장실사단이 해당시설을 방문하여 평가항목 확인의 절차를 거친 후, 서울시가 자치구의 추천, 시설장의 신청서, 현장실사단의 의견서를 토대로 심의하여 선정한다. 공인결과는 자치구를 통해 해당시설에 통보하고 서울시 보육포털시스템 및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한다. 자치구가 확인할 기본요건은 정부평가 인증 여부, 1가지 이상의 맞춤형보육서비스 실시 가능성, 기타 민원 및 부정적 보도사례 여부, 행정처분 여부 등이다. 공인기간은 정부 평가인증 취소 등 기타 취소사유 발생시까지이고 참여 수수료는 없다. 서울시는 시설장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다.

2) 평가 기준

서울어린이집 공인 심사 기준은 평가인증 통과에 기본 점수로 부여하고, 맞춤형보육, 안심보육, 클린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 추가 지표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평가인증 이외에 추가로 관찰 평가하는 총 문항수는 45문항이다.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 기준의 특성을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필수항목을 둔다. 이는 비상재해대비시설이 설치 및 대피시설로서의 기능, 시설명의를 1시설 1계좌 사용,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신용카드, 금융기관을 통한 수납의 세 가지이다. 비상재해대비시설은 2층 이상에는 층별로 비상재해대비시설이 설치되어 있고¹⁴⁾, 실제 소방훈련에 사용하고 있어야 하고, 1층은 주 출입구 외의 창문, 베란다 등 사람 출입이 가능한 비상용 출구가 있어야 한다. 시설명의를 1시설 1계좌 사용은 세입세출 외 현금통장(4대 보험, 소득세 납입용)인데, 퇴직적립금 통장 별도 관리는 인정한다. 세 번째는 회계 투명성을 보육료와 기타경비의 수납내역 공지와 투명한 수납방식에 대해 확인하여 평가한다.

둘째, 평가인증 이외 추가 관찰 평가 문항 45개 중 10개 문항은 가중치를 둔다. 즉, 화재 등 재해에 대비한 대책 관련 5개 문항과 시설명의를 1계좌 사용 및 회계 관리 투명성 관련 5개 문항은 문항 당 2점으로 기타 문항 1점에 비하여 가중치를 두고 있다.

공인을 받은 후에 사후 요건으로는 1시설 1명·의원 주치의 지정, 회계관리시스템

1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8조 제 1항 별표9

14) 나선형 돌음계단, 자동설치식 미끄럼대, 구조대, 완강기는 불인정

및 클린카드 사용, 보육교사 자율장학 참여를 준수하여야 한다.

공인은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점수 이상(현재 85점)인 시설을 공인심의위원회에서 공인 어린이집으로 결정한다.

〈표 IV-1-1〉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분야

분야	영역	평가기준	문항수	배점
기본요건	7	○ 보건복지가족부의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	-	자치구
맞춤보육	1	○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여건	5	5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필수항목)	5	
안심보육	5	○ 보육시설내 안전사고 예방조치	5	25
		○ 양질의 급·간식 제공	5	
		○ 보육시설의 청결과 위생	5	
		○ 1시설 1계좌 개설 운영 (필수항목)	5	
클린운영	4	○ 보육료 및 기타경비 관리 (필수항목)	5	20
		○ 보육시설 운영 투명성	5	
보육인력의 전문성	1	○ 종사자 자질향상	5	5
종합평가			1	10

3) 운영 관리

가) 맞춤 보육서비스 제공

공인어린이집은 구청에서 요청하는 경우 시간연장, 시간제, 휴일, 장애아, 다문화 가족 자녀 보육 등 맞춤(취약)보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구청에서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류한 경우는 예외이다. 맞춤(취약)보육에 따르는 제 비용은 각각의 기준에 따라 지원 및 수납하고, 실시간 보육정보 조회, 맞춤보육 one-stop 서비스를 구현한다.

나) 안심 보육서비스 제공

첫째,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모니터 요원의 정기점검을 통해 시설 운영 실태 및 공인기준 이행여부 확인한다. 2010년 서울형 어린이집 확인 내용은 급식 위생, 시설안전, 아동인권, 맞춤보육, 보육인력의 전문성, 클린보육 등 49개 항목이다.¹⁵⁾

둘째, 어린이집 주치의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어린이집에서는 거리, 규모 등을 감

안하여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과 협정을 체결하고 서울시 보육포털에 주치의 정보를 등록한다. 자치구에서는 관내 병·의원(소아과, 내과, 가정의학과), 보건소 및 대형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주치의 협약 및 의료활동을 관리하고 지원한다.

셋째,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모서리보호대, 바닥미끄럼방지 등과 같은 시설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이행하고, 미끄럼틀, 비상계단 등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고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 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다.

넷째, 아동급식은 자체 조리하고 학부모에게 급간식 내용을 공개한다. 그리고 2010년 자치구 단위로 식재료 공동구매를 시행한다.

다섯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시설장 및 교사는 의무보수교육을 이행한다. 2009년부터 보수교육과정에 아동인권 관련 과목이 필수 편성되었다. 기타종사자는 아동인권,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연 6시간 교육을 받는다.

다) 클린운영

보조금과 보육료 등 일체의 수입·지출은 시설명의로 1개 계좌에 통합관리한다. 모든 수입, 지출은 예산에 반영하여 특기교육비 등 일부 수입금의 누락을 방지한다.

신규 공인받은 서울형 어린이집 및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회계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받아 회계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예산집행은 승인(등록)된 결제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다.

보조금 신청 및 집행, 예산·결산·집행에 관한 사항 등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기타

민간 보육시설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받은 경우에는 시설운영 및 관리기준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소 우선순위와 보육료 및 입소료 등 수납, 종사자 급여 등 필요경비 지출과 기타 공인시설로서의 제반사항 이행(다만, 차량운행은 가능)과 같은 국·공립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

4) 지원

가) 지원조건

공인보육시설은 정부에서 정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른 인건비

15) 비서울형은 맞춤형보육, 보육인력의 전문성, 클린보육을 제외하므로 35개 항목임

지급, 4대 보험 종사자 전원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퇴직급여 제도 운영, 정부지원시설의 보육료단가 범위 내 보육료 수납, 교사대 아동비율 및 기타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조건 준수,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나) 지원내용

재정 지원은 인건비, 처우개선비, 부모 보육료 수입의 10% 추가 지원 등으로 정원 77인 현원 65인 시설을 기준으로 보면 기본보조금 이외 인건비로 6,596천원, 처우개선비 1,385천원, 운영비 1,769천원으로 총 975만원 정도가 추가로 지원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IV-1-2〉 서울형 어린이집 재정지원(2010)

단위: 천원

사업내용	일반	서울형	증감
인건비	-	9,092	△9,092
기본보육료	2,496	-	▽2,496
처우개선비	-	1,385	△1,385
보육료 수입 10% 추가	-	1,769	△1,769
계	2,496	12,246	△9,750

주: 현원 66인, 교사 7인으로 영아반 4반, 유아반 3반임

이러한 추가 지원은 보육료 인하로 낮아지는 수입을 보충 기재로 부족하지 않게 설계되었다. 인건비 등 구체적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건비 지원

민간시설의 인건비 지원 대상 및 비율은 정부지원시설과 동일하다. 시설장은 인건비의 80%(21인 이상 시설에 한함), 영아반 교사는 인건비의 80%, 유아반 교사는 인건비의 30%, 취사부(1인)는 인건비의 100%(현원 40인 이상 시설에 한함)를 지원한다. 인건비 지원 비율에 따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료 및 퇴직적립금의 사업자 부담금도 지원한다. 다만, 시설장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만 지원하고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 한하여서는 전부를 지원한다.¹⁶⁾

16) 이외 특수보육 지정시설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19시 30분 이후 보육아동 3명이상 그리고 21시 이후까지 1명이상 보육한 경우 민간·가정시설 교사 1인당 100만원이 국비보조로 지원되고,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에서 나머지 차액을 지원한다. 민간시설은 교사배치 3명 이상시부터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에서 전액 지원하고, 가정시설은 교사배치 2명 이상시부터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에서 전액 지원한다. 19시 30분 이후 보육아동 1명이상

그러나 서울형 공인시설 신규 지원시 시설종사자의 급여기준을 1호봉으로 적용하고, 보육교사와 취사부는 매년 호봉을 승급하나 시설장은 승급 없이 매년 1호봉 기준으로 지원한다. 호봉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연 2회 시행하고 시설간 보육교사의 이동시에는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이후 경력만 급여호봉으로 인정한다.¹⁷⁾

(2) 보육료 수입의 10% 지원

기타 운영비는 현원 기준으로 평균보육료 수입의 10%가 지원된다.¹⁸⁾ 아동 현원은 매월 신청일 기준 표준보육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등재된 수를 기준으로 하며 방과후 아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평균보육료의 단가는 매년 서울시에서 정하는데, 이는 연령별 보육료가 아니라 보육료 평균으로 2010년은 27,000원을 적용한다.

(3) 기타 운영비 등

처우개선비, 중식비 등도 정부지원시설과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교재교구비 등 민간 시설에 지원하는 국고사업은 서울형어린이집도 동일 적용된다.¹⁹⁾

이외 환경개선비, 도우미, IP-TV 설치, 급식 조리기구 등을 지원한다. 환경개선비는 시비 100% 지원사업으로 시설규모별로 지원한도액을 차등한다. 또한 보육아동 현원 40인 이상 서울형 어린이집에는 도우미 비용으로 월 80만원을 지원하는데, 4대 보험은 별도로 지원하고 퇴직금은 시설이 부담한다. 단, 도우미 지원은 서울형 어린이집 중에만 지원된다. IP-TV 설치 지원은 시설장, 교사전원이 동의하에 설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급식 조리기구(오븐기) 지원은 100인 미만 시설의 경우 가정용 오븐기 구입비용의 80%(시설당 최대 40만원), 100인 이상 시설의 경우 단체급식용 오븐기(100인용) 구입비용의 90%(시설당 최대 900만원)를 지원한다.

5) 공인 취소 등 사후관리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된 시설은 매년 1회 자체 운영보고서를 자치구에 제출하

그리고 21시 이후까지 1명이상 보육한 경우 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에서 지원함.

- 17) 시설장의 경우 시설장의 실제 경력이 지원기준(1호봉)보다 높은 경우 실제 경력 인정하여 지급을 하고, 보육교사 등은 지원기준을 적용하되, 서울형 공인이전의 급여가 보조금 지원기준보다 높은 경우 시설부담으로 조정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18) 인건비와 기타 운영비는 시와 구가 70:30으로 분담함. 이외 1환경개선비, 조리기구 지원은 시비 사업이고, 보육도우미 인건비는 시와 구가 50:50으로 분담함.
- 19) 지원기준에 따른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산출액을 지원하되, 민간시설에 대한 기본보육료를 우선집행하고 부족분을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비(시·구비)로 집행함.

여야 한다. 정부평가인증 취소 또는 기간만료 시에는 공인자격도 함께 상실된다. 종사자 급여를 지원기준보다 낮게 지급하거나 보육료를 기준단가보다 높게 수납한 경우, 사후 공인 조건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취소된다. 공인취소 사유 중 변경을 제외하고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공인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6) 서울형어린이집 현황

서울시 소재 보육시설 중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을 받아 운영 중인 보육시설은 2010년 10월말 현재 총 2,550개소이다. 총 2,592개소가 공인을 받았으나 42개소가 공인 취소되었다. 시설유형별로는 민간 1,041개소, 가정 903개소, 국공립 561개소이며, 직장/부모협동이 23개소, 법인 22개소이다. 서울형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수는 총 120,194명으로, 정원대비 총 이용률은 94%이다. 시설유형별 이용률은 보통 94~95% 수준이며, 직장/부모협동보육시설은 89%로 다른 시설유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

즉, 기존 인건비 지원 시설을 제외하면 서울형으로 추가로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 받게 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70,654명이다.

〈표 IV-1-3〉 서울형어린이집 시설 및 아동수 현황: 2010. 10

단위: 개소, 명, %

구 분	계	국공립	법 인	민 간	가 정	직 장 부모협동
보육시설						
총 시설수(A)	5,684	626	44	2,497	2,404	113
서울형(B)	2,550	561	22	1,041	903	23
비율(B/A)	44.9	89.6	50.0	41.7	37.6	20.4
아동						
총정원	230,888	53,755	2,752	126,472	41,028	6881
총현원(C)	193,723	49,338	2,364	103,965	32,578	5478
서울형 정원	127,767	50,363	2,255	57,092	16,168	1,889
서울형 현원(D)	120,194	47,405	2,135	53,464	15,511	1,679
현원 비율(D/C)	62.0	96.1	90.3	51.4	47.6	30.6

자료: 보건복지부(2009.12). 보육통계.
서울시(2010. 10). 내부자료

7) 서울형 어린이집의 성과와 한계²⁰⁾

2010년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서울시 어린이집 원장과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형 어린이집의 성과와 한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교사의 인건비 지원으로 급여 수준이 상향 조정되었다. 그러나 인건비 지원은 1호봉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교사 경력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시설장들은 조사에서 교사의 처우 개선 및 관리 체계화의 개선에 대한 질문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공인 어린이집과 비공인 어린이집 간 7점 척도 평균을 비교해 보았을 때 공인 어린이집은 5.68점, 비공인 어린이집은 5.04점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이 결과에 차이를 보인 이유는 공인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의 임금이 1호봉이기는 하지만 국공립 수준을 기준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설명의를 1개 계좌에 통합관리의 클린 운영으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되었다. 회계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재정 운영 투명화에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공인 어린이집의 경우 7점 만점에서 평균 5점대이었고 비공인 어린이집은 평균 4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무회계규칙 지출에서 기타 운영비 항목 10% 준수는 74.4%가 잘 지키지 못한다고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인건비 지원으로 부모 보육료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원천적으로 서울형 어린이집의 선정 기준으로 임대나 자가의 경우 낮은 자기자본 비율 등으로 용자에 따라 이자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근본적 요인이 있다.

셋째,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의 효과로 어린이집 재정운영이 안정되었고 부모의 보육료가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료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보육료 인하는 서울형 브랜드의 신뢰도와 더불어 아동모집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서울형 어린이집 중 입소아동의 증가에 대해서는 민간 29.5%, 가정 18.5%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고, 대기아동은 민간 37.3%, 가정 30.5%에서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브랜드로서 공인 어린이집에 대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인식은 높지 않고, 또한 이를 어린이집 선택 기준으로 삼지 않는 부모도 상당수여서, 홍보나 정보 전달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넷째, 공인어린이집의 효과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에 대한 인식이 부분적으

20) 이 부분은 서문희·최혜선(2010). 2010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췌하여 요약함.

로 나타났다. 공인 받기 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한 부모를 대상으로 13가지 항목의 개선을 비교한 결과, 시설설비, 교재교구 및 장비, 내부분위기의 3개 항목은 약 50% 이상이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주변환경, 건강관리, 급간식관리, 안전관리, 교육내용은 약 30%가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원장에 대한 호감, 교사에 대한 호감, 비용, 부모참여, 부모교육 및 상담 항목은 약 20% 수준으로 타 항목에 비해서 약간 낮았다. 특히 시설설비, 교재 교구 및 장비, 내부분위기의 3개 항목에서 변화되었다는 비율이 높았다.

〈표 IV-1-4〉 서울형 공인 이후 변화에 대한 부모 인식

단위: %(명)

구분	변화없음	약간변화있음	많은변화있음	잘모르겠음	계
원장에 대한 호감	75.5	14.7	5.4	6.3	100.0(261)
교사에 대한 호감	71.6	18.6	6.1	3.8	100.0(261)
주변환경	65.3	22.0	9.5	3.2	100.0(261)
시설설비	40.0	37.3	17.7	5.0	100.0(261)
교재교구 및 장비	43.2	40.7	9.7	6.4	100.0(261)
내부분위기	47.8	34.3	11.6	6.2	100.0(261)
비용	69.7	20.7	6.8	2.8	100.0(261)
건강관리	60.0	23.6	11.8	4.6	100.0(261)
급간식관리	56.8	27.8	11.2	4.3	100.0(261)
안전관리	63.8	22.7	7.5	6.1	100.0(261)
교육내용	61.4	23.6	9.9	5.1	100.0(261)
부모참여	74.7	14.0	7.2	4.1	100.0(261)
부모교육 및 상담	76.6	13.2	6.0	4.1	100.0(26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결과임.

한편, 서울시 보육시설 이용 부모를 대상으로 서울 공인 어린이집을 공공 어린이 집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에 대하여 서울형 어린이집이 공공 어린이 집이라는 응답은 34.0%이며 조금 다르다가 34.6%이고 13.0%는 전혀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민간·가정 서울형과 비서울형 어린이집 원장의 의견도 투자한 만큼 개선이 있었다는 비율이 서울형 35.1%, 비서울형 14.1%로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가운데 차이를 보였다.

시설장들도 서울시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서울시가 재정을 투자한 만큼 개선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개선이 되었으나 투자 규모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29.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투자한 만큼 개선이 있

었다가 20.9%로 그 다음을 이었다. 개선을 되었으나 투자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의견은 18.4%, 잘 모르겠다도 18.4%인 것으로 나타났고 투자에 비해 개선은 미미하다가 12.9%인 것으로 나타나 투자 대비 개선 정도에 대한 시설장의 인식은 부족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서울형과 비서울형 어린이집 원장의 의견을 비교해 보면, 투자한 만큼 개선이 있었다는 비율이 서울형 35.1%, 비서울형 14.1%로 차이를 보였다.

〈표 IV-1-5〉 민간·가정 보육시설 서울형·비서울형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의 개선 정도
단위: 점(명)

구 분	투자에 비해 미미	투자에 비해 크게 부족	투자에 비해 다소 부족	투자한 만큼 개선	잘 모름	전체(수)	$X^2(df)$
전체	12.0	18.6	29.1	22.6	17.6	100.0(1,078)	96.73(4) ^{***}
서울형	6.3	15.2	32.2	35.1	11.1	100.0(441)	
비서울형	16.0	20.9	27.0	14.0	22.1	100.0(637)	

주: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다섯째,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일과운영, 보육시설의 안전과 위생 등은 시설유형과 서울형 공인 여부에 상관없이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 안전과 시설의 청결과 위생, 건강 및 영양관리와 관련하여 7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모든 문항의 5점 이상의 긍정적 응답 비율이 90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 공인과 비공인 어린이집간의 평균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여섯째, 부가적으로 서울시가 공인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자율장학은 그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서울시 시설장의 70%도 자율장학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사업 추진과정상 지원이 부족하여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시설장들은 중요한 조건으로 전문가 교사 연구 지원을 요구하였다.

이외에 보육도우미 지원으로 시설 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으나, 맞춤형보육이나 주치의제도, IP-TV 등은 사업의 미정착 등으로 평가는 높지 않았다.

나. 부산 공보육 어린이집 개요

부산시 소재 보육시설 1,400개중 중 부산시 지정 공보육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은 보육시설은 2010년 11월 현재 민간 18개, 가정 11개소로 총 29개소이다. 2009년 시범

사업기간에는 민간시설 14개소와 가정보육시설 4개소로 총 18개소가 참가하였다. 부산시 공보육어린이집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업 목적 및 신청 자격

부산시는 2009년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2010년부터 민간·가정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갖추고 일정 기준을 통과한 시설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육료는 인하하고 보육교사의 임금은 인상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는 부산형 공보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취약지역 위주의 확충으로 축소되고, 신축시 소요되는 신축부지제공, 시설비 및 인건비 부담으로 기피됨에 따라 대안으로 민간보육시설에 인건비를 정부지원시설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하여 교사의 만족도는 높이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 것이다.

부산시 공보육의 신청자격은 민간·가정보육시설 중 평가인증시설로 정원 91인 이하, 시설장 포함 종사자 12인 이하 시설²¹⁾ 중 동일 장소에서 3년 이상 운영한 시설이다. 이밖에 영유아 현원 2/3이상이 주민등록 기준 부산시 거주자로 구성되어 있고 시설장 역시 신청일 기산 1년 이상 부산시내 거주자여야 한다. 또한 3년 이내 행정 처분을 받았거나, 시설운영비리 및 아동학대 등과 관련하여 해당기관으로부터 조사 중에 있거나, 대표자 또는 시설장이 2개소 이상의 영유아 관련 학원이나 보육시설 외에 다른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을 신청자격에서 제외한다.

2) 사업 절차 및 지표

<표 IV-1-6>은 부산시 공보육 시설의 주요 신청절차와 평가기준으로, 부산시에서 1차 실무평가를 통해 2배수를 추천하고 2차 심화평가를 통해 3개권역별로 우선순위 결정 후 배분 비율에 따라 지정한다.²²⁾

1차 실무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보육아동 및 종사자 현황, 취약보육운영 상황, 비상재해대비·안전관리, 건물 현황, 물리적 환경, 운영 관리 등 7개 항목 46개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신청시설 중 고득점 순으로 2배수를 선정하여 2차 심화평가에서 최종 선정하는데 이때에는 보육시설의 설비 기준 준수 정도, 종사자 전문성 향상, 영유아 건강·급식·위생, 보육과정,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시설장의 전문성, 운영

21) 당초 정원 120인, 교사 15인에서 조정됨.

22) 2009년도에는 구·군 단위로 1차 평가를 시행하고 시에서 2차로 평가하던 것을 보다 공정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2010년부터는 1차부터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실적 및 계획 등 7개 항목 36개 지표를 통해 평가한다. 최종 선정을 위한 점수 배분은 1차 평가점수 40%, 2차 평가점수 40%, 평가인증 점수 20%를 반영한다.

1차 및 2차 평가위원은 별도로 구성하며, 위원은 현장, 전문가, 공무원 등이 고루 포함되도록 하며, 외부 평가위원은 2배수로 추천받아 구성한다.²³⁾

〈표 IV-1-6〉 부산시 공보육 평가 및 지정조건 및 배점

구분	1차 실무 평가		2차 심화 평가	
배점	100점		40점	
지표	7개 항목 46개 지표		7개 항목 36개 지표	
	소 계	100점	소 계	40점
항목별 배점	· 보육아동현황	10	· 보육시설 설비기준 준수	8
	· 취약보육운영 상황	10	· 종사자 전문성 향상	3
	· 종사자 현황	10	· 영유아 건강·급식·위생	8
	· 비상재해대비, 안전관리	12	· 보육과정	6
	· 건물 현황	20	· 가정, 지역사회와 협력	5
	· 물리적 환경	20	· 시설장의 전문성	5
	· 운영 관리	18	· 운영실적 및 계획	5
결과처리	· 신청시설 중 고득점 순으로 지정예 정수의 2배수 추천		· 1차평가점수(40%)+2차평가점수(40%) +평가인증점수(20%) ·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내 지정	

3) 준수 조건

부산시 공보육 사업에 선정된 시설은 일정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국공립시설 보 육료 단가로 보육료 수납, 국공립시설 1호봉에 해당하는 인건비 지급, 종사자 전원 4 대보험 가입 및 퇴직급여제도를 실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에서 정한 장부 등을 비치하고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수입과 지출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밖에도 의무사항은 아니나 시간연장, 장애아통합, 24시간보육 등 취약보육을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4) 지원

이상의 조건을 준수하는 시설에 대해 부산시는 시설장과 영아반 교사 인건비

23) 1차 실무 평가단은 국공립원장 1명, 대학교수 1명, 보육지원센터 1명, 여성개발원 1명, 공무원 1명으로 구성하고, 2차 심화 평가단은 국공립원장이 제외되고 시의원 1명이 들어감.

80%, 유아반 교사 인건비 30%, 취사부 인건비 100%의 인건비를 지원하고²⁴⁾ 영아전문 보육도우미를 우선 배치하는 등 인력을 지원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시설환경개선 등 기능보강비도 지원한다. 민간시설의 경우 평균 월 606만원을 지원한다.

5) 사후관리 및 취소

부산시는 공보육 사업에 선정된 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해 매년말 정기평가 및 3년 단위 종합평가를 통해 재지정하게 된다.

평가 결과 3회 연속 하위 10% 시설은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대표자 또는 시설장 변경 및 시설의 매매, 장소 이전, 중대한 행정처분, 시정조치명령 미이행 등의 취소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모든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고 부당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되며, 지정서, 지정현판 환수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또한 상기 취소사유 발생으로 취소된 시설은 향후 3년간 재지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6) 서울형 어린이집과의 비교

부산시 공보육 사업은 일정 기준을 갖춘 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는 점에서 서울형 어린이집과 기본 발상 및 골자가 동일하다. 그러나 전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공인평가를 실시하는 서울형 어린이집과는 추진대상 및 규모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차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인증 활용방법에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평가인증 통과여부를 반영하고 이외 일부 지표표를 추가하지만, 부산시는 77개 항목의 1, 2차 평가결과와 함께 총점에 20%를 점수로 반영한다.

둘째, 서울과 부산시 공인 어린이집은 신청대상에서의 차이가 있다. 서울시가 시설 규모 등 제한이 없는 것에 비하여 부산시에서는 정원 91인 이하, 시설장 포함 종사자 12인 이하 시설 중 동일 장소에서 3년 이상 운영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영유아 현원 2/3이상이 주민등록 기준 부산시 거주자로 구성되어 있고 시설장 역시 신청일 기산 1년 이상 부산시내 거주자여야 하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이 2개소 이상의 영유아 관련 학원이나 보육시설 외에 다른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을 신청자격 제외 시설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24) 단, 인건비 지원 중 영아기본보조금 차액분 및 교사처우개선비(월5~10만원)는 미지급함.

〈표 IV-1-7〉 부산/서울시 사례 비교

구 분	부산시 민간·가정 공보육 어린이집	서울시 서울형 어린이집
추진대상	- 민간·가정보육시설 (2014년까지 104개)	- 총 어린이집의 50%인 2800개 서울형 공인 목표
예산지원	- 종사자 인건비 30~100% 지원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	- 종사자 인건비 30~100% 지원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 - 운영비로 평균보육료수입 10%
공인기간	- '10년부터 3년단위 지정	- 기준 없음
지정절차	- 신청→실무평가(1차)→심화평가(2차)→지정	- 신청→자치구 추천→현장평가→공인 심의→결정
급여호봉	- 급여 호봉 : 최초 1호봉(매년승급)	- 급여 호봉 : 최초 1호봉(매년승급)
지정심의	- 심사위원 구성(1차5명, 2차5명) 심의 및 현장평가 병행	- 심의위원회 구성(15명) - 공개모집 - 현장평가단 선발(40명) - 공개모집
평가지표 및 점수	- 1차 7개항목 46개, 2차 7개항목 36개지표 - 1차 100점(예정수의 2배수추천), 2차 100점(1차점수 40%+ 2차 점수 40% + 평가인증점수 20%)	- 정부평가인증(80개 지표), 클린운영, 맞춤보육, 안심보육 등 49개 지표
사후관리	- 매년말 평가 및 3년 단위 평가	- 안심보육 모니터링

셋째, 평가기준의 차이에서 가정 두드러지는 점이 시설 건물 소유상태이다. 서울시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에 비하여 부산시에서는 임대시설이나 자기 자본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상당한 마이너스 점수를 주어 사실상 선정이 불가능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넷째, 지원에서의 기타운영비 10% 지원여부이다. 서울시가 평균 보육료를 기준으로 아동수 만큼의 10%를 추가로 지원하는데 비하여 부산시 공인 어린이집은 이러한 요인이 없다.

다섯째, 공인 인증기간을 서울시는 두고 있지 않으나 부산은 3년으로 둔다.

이상과 같은 점을 두고 볼 때 부산형 공인 어린이집이 소수 정예를 지향한다면 서울형 공인 어린이집은 민간 시설들의 이해를 수용하여 다수를 포괄하려는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볼 때 부산형이 공공성이 보다 높은 공인 어린이집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다. 공공형 어린이집 관련 의견

평가인증 결과가 우수한 민간, 가정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

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시설장과 보육전문가 의견을 조사한 것이다.

1) 제도 수용성

보육전문가들은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88.2%, 반대는 11.8%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학계보다 보육정보센터에서 찬성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표 IV-1-8 참조).

〈표 IV-1-8〉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 도입 방안

단위: %(명)

구분	찬성	반대	계
전체	88.2	11.8	100.0(76)
학계	86.8	13.2	100.0(38)
보육정보센터	89.5	10.5	100.0(3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대한 보육 전문가 조사」 결과임.

〈표 IV-1-9〉 공공형 어린이집 전환 신청 의향

단위: %(개소)

구분	있음	없음	계(수)	$X^2(df)$	구분	있음	없음	계(수)	$X^2(df)$
전체	70.2	29.8	100.0(457)			70.2	29.8	100.0(457)	
시설유형					지역				
민간	67.1	32.9	100.0(237)	2.34(1)	고양	61.7	38.3	100.0(222)	15.02(1)***
가정	73.6	26.4	100.0(220)		대구	78.3	21.7	100.0(235)	

주: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관한 시설장 조사」 결과임.

보육시설장들도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 도입시 이를 선택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70.2%이었다. 시설유형은 가정어린이집이 민간 어린이집보다 높고, 지역은 대구가 고양시보다 높았다(표 IV-1-9 참조).

2) 평가인증과 조건

다음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시 평가인증 점수 외에 추가 요건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전문가들은 추가 조건에 대하여 높은 수용성을 나타냈으나, 시설장들의 의견은 다소 달랐다.

<표 III-4-10>은 보육전문가를 대상으로는 임대시설 제한, 용자 과도한 자가시설 제한, 어린이집 복수운영 및 학원 등 유사기관 동시 운영 대표자 제한,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놀이터 요건 충족 등 4가지 항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에 대하여 찬성 비율은 어린이집 복수운영 및 학원 등 유사기관 동시 운영 대표자 제한은 찬성이 94.8%이고 용자 과도한 자가 시설 제한과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놀이터 요건 충족은 92% 수준이며 임대시설 제한은 72.4%이었다.

<표 IV-1-10>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시 평가인증 점수 외에 추가 요건 찬성 비율
단위: %(명)

구분	임대시설 제한	용자 과도한 자가시설 제한	어린이집 복수 유사기관 동시 운영 대표자 제한	비상재해대비 시설 및 놀이터 요건 충족	(수)
전체	72.4	92.2	94.8	92.0	(76)
학계	78.9	92.1	92.1	94.7	(38)
보육정보센터	65.8	92.3	94.8	89.2	(3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대한 보육 전문가 조사」 결과임.

학계와 보육정보센터간 차이는 용자 과도한 자가시설 제한과 어린이집 복수 유사기관 동시 운영 대표자 제한에는 차이가 크지 않으나 임대시설 제외와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놀이터 요건 충족은 학계보다 보육정보센터 전문가가 찬성한다는 비율이 낮았다. 특히 임대여부는 13% 포인트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응답결과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응답은 임대시설 제한과 용자 과도한 자가시설 제한에 대한 응답 차이이다. 즉, 일부 응답자는 임대시설은 되어도 용자가 과도한 자가시설은 안 된다는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임대 시설이 용자가 많은 자가시설보다 재정적으로 압박이 심하지 않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임대시설을 허용할 경우에는 그 규모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다음 <표 IV-1-11>은 시설장을 대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시 평가인증 점수 외에 추가 요건을 조사한 결과이다. 항목은 자가시설 및 자기자본 또는 상환금 비중에 대한 조건, 타 보육시설 및 유치원, 유사기관 운영금지,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놀이터 요건 충족 등 3가지이다. 이에 대하여 적절하다는 비율은 자가시설 및 자기자본 또는 상환금 비중에 대한 조건 33.6%, 타 보육시설 및 유치원, 유사기관 운영금지 45.8%,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놀이터 요건 충족 54.2%이다.

〈표 IV-1-11〉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시 평가인증 결과 외에 추가 조건 적절성
단위: %(개소)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수)	X ² (df)
타 보육시설 및 유치원, 유아기관 운영 금지							
전체	13.2	21.3	19.7	23.2	22.6	100.0(461)	
시설유형							
민간	10.1	21.1	20.7	26.2	21.9	100.0(237)	5.69(4)
가정	16.5	21.4	18.8	20.1	23.2	100.0(224)	
지역							
고양	18.8	22.8	20.5	20.1	17.9	100.0(224)	46.73(4)**
대구	8.0	19.8	19.0	26.2	27.0	100.0(237)	
비상재해대피시설, 놀이터 설치기준 등 충족							
전체	4.8	9.5	31.5	39.7	14.5	100.0(461)	
시설유형							
민간	2.5	6.8	32.1	42.2	16.5	100.0(237)	11.18(4)*
가정	7.1	12.5	30.8	37.1	12.5	100.0(224)	
지역							
고양	5.8	10.7	32.1	37.5	13.8	100.0(224)	2.34(4)
대구	3.8	8.4	30.8	41.8	15.2	100.0(237)	
자가시설 및 자기자본 또는 상환금 비중에 대한 조건 충족							
전체	12.4	20.6	33.4	24.3	9.3	100.0(461)	
시설유형							
민간	12.2	24.9	32.9	24.1	5.9	100.0(237)	10.52(4)*
가정	12.5	16.1	33.9	24.6	12.9	100.0(224)	
지역							
고양	15.6	19.2	35.3	17.9	12.1	100.0(224)	15.52(4)**
대구	9.3	21.9	31.6	30.4	6.8	100.0(237)	

주: * p<.05, ** p<.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관한 시설장 조사」 결과임.

시설유형은 항목별로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적절하다는 비율이 차이를 보였으나, 지역별로 3가지 문항 모두 대구에서 적절하다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응답에는 보육시설의 현재 상태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된 보육시설의 시설 소유 형태는 용자 없는 자가 10.6%이고 용자가 있는 자가 시설이 40.9%이며 47.0%는 유상임대로 조사되었다. 자가 비율은 가정보육시설이 높으며 지역별로는 고양시보다 대구시가 높다(표 IV-1-12 참조).

또한 조사된 보육시설 중 82.3%는 현 보육시설 이외 타 시설은 운영하지 않으나 17.7%는 타 시설을 운영한다고 응답하였다. 시설유형별로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가정 시설 운영자가 타 시설 운영 비율이 높고 지역별로는 고양시가 대구시보다 타 시설을 운영한다는 비율이 10% 이상 높다.

〈표 IV-1-12〉 시설 건물 소유형태 및 타 시설 운영 여부

단위: %(개소)

구분	소유형태				타 시설 운영 여부		계(수)
	자가(유자없음)	자가(유자)	유상임대	무상임대	없음	있음	
전체	10.6	40.9	47.0	1.5	82.3	17.7	100.0(462)
시설유형							
민간	9.2	28.6	59.2	2.9	84.0	16.0	100.0(238)
가정	12.1	54.0	33.9	-	80.4	19.6	100.0(224)
지역							
고양	9.8	36.4	52.9	0.9	76.9	23.1	100.0(225)
대구	11.4	45.1	41.4	2.1	87.3	12.7	100.0(23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관한 시설장 조사」 결과임

3) 지정 후 준수 사항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 시,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국공립보육시설에 준하는 운영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시설장이나 전문가는 어느 정도까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수용성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시 평가인증 점수 외에 추가 요건과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은 추가 조건에 대하여 높은 수용성을 나타냈으나 시설장들의 의견은 다소 달랐다.

〈표 IV-1-13〉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요건에 대한 시설장 의견

단위: %(개소)

조건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수)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	5.6	14.1	45.6	29.5	5.2	100.0(461)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의 보육시설 급여 지급	2.2	5.2	18.2	43.2	31.2	100.0(461)
표준보육과정 운영 의무화	2.0	5.4	31.2	49.0	12.4	100.0(461)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시간 제한	8.9	30.6	33.0	24.3	3.3	100.0(461)
보육교사 자율장학 참여	2.8	7.2	49.0	34.7	6.3	100.0(46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관한 시설장 조사」 결과임.

〈표 IV-1-14〉 시설유형 및 지역별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요건에 대한 시설장 의견
단위: %(개소)

조건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수)	$\chi^2(df)$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	시설유형							
	민간	3.4	13.9	50.2	29.5	3.0	100.0(237)	11.52(4)*
	가정	8.0	14.3	40.6	29.5	7.6	100.0(224)	
	지역							11.00(4)*
고양	7.1	11.6	51.6	24.4	5.3	100.0(225)		
	대구	4.2	16.5	39.8	34.3	5.1	100.0(236)	
국공립보 육시설 수준의 보육시설	시설유형							
	민간	3.4	3.4	19.8	41.8	31.6	100.0(237)	7.35(4)
	가정	0.9	7.1	16.5	44.6	30.8	100.0(224)	
	지역							7.01(4)
급여	1.8	7.1	21.3	40.9	28.9	100.0(225)		
	지급	2.5	3.4	15.3	45.3	33.5	100.0(236)	
표준보육 과정 운영 의무화	시설유형							
	민간	2.5	5.5	31.2	50.2	10.5	100.0(237)	2.28(4)
	가정	1.3	5.4	31.3	47.8	14.3	100.0(224)	
	지역							15.91(4)**
고양	1.8	6.2	39.1	40.4	12.4	100.0(225)		
	대구	2.1	4.7	23.7	57.2	12.3	100.0(236)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시간 제한	시설유형							
	민간	11.4	32.1	34.6	19.8	2.1	100.0(237)	10.13(4)*
	가정	6.3	29.0	31.3	29.0	4.5	100.0(224)	
	지역							9.25(4)*
고양	12.4	29.3	34.2	21.8	2.2	100.0(225)		
	대구	5.5	31.8	31.8	26.7	4.2	100.0(236)	
보육교사 자율장학 참여	시설유형							
	민간	2.1	7.2	48.1	36.7	5.9	100.0(237)	1.63(4)
	가정	3.6	7.1	50.0	32.6	6.7	100.0(224)	
	지역							4.53(4)
고양	2.2	6.2	52.4	34.7	4.4	100.0(225)		
	대구	3.4	8.1	45.8	34.7	8.1	100.0(236)	

주: * $p < .05$, ** $p < .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관한 시설장 조사」 결과임.

먼저 시설장을 대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이후 준수하여야 할 조건에 대하여,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의 보육시설 급여 지급, 표준보육과정 운영 의무화,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시간 제한, 보육교사 자율장학 참여의 5가

지 항목에 대하여 적절성 정도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적절과 매뉴 적절을 합한 비율은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 34.7%,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의 보육교사 급여 지급 74.4%, 표준보육과정 운영 의무화 61.4%,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시간 제한 27.6%, 보육교사 자율장학 참여 41.0%로 조사되어 이 중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의 보육시설 급여 지급과 표준보육과정 운영 의무화는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시간 제한은 가장 수용성이 낮았다. 지역별로는 대체로 고양시보다 대구에서 수용적인 태도 비율이 높았고 시설유형별로는 문항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표 IV-1-13, 표 IV-1-14 참조).

다음은 보육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에 국공립보육시설에 준하는 운영기준을 적용할 경우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사한 것이다. 보육비용 수납한도액, 취약보육 제공, 보육과정 운영,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클린카드 사용과 엄격한 회계보고의 7가지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를 보면 7가지 문항 모두 90% 이상이고, 학계와 보육정보센터로 나누어 보아도 모두 90% 이상으로 반대자는 극소수이다. 학계는 취약보육 제공과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을 하는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100%로 가장 많고 94.1%가 보육과정 운영을 찬성한다고 하였다. 91.4%는 보육비용 수납한도액을 찬성하였다. 보육정보센터 역시 학계와 마찬가지로 취약보육 제공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이 97.2%이다. 공공형 어린이집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학계는 클린카드 사용 찬성 97.1%, 엄격한 회계보고 찬성이 100%로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보육정보센터 역시 클린카드 사용 94.7%, 엄격한 회계보고가 97.4%로 학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표 IV-1-15 참조).

〈표 IV-1-15〉 국공립보육시설에 준하는 운영기준 적용에 대한 찬성률

단위: %(명)

구분	수납한도액	취약보육 제공	입소우선 순위	보육과정	종사자 인건비	클린카드	엄격한 회계	(수)
전체	93.1	100	92.8	93	98.6	95.9	98.6	(71)
학계	91.4	100	93.8	94.1	100	97.1	100	(35)
보육정보센터	94.6	100	91.9	91.9	97.2	94.7	97.4	(3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대한 보육 전문가 조사」 결과임.

3) 지원 수준 및 지원금 용도

다음은 공공형 어린이집 재정지원 수준에 관한 시설장의 의견을 나타낸다. 질문은 ① 영아 기본보육료 미지원 + 국공립 시설 수준의 인건비 지원, ② 영아 기본보육료 미지원 + 표준보육비용과 보육료 지원 단가 차액 지원, ③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 + 유아 표준보육비용과 보육료 지원 단가 차액 지원, ④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 + 민간 시설 유아보육료 수납한도액과 보육료 지원단가 차액 지원의 4가지 보기를 주고 하나를 고르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IV-1-16〉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시 정부의 지원금 수준

단위: %(개소)

구분	전체	시설유형		지역	
		민간	가정	고양	대구
영아 기본보육료 미지원 + 국공립 시설 수준의 인건비 지원	34.9	39.0	30.5	26.3	43.0
영아 기본보육료 미지원 + 표준보육비용과 보육료 지원단가 차액	1.1	1.7	0.4	2.2	-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 + 유아 표준보육비용과 보육료 지원단가 차액	25.1	19.5	30.9	25.4	24.7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 + 민간시설 유아보육료 수납한도액과 보육료 지원단가 차액	39.0	39.8	38.1	46.0	32.3
계(수)	100.0 (459)	100.0 (236)	100.0 (223)	100.0 (224)	100.0 (235)
$X^2(df)$		10.09(3) [*]		19.85(3) ^{***}	

주: * $p < .05$,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관한 시설장 조사」 결과임.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보기는 ③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 + 민간시설 유아보육료 수납한도액과 보육료 지원단가 차액 지원으로 39.0%가 선택하였고, 다음은 ① 영아 기본보육료 미지원 + 국공립 시설 수준의 인건비 지원으로 34.9%가 선택하였으며, ②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 + 유아 표준보육비용과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 차액 지원이 25.1%, ④ 영아 기본보육료 미지원 + 표준보육비용과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 차액이 1.1%이었다(표 IV-1-16 참조).

가정시설이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 + 유아 표준보육비용과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

가 차액 지원'을 선택한 비율이 민간어린이집보다 매우 높고, 지역별로는 대구에서 '영아 기본보육료 미지원 + 국공립 시설 수준의 인건비 지원'을 선택한 비율이 높고 고양시에서는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 + 민간시설 유아보육료 수납한도액과 보육료 지원단가 차액 지원'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편 지원금의 용도 제한에 대해서는 적절 32.7%, 부적절 29.3%로 부적절보다는 적절하다는 비율이 높았다. 민간 어린이집에 비하여 가정어린이집에서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IV-1-17 참조).

〈표 IV-1-17〉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시 지원금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 및 용도 제한
단위: %(개소)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수)	X ² (df)
전체	6.5	22.8	38.0	29.9	2.8	100.0(461)	
시설유형							
민간	6.8	23.6	40.9	26.6	2.1	100.0(237)	10.69(4)*
가정	6.3	21.9	34.8	33.5	3.6	100.0(224)	
지역							
고양	6.2	21.3	38.7	28.4	5.3	100.0(225)	4.04(4)
대구	6.8	24.2	37.3	31.4	0.4	100.0(236)	

주: * $p <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관한 시설장 조사」 결과임

5) 공공형어린이집 규모 제한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 시 규모를 지역별로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학계와 보육정보센터의 의견을 비교하여 조사한 결과이다. 보육정보센터는 제한하는 것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60.5%로 58.3%인 학계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 시 규모를 지역별로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할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이 전체 민간 가정 보육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학계는 40% 미만인 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는 반면에 보육정보센터는 40% 이상이 50%이고 21.4%는 20% 미만으로 응답하여 학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표 IV-1-18〉 공공형 어린이집 규모를 지역별로 일정 비율 제한

단위: %(명)

구분	찬반			찬성시 비율				
	찬성	반대	계	20%미만	30%미만	40%미만	40%이상	계
전체	59.5	39.2	100.0(74)	22.6	15.1	24.5	37.7	100.0(53)
학계	58.3	38.9	100.0(36)	24.0	20.0	32.0	24.0	100.0(25)
보육정보센터	60.5	39.5	100.0(38)	21.4	10.7	17.9	50.0	100.0(2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대한 보육 전문가 조사」 결과임.

2. 보육료 규제 완화 어린이집

보육료 규제 완화 어린이집은 현재 실체는 없다. 보육료 규제 완화 도입을 주장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각기 다른 유형을 염두에 둔다. 본 절에서는 평가인증 활용 관점에서 보육료 규제 완화 어린이집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개요

평가인증 활용 관점에서 보육료 규제 완화가 논의된 것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방안의 하나로 공공형 어린이집과 함께 논의된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그동안 논의된 보육료 자율화와는 차별적 개념임을 밝히고자 한다. 그간의 자율화 보육시설은 보육료에 관하여 정부의 규제와 지원이 모두 없는 시설로 간주되었으나, 본 보고서에서의 자율화 보육시설은 평가인증으로 정한 기준을 모두 유지하면서 그 이상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개념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제반 의견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나. 관련 의견

1) 제도에 대한 의견

보육전문가들은 평가인증 결과가 우수한 민간, 가정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보육비용 수납 또는 보육시설 운영 기준 완화하는 자율형 어린이집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찬성이 59.7%, 반대 40.3%로 찬성 비율이 다소 높으나 반대

의견도 많음을 알 수 있다. 학계보다 보육정보센터에서 찬성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표 IV-2-1 참조).

〈표 IV-2-1〉 평가인증 우수 시설의 보육비용 수납 또는 보육시설 운영 기준 완화

단위: %(명)

구분	찬성	반대	전체(수)	$X^2(df)$
전체	59.7	40.3	100.0(77)	
학계	57.9	42.1	100.0(38)	.106(1)
보육정보센터	61.5	38.5	100.0(3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대한 보육 전문가 조사」 결과임.

보육시설장들도 자율형 어린이집 제도 도입시 이를 선택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41.9%이었다. 시설유형은 가정어린이집보다 민간어린이집이 높고, 지역은 고양시가 대구보다 높았다(표 IV-2-2 참조).

〈표 IV-2-2〉 자율형 어린이집 전환 신청 의향

단위: %(개소)

구분	있음	없음	계(수)	$X^2(df)$
전체	41.9	58.1	100.0(456)	
시설유형				
민간	50.2	49.8	100.0(235)	13.81(1)***
가정	33.0	67.0	100.0(221)	
지역			100.0(222)	
고양	49.1	50.9	100.0(234)	9.25(1)**
대구	35.0	65.0	100.0(456)	

주: ** $p < .01$,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관한 시설장 조사」 결과임.

공공형 어린이집과 자율형 어린이집제도가 모두 도입될 때,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질문에 47.2%는 공공형을, 19.9%는 자율형은 선택하겠다고 응답하였고, 27.3%는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하였다. 공공형은 가정어린이집, 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자율형은 민간어린이집이 가정시설보다 2배 정도이고, 고양시에서 대구시보다 10%p 이상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IV-2-3 참조).

즉, 자율형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장의 수용성은 공공형 어린이집보다 낮은 편이고, 지역별 차이가 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2-3〉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전환 여부

단위: %(개소)

구분	공공형 어린이집	자율형 어린이집	현행 유지	잘 모르겠음	계(수)	X ² (df)
전체	47.2	19.9	27.3	5.6	100.0(462)	
시설유형						
민간	44.1	26.9	23.5	5.5	100.0(238)	15.53(3)***
가정	50.4	12.5	31.3	5.8	100.0(224)	
지역						
고양	38.7	25.3	28.0	8.0	100.0(225)	17.69(3)***
대구	55.3	14.8	26.6	3.4	100.0(237)	

주: *** p<.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관한 시설장 조사」 결과임

〈표 IV-2-4〉 최연소 아동연령구분별 보육료 상한선에 대한 부모 의견

단위: %(명)

구분	정부가 정해야 함	정부가 상한선 제시 필요	보육료 완전 자율화 필요	잘 모르겠음	전체	X ² (df)
전체	30.3	60.6	5.5	3.6	100.0(4,897)	
연령구분 1						
영유아	32.5	58.6	5.8	3.1	100.0(2,548)	19.6(3)**
초등학생	27.8	62.7	5.1	4.4	100.0(2,351)	
연령구분 2						
영아	31.9	58.5	6.2	3.4	100.0(1,563)	
유아	33.5	58.8	5.2	2.5	100.0(983)	30.2(9)**
초등저학년	28.4	63.3	5.1	3.2	100.0(1,174)	
초등고학년	27.1	62.2	5.2	5.5	100.0(1,175)	
2004년 조사						
영아	31.6	50.7	15.7	2.0	100.0(961)	
유아	32.2	50.3	14.3	3.2	100.0(1,062)	
초등학생	27.3	51.8	15.6	5.3	100.0(1,629)	

주: * p<.01.
 자료: 서문희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한편 부모들은 보육료 자율화를 선호하는 비율을 소수이다. 2009년 보육실태조사 시 보육료 상한선을 두는 것에 대한 의견 조사에서 막내자녀가 초등학생 이하 아동 가구의 60.6%가 정부가 상한선을 정해 주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고 30.3%는 정부가 보육료를 정해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보육료 완전 자율화를 선호

한 비율은 5.5%이었다(표 IV-2-4 참조).

보육료의 자율화에 찬성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보육료의 자율화가 곧 보육료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을 우려한 결과로 이해된다. 상한선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영유아 가구와 초등학생 가구상의 차이가 없는데, 영유아 가구가 정부가 정해주기를 바라는 비율이 더 높다. 영아와 유아 가구의 차이는 거의 없다. 이를 2004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부모들의 의식이 보육료 상한선을 두는 것을 선호하는 비율은 50% 수준에서 60%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자율화 찬성 비율은 15% 수준에서 5%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2) 규제완화 범위

다음 <표 IV-2-5>는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시 규제완화 범위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는 보육비용 수납과 운영기준 모두, 보육비용 수납만, 보육시설 운영기준만의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보육비용 수납과 운영기준 모두가 44.4%로 가장 높고, 보육비용 수납만과 보육시설 운영기준만 자율화 하는 방안에는 각각 27.8%가 동의하였다. 학계에서 보육비용 수납과 운영기준 모두 자율화한다는 응답 비율이 보육정보센터 찬성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

즉, 전문가들은 자율화라고 하면 보육비용 수납과 운영기준 모두에 대한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V-2-5>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시 규제 완화 범위

단위: %(명)

구분	보육비용과 운영기준 모두	보육비용만	운영기준만	전체(수)	X ² (df)
전체	44.4	27.8	27.8	100.0(72)	0.47(2)
학계	48.6	25.7	25.7	100.0(35)	
보육정보센터	40.5	29.7	29.7	100.0(3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대한 보육 전문가 조사」 결과임.

3) 완화 대상

수납 규제 완화 대상 범주에 대한 전문가 조사에서는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 상한선, 보육료 상한선만, 기타 필요경비 상한선만으로 구분하여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 상한선 모두가 43.1%로 가장 높고, 보육료

상한선만은 32.3%, 기타 필요경비 상한선만은 24.6%로 나타났다. 학계에서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 상한선 모두를 자율화하지는 비율이 학계보다 보육정보센터에서 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

〈표 IV-2-6〉 보육비용 규제 완화 범위

단위: %(명)

구분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 상한선	보육료 상한선만	기타 필요경비 상한선만	전체(수)	$X^2(df)$
전체	43.1	32.3	24.6	100.0(65)	
학계	50.0	28.1	21.9	100.0(32)	1.24(2)
보육정보센터	36.4	36.4	27.3	100.0(3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대한 보육 전문가 조사」 결과임.

수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는 상한선 완전 폐지보다는 상한선 인상을 선택한 비율이 높다. 상한선 인상 선호 비율은 보육정보센터가 88.6%로 학계 76.5%보다 높았다(표 IV-2-7 참조).

수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는 상한선 완전 폐지보다는 상한선 인상을 선택한 경우에 보육비용 상한선 인상 수준으로는 150%를 선택한 비율이 50.8%로 가장 높고 다음이 200%로 30.2%이다. 다수 응답인 보육비용 상한선 인상 수준으로는 150%를 선택한 비율은 보육정보센터가 57.1%로 학계 42.9%보다 높았다(표 IV-2-7 참조).

〈표 IV-2-7〉 우수보육시설 보육비용 규제완화 방법 및 상한선 인상 시 기준

단위: %(명)

구분	보육비용 규제 완화 방법			상한선 인상 시 수준				
	상한선 폐지	상한선 인상	전체(수)	일반 상한선 의 150%	일반 상한선 의 2배	일반 상한선 의 3배	기타	전체(수)
전체	17.4	82.6	100.0(69)	50.8	30.2	1.6	17.5	100.0(63)
학계	23.5	76.5	100.0(34)	42.9	32.1	3.6	21.4	100.0(28)
보육정보센터	11.4	88.6	100.0(35)	57.1	28.6	-	14.3	100.0(35)
$X^2(df)$	1.76(1)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대한 보육 전문가 조사」 결과임.

즉, 전문가들은 수납 규제 완화 대상으로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 상한선 모두로 보는 경향이 강하며, 수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는 상한선 완전 폐지보다는 상한선 인상을 선택한 비율이 높고, 상한선 인상 비율은 과반수는 150%를 선택하였고

30%는 2배를 선택하였다.

4) 규제완화 시 비용 인상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자율형 어린이집 운영시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 인상에 대한 향후 계획을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장들의 의견이 다양함을 나타냈다. 시설장의 보육료 규제가 완화되면 30.7%는 기타 필요경비만 인상하겠다고 하였고, 27.7%는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 모두 인상하겠다고 하였으며 25.8%는 보육료만 인상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시설유형이나 지역별로는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 모두 인상하겠다고 한 비율이 민간, 고양시가 각각 가정 및 대구시보다 높았다.

<표 IV-2-8> 자율형 어린이집 운영시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 인상 대상

단위: %(개소)

구분	보육료	기타 필요경비만	보육료와 기타 경비	잘 모르겠음	계(수)	X ² (df)
전체	25.8	30.7	27.7	15.8	100.0(462)	
시설유형						
민간	16.4	37.0	29.8	16.8	100.0(238)	24.07(3) ***
가정	35.7	24.1	25.4	14.7	100.0(224)	
지역						
고양	28.4	28.4	31.6	11.6	100.0(225)	9.33(3) *
대구	23.2	32.9	24.1	19.8	100.0(237)	

주: * $p < .05$,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관한 시설장 조사」 결과임.

<표 IV-2-9>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자율형 어린이집 운영시 보육료 책정에 대한 질문 결과이다. 보육료는 영아는 기본보조금을 포함하는 수준이고, 유아는 현재 정부 지원단가의 평균 2배 정도이다. 민간시설이 32~33만원 수준이고 가정시설은 35~37만원 수준으로 가정시설이 높고, 지역별로는 고양시가 대구보다 평균 5~6만원 정도가 높다.

다음 <표 IV-2-10>은 조사 대상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자율형 어린이집 운영시 특별활동에 대한 운영계획 질문 결과인데, 시설장의 약 37% 정도가 특별활동비를 인상하고 특별활동 운영 변경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다. 시설유형별로는 민간시설은 41~33%, 지역별로는 고양에서 46.2%가 비용을 인상하고 39.1%는 종류를 늘리겠다고 응답하였다.

〈표 IV-2-9〉 자율형 어린이집 운영시 보육료 책정액 평균

단위: 원

구분	0세	1세	2세	3세	4,5세
전체 (표준편차)	781.5 (104.1)	614.4 (106.6)	492.2 (100.1)	353.0 (88.0)	333.9 (89.5)
시설유형					
민간	760.03	596.58	474.78	334.36	316.75
가정	803.94	633.03	510.56	374.01	353.28
t	-4.59	-3.69	-3.87	-4.81	-4.34
지역					
고양	766.67	616.07	500.55	379.32	365.69
대구	795.32	612.85	484.45	328.55	304.42
t	-2.96	0.32	1.72	6.28	7.60
(수)	(454)	(454)	(455)	(436)	(43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관한 시설장 조사」 결과임.

〈표 IV-2-10〉 상한선 규제 완화시 특별활동비에 대한 인상 계획

단위: %(개소)

구분	특별활동비 인상 계획			특별활동 운영 변경 계획			계(수)
	현 수준 유지	인상	잘 모름	현 수준 유지	종류 늘림	잘 모름	
전체	56.3	37.7	6.1	57.8	36.6	5.6	100.0(462)
시설유형							
민간	51.3	43.7	5.0	53.8	41.2	5.0	100.0(238)
가정	61.6	31.3	7.1	62.1	31.7	6.3	100.0(224)
$X^2(df)$		7.78(2)*			4.50(2)		
지역							
고양	48.0	46.2	5.8	55.6	39.1	5.3	100.0(225)
대구	64.1	29.5	6.3	59.9	34.2	5.9	100.0(237)
$X^2(df)$		13.93(2)***			1.22(2)		

주: * $p < .05$,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관한 시설장 조사」 결과임.

현재 이들 보육시설에서의 특별활동 실태는 <표 IV-2-11>과 같다. 아동이 23.3%가 보육시설 내 모든 특별활동을 무조건 다 이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민간 시설에 비하여 가정시설이 높으며 대구에 비하여 고양시에서 높은 등 시설유형별, 지역별 차이가 큼을 나타냈다.

〈표 IV-2-11〉 추가비용 받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 및 최대 지불액 평균

단위: 개, 원

구분	선택 여부			계(수)	수 및 최대비용	
	모두 선택 가능	일부 선택 가능	모두 의무 수강		특별활동 수	최대 지불액
전체	51.4	25.4	23.3	100.0(331)		
시설유형						
민간	53.0	27.1	19.9	100.0(181)	2.75	83,333
가정	49.3	23.3	27.3	100.0(150)	1.63	38,333
$X^2(df=2)$	2.63				2.51	4.22
지역						
고양	48.5	20.2	31.3	100.0(163)	2.08	75,000
대구	54.2	30.4	15.5	100.0(168)	2.32	53,750
$X^2(df=2)$		12.75**			-0.54	0.88

주: ** $p <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관한 시설장 조사」 결과임

5) 재정지원

한편 자율형 어린이집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IV-2-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영아 기본보육료 중단하고 전체 아동에 대한 수납한도액 완화하는 방안과 영아 기본보육료는 지원하고 유아에 대한 수납 한도액을 완화하는 방안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다수인 93%가 영아 기본보육료는 지원하고 유아에 대한 수납 한도액을 완화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이 비율은 유의성은 없으나 가정시설이 민간시설보다 높고, 고양시가 대구시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IV-2-12 참조).

이는 영아보육료는 기본보조금을 지원하므로 폐지하고 수납한도액을 완화하기보다는 그대로 기본보조금을 주면서 상한선을 유지하도록 하고, 기본보조금이 없는 유아만 수납한도액을 완화할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같은 맥락에서 보육전문가에게는 자율형 어린이집에 대해 영아 기본보조금, 차등보육료, 교재교구비와 같은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에 자율형 어린이집에 지원하여야 한다고 찬성하는 비율이 교재교구비 69.8%로 가장 낮고 기본보조금과 차등보육료는 각각 78.3%, 79.7%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특성별 차이는 미미하다(표 IV-2-13 참조).

〈표 IV-2-12〉 자율형 어린이집 운영 방식에 대한 시설장 의견

단위: %(개소)

구분	영아 기본보육료 중단 & 전체 아동에 대한 수납한도액 완화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 & 유아에 대한 수납 한도액 완화	계(수)	X ² (df)
전체	7.0	93.0	100.0(458)	
시설유형				
민간	9.7	90.3	100.0(236)	5.70(1)*
가정	4.1	95.9	100.0(222)	
지역				
고양	8.6	91.4	100.0(222)	1.64(1)
대구	5.5	94.5	100.0(236)	

주: * p<.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관한 시설장 조사」 결과임

〈표 IV-2-13〉 자율형 어린이집 재정 지원에 대한 전문가의 찬성 비율

단위: %(명)

구분	기본보조금	차등보육료	교재교구비	(수)
전체	78.3	79.7	69.8	(69)
학계	80.0	80.6	68.8	(35)
보육정보센터	76.5	78.8	71.0	(34)
X ² (df=1)	0.13	0.04	0.0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대한 보육 전문가 조사」 결과임.

6) 규모 제한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시 규모를 지역별로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학계와 보육정보센터의 의견을 비교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찬성과 반대가 거의 50:50인데 전문가 집단별로 차이가 있어서 보육정보센터는 찬성이 학계보다 9%p가 높고 학계는 반대가 보육정보센터보다 13.6% 포인트가 높다(표 IV-2-14 참조).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 시 규모를 지역별로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할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이 전체 민간 가정 보육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각 보기에 골고루 분포한다. 평균은 20.8%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최대는 70%로 응답자 간의 의견 차이는 컸다(표 IV-2-15 참조).

〈표 IV-2-14〉 자율형 어린이집 지역별 일정 비율 규제

구분	단위: %(명)			X ² (df)
	찬성	반대	전체(수)	
전체	51.4	48.6	100.0(74)	1.947(1)
학계	43.2	56.8	100.0(37)	
보육정보센터	59.5	40.5	100.0(3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대한 보육 전문가 조사」 결과임.

〈표 IV-2-15〉 자율형 어린이집이 전체 민간가정보육시설에서 차지하는 적정 비율

구분	단위: %(명)					전체(수)	평균	표준 편차
	10% 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 이상			
전체	15.1	28.3	22.6	24.5	9.4	100.0(53)	20.8	14.8
학계	10.7	28.6	28.6	25.0	7.1	100.0(28)	21.1	14.4
보육정보센터	20.0	28.0	16.0	24.0	12.0	100.0(25)	20.5	15.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대한 보육 전문가 조사」 결과임.

3. 정책시사점

먼저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형보다 공공형이 수용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냈다. 보육전문가들은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88.2%이고, 보육시설장들도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 도입시 이를 선택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70.2%이었다. 공공형 어린이집과 자율형 어린이집 제도가 모두 도입될 때,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질문에 47.2%는 공공형을, 19.9%는 자율형은 선택하겠다고 응답하였고, 27.3%는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하였다.

둘째, 공공형 어린이집의 조건은 전문가와 시설장 의견이 차이를 보이지만, 평가인증 이외 추가 조건을 둘 수 있음을 나타낸다. 보육전문가들은 추가 조건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어린이집 복수운영 및 학원 등 유사기관 동시 운영 대표자 제한은 찬성이 94.8%이고 용자 과다한 자가 시설 제한과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놀이터 요건 충족은 92% 수준이며 임대시설 제한은 72.4%이었다. 그러나 시설장들의 의견은 자가시설 및 자기자본 또는 상환금 비중에 대한 조건 33.6%, 타 보육시설 및 유치원, 유사기관 운영금지 45.8%,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놀이터 요건 충족 54.2%로 낮았다

셋째,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기준도 전문가들은 추가 조건에 대하여 높은 수용성을 나타냈으나, 시설장들의 의견은 다소 달랐다. 시설장들은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 34.7%,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의 보육교사 급여 지급 74.4%, 표준보육과정 운영 의무화 61.4%,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시간 제한 27.6%인데, 보육전문가 집단은 보육비용 수납한도액, 취약보육 제공, 보육과정 운영,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클린카드 사용과 엄격한 회계보고의 7가지 문항 모두 90% 이상이 동의하였다.

넷째,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방법으로 유아 기본보육료와 인건비 지원이 서로 유사한 수준이지만, 정책결정에 따라 지원금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부모보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운영상 규제와 연계하는데 한계가 있다. 시설 조사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비용 지원은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 + 민간시설 유아보육료 수납한도액과 보육료 지원단가 차액 지원'으로 39.0%가 선택하였고, 다음은 '영아 기본보육료 미지원 + 국공립시설 수준의 인건비 지원'으로 34.9%가 선택하였다.

다음은 자율형 어린이집에 대한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형 어린이집이 수용성은 어린이집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보육료 지불능력과 의사가 주된 결정요인이 될 것이며, 지역적 격차가 있을 것임을 나타냈다. 고양시와 대구시에서 공공형 어린이집과 자율형 어린이집제도가 모두 도입되면 어떻게 하겠는가하는 질문에 19.9%가 자율형은 선택하겠다고 응답하였으나,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부모들은 단지 5.5%만이 보육료 자율화를 선호하였다.

둘째, 자율형 어린이집의 규제 완화 대상은 전문가 조사에서 보육비용 수납과 운영기준 모두가 44.4%로 가장 높고, 보육비용 수납만과 보육시설 운영기준만 자율화하는 방안에는 각각 27.8%가 동의하였다. 또한 수납 규제 완화 대상 범주에 대해 전문가 조사에서는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 상한선 모두가 43.1%로 가장 높고, 보육료 상한선만은 32.3%, 기타 필요경비 상한선만은 24.6%로 나타났다.

셋째, 전문가들은 보육료 상한선 철폐를 선호하지 않아서 완전 규제 완화의 우려를 표명하였고, 실제 시설장들은 보육료 규제 완화시 가격 인상 의도를 나타내서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음을 나타냈다. 보육비용 수납 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전문가들은 상한선 완전 폐지보다는 상한선 인상을 선택한 비율이 82.6%로 높고, 이 경우 보육비용 상한선 인상 수준으로는 150%를 선택한 비율이 50.8%로 가장 높고 다음이 200%로 30.2%이다. 시설장들은 시설장의 보육료 규제가 완화되면 30.7%는 기타 필요경비만 인상하겠다고 하였고, 27.7%는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 모두 인상하겠다고

하였으며 25.8%는 보육료만 인상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넷째, 보육료 규제 완화 시설은 유아 중심 보육시설이 될 것임을 나타냈다. 보육료 규제 완화 방법으로 보육시설의 93%가 영아 기본보육료는 지원하고 유아에 대한 수납 한도액을 완화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이는 영아보육료는 기본보조금을 지원하므로 폐지하고 수납한도액을 완화하기보다는 그대로 기본보조금을 주면서 상한선을 유지하도록 하고, 기본보조금이 없는 유아만 수납한도액을 완화할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V. 외국 보육서비스 평가 사례

외국의 보육서비스 평가 사례로 영국과 호주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영국은 보육서비스 평가결과 등급화 및 공개, 호주는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지원과 연계 및 등급화 시도 정책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영국 국가 보육·교육 서비스 평가

가. 법적 근거

1) 2006 아동보호법(The Child care Act 2006)

영국의 교육표준청(Office of Standards in Education; Ofsted)는 2006년 아동보호법(2006 Child care Act) 제49조 및 50조, 2008년 아동보육규정(The Childcare(Inspection) Regulation 2008) 9항과 10항(regulation9 and 10)에 의거하여 모든 보호·교육 기관과 보육서비스 제공자를 검사(inspection)하여 그 점수와 기관의 장단점 등을 기록한 검사 결과보고서를 그대로 공개하고 있다.

아동보육법 제49에서는 의하면 등록된 모든 서비스 제공자는 정해진 일정 기간에 따라 또는 장관(secretary of state)이나 조사국장(Chief Inspector)²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아동보호법 제50조는 영유아 서비스 제공자 및 기관 검사보고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검사가 끝나면 검사장(Chief Inspector)은 아동의 안녕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기여, 서비스의 기준과 질, 아동의 요구 충족 정도, 지도력 및 관리 측면의 질적 수준에 대하여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보고서는 장관, 대상 기관에 등록된 사람에게 보내야 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정된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야 하며, 향후 어떤 형태로 출판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25) 조사국장(the Chief Inspector)은 잉글랜드의 학교 조사 국장(Her Majesty's Chief Inspector of Schools)을 의미함(아동보호법 2006 98조).

2) 2008 아동보호(검사) 규정(The Childcare (Inspection) Regulation 2008)

현재 구체적 검사 관련 사항은 2008년 9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아동보육규정(The Childcare(Inspection) Regulation 2008)으로 정하고 있다

이 규정 3항에 의하면 검사 대상은 등록된 보육서비스 제공자 및 기관으로, 2009년 8월 1일 이후 3년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검사일 이후 8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안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6항과 7항은 서비스 공급자는 검사가 예정되면 이를 돌보는 아동 부모에게 알려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공개 대상 부모는 가정보육의 경우는 현재 이용 아동 부모에 한하지만 기관은 검사전 1년간 최소 12주 주당 2시간 이상씩 2번 이상 서비스를 받은 경우가 그 대상이다.

규정 9항과 10항은 보육서비스 제공자는 시찰국장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으면 이를 모든 부모에게 보내야 하고 이외 누구라도 이를 원할 경우 무료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대상자는 시찰 공지와 마찬가지로 가정보육의 경우는 현재 이용 아동에 한하지만 기관은 조사전 1년간 최소 12주 간 주당 2시간 이상씩 2번 이상 서비스를 받은 경우가 그 대상이다.

나. 평가기준

보육기관 및 개인서비스 제공자 평가 기준은 2009년 9월부터 변경 적용한다. 평가 기준은 크게 전반적인 성취도, 지도력과 운영 관리, 제공 서비스의 질, 아동에 대한 결과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표 V-1-1 참조).

전반적인 성취도 영역은 시설이 전반적으로 아동의 요구를 얼마나 잘 충족시키며, 지속적인 향상을 유지할 수 있는지 기관 역량을 점검한다.

관리와 지도력에서는 종사자의 의욕과 발전을 이끌어내는 리더십과 운영능력, 자원 배치, 평등과 다양성 증진, 안전 측면에서 시설의 환경을 점검하고 시설의 발전과 아동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의 자체평가 체계, 지역사회 및 타 기관과의 협력, 부모 및 주 양육자와의 관계 및 참여 측면에서 시설 체계의 효과성을 점검한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은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하는지, 아동의 안녕을 증진시키는지에 중점을 둔다.

〈표 V-1-1〉 평가 기준

구분	지표
전반적 성취도	-영유아기 기초단계(Early Years Foundation Stage)에 있는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환경인가?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관리와 지도력	-종사자의 의욕과 발전을 이끌어내는 리더십과 운영능력 -자원이 효율적 배치되어 있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평등과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환경 -안전관리 -아동의 발달을 지원하고 시설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체평가 체계 -지역사회 및 타 기관과의 협력 -부모 및 주양육자의 관계 및 참여
제공 서비스의 질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돕는가? -아동의 복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가?
아동에 대한 결과	-아동의 학습에 대한 즐거움과 성취 -안전 교육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긍정적인 기여 -아동의 미래를 위한 기술

자료: Ofsted(2010). Using the early years evaluation schedule.

〈표 V-1-2〉 영국 ECEC 아동에 대한 결과 평가영역 및 평가요소

구분	평가요소
학습에 대한 즐거움과 성취	연령별 학습목표에 맞는 아동의 학습과 과정에 대한 질적 수준 -아동의 수준과 역량과 관련하여 아동이 얼마나 잘 배우는지 정도 -아동이 배우는 것을 즐기는 정도 -적극적, 창의적이고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지 -아동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지 -아동발달에 전 영역에 걸쳐 골고루 발달하는지 여부 -소외되는 그룹이나 영유아 없이 모든 아동이 학습을 따라오는지 여부
안전	시설이 안전하고 아동이 안전하다고 느끼는지와 안전에 대한 아동의 이해 -아동이 자신과 타인을 위해 안전하게 행동하는 정도 -위험 및 안전에 대한 아동의 이해 -시설 내에서 아동이 안전함을 느끼거나, 성인을 믿고 의지하는 정도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대한 아동의 이해 -청결유지와 같은 건강한 생활습관에 대한 이해 및 형성 -운동, 체육활동의 혜택에 대한 이해 및 실제 활동 정도 -건강한 식습관

(표 계속)

구분	평가요소
긍정적인 기여	아동의 책임감과 자신의 역할 수행 -학습을 향한 즐거움과 태도(참여의지, 자발적 의향 등) -다른 이들과 함께 행동하고 협력하고 양보하는 정도 -친구를 사귀고 서로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정도 -또래와 무엇을 할 때 상대방이 기대에 반응하는 정도 -적절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아동의 미래를 위한 기술	아동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말하기, 문해력, 수리·정보처리능력, 의사소통기술과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준비 정도 -말하기, 문해력, 수리·정보처리능력, 의사소통기술 -적극적이고 호기심 많고, 자율적인 학습자 -문제해결 능력 -보다 넓은 세상에 대한 이해가 아동의 놀이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정도

자료: Ofsted(2010). Using the early years evaluation schedule.

아동에 대한 결과 평가는 즐거움을 갖고 학습하고 잘 배우는지를 살펴보고, 안전 교육, 건강한 생활습관을 점검하고 아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기 조절 능력을 갖는 등과 같은 긍정적 기여, 연령수준에 맞는 말하기, 문해력, 수리·정보처리능력, 의사소통 기술 및 초등학교 대비 적응력 등 미래를 위한 기술 등에 대한 평가요소로 구성된다. 아동에 대한 결과 각 지표별 세부 지표는 <표 V-1-2>와 같다.

다. 평가결과

영국 Ofsted의 평가는 매우 우수(Outstanding), 우수(good), 만족할만한 수준(Satisfactory), 부적절 1(Inadequate 1): 외부의 도움 없이 개선 가능, 부적절 2(Inadequate 2): 개선을 위해서는 외부 도움 필요로 구분하여 결과를 제시한다.

<표 V-1-3> 평가 대상 보육서비스 제공자 수

구분	단위: 월/원			
	아동의 가정 파견보육	기관	아동 가정의외 가정보육	계
2008-2009	24	9,100	18,000	27,124
2009-2010	57	12,979	27,045	40,081

자료: Ofsted(2010).

2008~9년도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은 9,100개소인데, 2008-9년 평가에서 보육기관은

약 10%인 750개소를 매우 우수한 기관으로 분류하고 5%인 360개소를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하였다(표 V-1-3 참조).

<표 V-1-4>는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의 평가결과이다. 전체적으로 10%를 매우 우수한 시설로 평가하였다.

〈표 V-1-4〉 보육서비스 제공자 및 제공기관(가정 외)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보육의 측면	전체					기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부적절	(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부적절	(수)
전반적 효과성	10	58	30	2	40,081	11	60	27	2	12,979
관리 및 지도력 효과성	10	57	30	2	40,081	12	59	27	2	12,979
서비스의 질 ¹⁾	10	58	29	3	17,315	11	60	25	3	5,800
아동에 대한 결과 ¹⁾	10	59	28	3	17,315	12	61	24	2	5,800

주: 20110년 6월 30일기준이며 1)은 2009년 9월 기준임
자료: 영국 Ofsted(2010).

매우 우수 대상은 연차적으로 점차 증가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 평가 대상 중 2005.6년 평가에서는 매우 우수가 2%이었으나 점차 10%까지 증가하였다(표 V-1-5참조).

동일한 질적 수준 유지를 못할 경우 등급이 낮아진다. 2008-2009년에 평가를 받은 경우 종전 평가 결과와 비교해 보면 과가 평가에서 매우 우수를 받은 제공자의 75%만이 동일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부적절 평가를 받은 경우도 24%는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표 V-1-6 참조).

〈표 V-1-5〉 연차별 전체 보육서비스 제공자(보육모, 가정 포함) 평가 결과
단위: %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부적절
2009.10	10	58	30	2
2008/09	9	56	30	5
2007/08	4	52	39	5
2006/07	3	55	37	4
2005/06	2	55	38	4

자료: Ofsted(2009).

〈표 V-1-6〉 전체 보육서비스 제공자(보육모, 가정 포함) 2008~9년 평가와 이전 평가 비교

단위: 개소

종전 평가	2008-9년 평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부적절
매우 우수(Outstanding)	73	25	2	0
우수(Good)	13	67	18	2
보통(Satisfactory)	3	45	44	9
부적절(Inadequate)	1	23	63	13

자료: Ofsted(2009).

라. 평가정보 공개

2008년 아동보육규정(The Childcare(Inspection) Regulation 2008) 9항과 10항(regulation 9 and 10)은 보육서비스 제공자는 모든 부모에게 검사 결과 사본을 보내야 하고 이외 누구라도 이를 원할 경우 무료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검사 보고서를 Ofsted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누구라도 검색을 통하여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다. 어느 누구라도 서비스 제공자 주소, 상호명, 고유번호 입력 등 아무 정보나 입력하면 세부 정보 접근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공개되는 내용은 검사보고서로 기관에 대한 설명, 전반적 성취도, 개선을 위하여 해야 하는 필요한 조치, 지도력 및 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자)의 질과 기준, 아동에 대한 결과를 서술형으로 제시하고 부록으로 항목별 평가점수표를 제시한다.

공개된 검사보고서 사례로 맨체스터 소재 우수어린이집(Miles House Day Nursery)과 부적절한 어린이집(Ladybird Day Nursery)의 검사결과보고서를 번역하여 부록으로 첨부하였다(부록 4 참조).

2. 호주 보육시설 평가인증

호주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영유아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 수준의 질적 수준 관리체계를 갖고 있다. 호주의 평가인증은 입법조치를 통해 종일제 보육센터의 보육수당(Child Care Benefit) 지급을 연동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주정부가 예산을 지원하

고 보육급여와 보육서비스 수준을 연계하며, 국립보육인증위원회(National Childcare Accreditation Council: NCAC)가 보육서비스 평가인증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증결정검토위원회(Accreditation Decision Review Committee: ADRC)는 보육시설의 소원이 있을 경우 인증 관련 결정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호주에서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크게 종일제 보육시설과 가정 보육, 방과 후 보육으로 현재는 각기 다른 지표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호주정부는 2012년부터 전국의 영유아 교육·보육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전국 양질 교육 및 보육 기본안(The National Quality Framework)을 시행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평가인증 시행 체제 개편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평가인증 제도 외에 2012년 도입예정인 개편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가. 평가목적 및 개요

호주의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목적은 첫째, 영유아 발달의 측면에서, 영유아 발달의 모든 측면을 촉진하고 긍정적인 경험과 상호작용이 있는 최상의 질적 보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보육시설의 측면에서, 보육시설의 자체점검과 개선 과정에 보육시설과 부모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높은 질에 대한 영유아 및 가족의 요구와 전문적 발달에 대한 보육종사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의 측면에서, 보육의 질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공약을 보육시설이 증명함으로써 보육종사자의 전문성을 인식하고 직무 가치를 알도록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호주의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목적은 호주의 모든 보육시설이 양질의 보육을 보육종사자와 보육시설 이용자인 영유아와 부모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2009a).

호주의 평가인증은 모든 보육시설이 그 대상이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평가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면 해당 보육시설 이용자가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부모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평가 대상은 하루 8시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운영되는 종일제 보육시설 중에서 NCAC에 등록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처럼 신청을 완료한 보육시설은 참여신청, 자체점검, 현장관찰, 심의, 인증 결정의 5 단계를 거쳐 인증에 이른다. 1단계에서는 보육시설이 NCAC에 참여수수료를 납부하고 시설정보를 알리게 되며, 2단계에서는 시설장, 교사, 부모 등으로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표에 따라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개선 계획을 세워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NCAC로 제출한다. 3단계는 현장관찰로 현장

관찰자들이 평가인증에 참여한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평가한 후 현장관찰보고서를 NCAC로 제출한다. 4단계(심의)에서는 심의위원들이 보육시설의 자체점검보고서, 설문지, 현장관찰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각 시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질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마지막 단계(인증 결정)에서는 시설에 대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NCAC가 최종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인증에 통과한 보육시설은 사후점검을 통해, 불인증된 보육시설은 6개월 내에 개선안과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불인증된 시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불인증된 시설 등의 이의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결정검토위원회라는 독립된 별도의 전담 부설기관을 두고 있다. 인증결정검토위원회에서는 공정성, 객관성, 증거 기반, 자연 정의에 의거하여 결정을 검토하고 의견을 작성하여 국립보육인증위원회에 제시한다.

나. 평가기준

호주의 보육시설은 종일제보육시설, 가정보육, 방과후 보육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시설 유형별로 다른 기준에 의해 적용받는다. <표 V-2-1>은 보육시설 유형별 평가인증 지표의 영역으로 시설 유형에 따라 영역이 각기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표 V-2-1> 보육시설 유형별 평가인증 영역

유형	평가영역(원칙 개수)	
종일제 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과 동료 직원과의 상호작용(6) · 가족과의 파트너십(3) · 프로그램 및 평가(3) · 아동의 경험 및 학습(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 및 안전(5) · 건강, 영양, 복지(6) · 질적 수준 관리를 위한 시설 운영(4)
가정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작용(5) · 물리적 환경(3) · 영유아의 경험, 학습 및 발달(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위생, 영양, 안전, 복지(6) · 종사자(4) · 시설 운영 및 관리(5)
방과 후 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에 대한 존중(3) · 종사자-아동간 상호작용 및 관계(3) ·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3) · 프로그램 및 평가(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와 발달(4) · 건강, 영양, 복지(4) · 보호 및 안전(3) · 질적 수준 관리를 위한 시설 운영(6)

종일제 보육시설 평가 기준은 7개 영역 33개 원칙(principles)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정보육은 6개 영역, 30개 원칙, 방과후 보육은 8개 영역 30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원칙 아래 세부 항목이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에 대한 평가는 불

충분(Unsatisfactory), 충분(Satisfactory), 우수(Good Quality), 매우 우수(High Quality)의 4가지로 평가된다. 문항에 따라서는 기본만 충족하면 되는 경우도 있다.

호주의 평가인증 평가지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조금씩 변경되었는데, 종일제 보육시설의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1994년 10개 영역의 52항목으로 개발된 이후 1998년 3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약 2년에 걸친 검토과정을 거쳐 2000년 11월 변경사항이 발표되었고, 2002년에는 10개 영역 35항목, 2005년에는 7개 영역 33항목으로 축소하여 2006년 6월부터 평가인증 과정에 적용하였다.

다. 평가 및 운용 체계

1) 기존 체계

2010년 6월 현재, 호주의 NCAC의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평가결과는 인증지연, 1년 인정, 2년 인정, 3년 인정의 3단계로 구분된다. 인증 지연의 경우에는 자체 점검 개선계획을 세워 보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소 사소한 문제로 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은 3개월 이내에 다시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3회 연속해서 인증을 얻지 못하면 NCAC는 이러한 사실을 담당 부처에 통보하고, 이 경우 해당 보육시설은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그 보육시설에 등록하고 있는 학부모에게도 통보한다(보육 시설평가인증사무국, 2009a).

〈표 V-2-2〉 종일제보육시설 인증 현황 - 2010. 6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인증 (A)	불인증	5단계 심의회(B)	신규시설 자체평가	전체	심의회 후 인증통과 비율(C=A/B)
전국	4,575	339	4,914	1,100	6,014	93.1
호주 수도권	87	3	90	20	110	96.7
뉴사우스웨일스	1,883	114	1,997	403	2,400	94.3
노던준주	49	11	60	8	68	81.7
퀸즐랜드	1,056	57	1,113	318	1,431	94.9
남호주	250	22	272	33	305	91.9
테즈메이니아	90	6	96	11	107	93.8
빅토리아	820	72	892	235	1,127	91.9
서호주	340	54	394	72	466	86.3

<표 V-2-2>, <표 V-2-3>, <표 V-2-4>는 2010년 6월 기준 시설유형별 평가인증 현황이다. 5단계 심의를 마친 시설의 인증 통과 비율은 종일제보육시설은 93.1%, 가정보육 94.6%, 방과후 보육 96.6%이다.

<표 V-2-3> 가정보육센터 인증 현황 - 2010. 6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인증 (A)	불인증	5단계 심의(B)	신규시설 자체평가	전체	심의 후 인증통과 비율(C=A/B)
전국	279	16	295	36	331	94.6
호주 수도권	5	0	5	0	5	100.0
뉴사우스웨일스	89	3	92	2	94	96.7
노던준주	3	2	5	0	5	60.0
퀸즐랜드	73	4	77	9	86	94.8
남호주	11	1	12	0	12	91.7
테즈메이니아	11	0	11	0	11	100.0
빅토리아	71	5	76	21	97	93.4
서호주	16	1	17	4	21	94.1

<표 V-2-4> 방과후 보육 인증 현황 - 2010. 6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인증 (A)	불인증	5단계 심의(B)	신규시설 자체평가	전체	심의 후 인증통과 비율(C=A/B)
전국	2,888	93	2,981	559	3,540	96.9
호주 수도권	79	3	82	14	96	96.3
뉴사우스웨일스	800	26	826	184	1,010	96.9
노던준주	38	2	40	15	55	95.0
퀸즐랜드	557	7	564	83	647	98.8
남호주	303	6	309	27	336	98.1
테즈메이니아	104	1	105	16	121	99.0
빅토리아	849	41	890	166	1,056	95.4
서호주	158	7	165	54	219	95.8

2) 2012년 도입 예정 체계

호주 정부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관리하고자 국가 교육 및 보육의 질 기준안(The National Quality Framework)을 도입, 2012년 1월부터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호주 정부는 교육 및 보육 서비스 수준의 향

상을 피하고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더욱 투명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녀들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수준의 질 체계는 기관의 평가인증제도 뿐만이 아닌 교사의 자격 요건과 교사 대 아동 비율,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의 품질을 보증하는 새로운 국가 기관의 설립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질적 수준 관리 체계의 개선이다.

호주 평가인증기구가 현재는 국가기구가 아니고 예산만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2012년부터 국가 조직으로 흡수되어 권한이 강화되고, 각 지방정부에 평가인증 관련 부서를 설치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며, 보육시설 이외에 유치원까지도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는 등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인증에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새로 도입되는 전국 질적 기준(National Quality Standard)은 영유아 보육·교육의 질에 관련된 7가지 분야로, 교육 프로그램 및 실천,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 물리적 환경, 직원 사항, 영유아와의 관계,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리더십 및 서비스 관리로 구성된다.

새로운 평가 체계는 각각의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곱 가지 질적 분야에 걸친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하나의 총괄적인 등급을 결정하며, 모든 서비스에는 승인과 등급 정보가 표시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매겨진 등급은 인터넷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다.

각 서비스의 등급은 최우수(Excellent), 우수(High Quality), 보통(National Quality Standard), 노력 중(Operation Level), 불만족(Unsatisfactory)의 5단계로 나누어진다. 평가결과에 따라 인증 주기가 달라지는데 최우수(Excellent)와 우수(High Quality)는 3년마다, 보통(National Quality Standard)은 2년마다 평가를 받으며, 노력 중(Operation Level)을 받은 시설은 최소 1번 이상의 방문점검과 1년 후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단, 신규시설은 처음 인가 시 노력 중(Operation Level)을 받는데 이 경우 3~6개월 이내 추가 방문점검을 받아야 한다. 평가 결과 불만족(Unsatisfactory)를 받은 시설은 개선계획과 함께 수시로 방문점검을 받게 되며 개선 정도에 따라 처벌/폐쇄 조치가 가능하다.

각 시설의 전체 등급은 영역별 점수에 따라 결정된다. 우선 7개 영역 중 불만족(Unsatisfactory) 혹은 노력 중(Operation Level)을 받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영역 점수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A시설이 3개 영역에서 우수(High Quality), 2개 영역에서 보통(National Quality Standard), 1개 영역에서 불만족(Unsatisfactory), 1개 영역에서

노력 중(Operation level)을 받았다면 A시설의 평가등급은 불만족(Unsatisfactory)이 된다.

한편 최우수(Excellent)는 우수(High Quality)를 받은 시설이 별도의 등급평가 신청을 할 경우 해당 절차를 거쳐 받게 된다.

보통(National Quality Standard)과 우수(High Quality)는 모든 영역에서 보통(National Quality Standard) 등급을 받았거나 모든 영역에서 불만족(Unsatisfactory)이나 노력 중(Operation Level)이 없을 때 받게 된다. 보통(National Quality Standard)은 우수(High Quality)를 받은 영역이 3개 이하일 때, 우수(High Quality)는 교육 프로그램 및 실친, 영유아와의 관계,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리더십 및 서비스 관리과 시행 영역을 포함한 4개 이상 영역에서 우수(High Quality level)를 받아야 한다.

모든 시설은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온라인상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표 V-2-5〉 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 주기

구분	내용 및 평가 주기
최우수 (excell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igh quality를 받은 시설 중 별도의 평가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음. ▪ 서비스가 우수하며 이 분야의 선두적인 위치에 있음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함. ▪ 평가주기: 3년
우수 (high qua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질적 기준을 넘어섰음을 의미함. ▪ 평가주기: 3년
보통 (national quality stand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가 전국 질적 기준에 부합함을 의미함. ▪ 평가주기: 2년
노력 중 (operation lev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시설의 서비스가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함. ▪ 신규시설 인가 시 적용받게 되는 기본 등급, 3개월 이후 재평가 ▪ 기존 시설의 경우 1년마다 방문점검 및 재평가, NQS에 못 미칠 경우 1년 이내 재방문
불만족 (unsatisfact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가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며, 규제기관이 해당 기관의 서비스의 즉각적 수준 향상을 위해 면밀히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함. ▪ 개선계획 및 수시점검, 개선 미비 시 폐쇄조치 가능

3. 정책시사점

외국 사례로 영국 잉글랜드의 보육서비스 평가체계 특성은 등록된 보육·교육 제공자의 기관이건 개인건 자발적 참여에 의한 평가인증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조사를 법에 근거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과,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서 자체를 그대로 공개한다는 점이다. 법에 의하여 검사 결과는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이용 아동 부모에게 보내야 하고, 당국에서도 홈페이지에 보고서 전문과 평가 결과를 그대로 올려서 누구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8년에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그 결과에 대한 조사의 수위를 높여간다는 점은 영유아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우리의 평가인증 여부만을 공개하는 우리와는 상당한 간극이 있다.

호주의 평가인증제도는 경우는 우리나라 평가인증제도 도입시 벤치마킹한 사례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증 결과와 재정지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민간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있는 호주 제도가 갖는 효율성을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서 2012년을 목표로 평가지표를 수정하고 결과를 등급화하는 등 보다 정교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조직의 위상이나 권한 강화,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 평가 대상에 유치원 포함 등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 두 나라의 평가인증 지표는 우리나라 평가인증지표와 비교하여 보육이나 교육 내용과 상호작용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평가지표도 상당수 보육과정 운영을 내용으로 하지만 아직도 시설설비 등 환경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다.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기본적 보육 환경이 충분히 개선된 이후 평가지표는 외국과 같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VI. 정책대안 및 맺는 말

1. 평가인증 결과 등급화 및 공개 방안

가. 필요성

평가인증제도의 제 1차 시행을 마무리함에 따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보와 함께 평가인증 결과를 등급화하고 이를 공개하여 활용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평가인증 제도가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관리 수단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높이는 데 일정 수준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평가인증 결과 공개 및 활용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

전체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에 대한 구분은 크게는 인증여부에 따라 인증과 미인증으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인증 참여시설의 경우 결과에 따라 인증과 인증유보로 구분되어 발표된다. 인증결과는 인증참여 보육시설에게는 개별적으로 인증 총점과 영역별 점수가 제공되지만 외부로는 인증 여부만 발표되어 왔다. 그러나 인증시설 간에 100점 기준으로 최대 26점 정도의 격차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인증통과'라는 한 가지 기준은 인증시설에 대한 기대수준에 혼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인증 결과를 토대로 한 질적 수준의 구분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수요자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평가인증 보육시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보육수요자들은 인증 보육시설에 대한 구체적 정보도 필요로 한다. 부모 나름대로 보육시설에 대한 기대와 중요한 부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영역별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보육시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해외에서도 지표 수 증감에 관계없이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등급화를 통한 제재 및 자세한 정보 공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매우 우수/우수/만족할 만한 수준/부적절 1: 외부 도움 없이 개선 가능/부적절 2: 개선을 위해서는 외부 도움이 필요의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개별 시설별로 총 등급, 영역별 등급 및 장점, 단점 등 검사보고서 전체를 그대로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다.

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의료기관 등

에서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자기 수준을 확인함으로써 기관운영을 효율화하고, 평가결과 공개로 수급자의 국민의 장기요양기관 선택권 제고를 꾀하고자 결과를 공개하며, 결과공개는 장기요양기관의 정원 규모별(30인이상, 10인이상 30인미만, 10인미만)로 5개 등급(A~E)으로 구분하고, 상위10%(총점을 기준으로 함) 우수기관(A등급) 명단을 공표한다. 의료기관의 경우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해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평가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15개 전 부문에서 A를 받은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공개하고, 첨부파일로 A/B/C/D 등급 모두 공개한다.

나. 등급화 방안

평가인증 결과에 대한 등급화는 절대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상대 평가는 모든 어린이집이 동시에 평가 받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시기가 다양하므로 합리적 기준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 등급 기준

가) 제1안

제1안을 전체 보육시설을 4단계로 나누는 안이다. 즉, 미인증 시설과 평가인증 보육시설을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이다. 최우수 등급은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는 총점이 95점 이상이고 모든 영역별 점수가 90점 이상인 시설, 둘째는 총점 95점 이상인 시설, 셋째는 각 영역별 점수가 모두 90점 이상인 시설이다. 3등급시 차상위 등급은 총점 90점 이상으로 한다.

본 연구 분석결과, 시설장 인식에서 총점 95점과 그 이하 점수 간에는 서비스의 질이 차이가 나타나는 항목이 비교적 많고, 80점 정도까지는 대체로 등급이 높으면 서비스 수준에 대한 인식도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80점 미만 시설들과 80~85점 시설들 간의 인식 차이는 이러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근거 하에서 총점 95점과 90점을 기준 점수로 제안하였다.

총점만 기준으로 할 것인지 영역별 점수까지 고려할 것인지는 과제인데, 총점에는 심의 점수가 포함되고 영역별 점수는 관찰평가 점수이므로, 최우수 어린이집은 영역

별 점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적용 점수는 제1차 및 제2차 평가인증 모두 기준 점수 95점, 90점을 차수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1차 평가인증 지표에 비하여 2차 평가인증 지표가 고도화 되었으므로 점수 기준을 달리하자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1차 및 2차 평가인증 모두 기준 점수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한다. 이는 1차에 비하여 2차 평가인증 지표가 고도화 된 것은 현장 서비스 수준이 그 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 점수는 그대로 유지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실제 2010년 평가인증에서 인증 통과 시설들의 점수가 1차 때와 별 차이가 없다.

최상위 등급에는 평가인증 점수 이외에 자가 시설, 혹은 실외놀이장 확보 등 구조적인 변인으로 조건을 걸 수 있다. 인증어린이집 취소 조건은 최우수 및 우수 인증 어린이집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표 VI-1-1〉 평가인증 등급화 방안: 제1안

구분	기준	비고
최우수 인증	1안: 총점 95점 이상이고 각 영역별 점수가 90점 이상 2안: 총점 95점 이상(1차 인증 시설의 12.4%) 3안: 각 영역별 점수가 90점 이상(1차 인증 시설의 20.8%) 공통: 기본사항 확인 만점획득, 부적절 사례 미발생	자가시설, 혹은 실외놀이장 확보 등 구조적인 변인으로 조건을 걸 수 있음
우수 인증	총점이 90점 이상(1차 인증 시설의 19.1~27.5%)	
인증	평가인증 통과 시설 중 최우수, 우수인증 이외 시설 (1차 인증 시설의 60.1%)	
미인증	평가인증 미통과 시설	

나) 제2안

제2안은 전체 보육시설은 우수인증시설과 인증시설 미인증시설 등 3등급으로 구분하는 방안이다. 1안과 마찬가지로 최상 등급은 총점이 95점 이상이고 모든 영역별 점수가 90점 이상인 시설, 총점 95점 이상인 시설, 각 영역별 점수가 모두 90점 이상인 시설의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총점에는 심의 점수가 포함되고 영역별 점수는 관찰평가 점수이므로, 2등급 최상 등급 어린이집은 영역별 점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분석결과 보육서비스에 대한 시설장 인식이 평가인증

점수 95점과 그 이하 점수 시설들간에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비교적 많아서 시설장들이 수용성은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적용 점수는 1안과 마찬가지로 제1차 및 제2차 평가인증 모두 기준 점수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에 대한 논거나 제반 사항들은 1안과 동일하다.

평가인증 점수 이외에 자가시설, 혹은 실외놀이장 확보 등 구조적인 변인으로 조건을 거는 것이 적절하다. 인증어린이집 취소 조건은 최우수인증어린이집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표 VI-1-2〉 평가인증 등급화 방안: 제2안

구분	기준	비고
우수인증	1안: 총점 95점 이상이고 각 영역별 점수가 90점 이상 2안: 총점 95점 이상(1차 인증 시설의 12.4%) 3안: 각 영역별 점수가 90점 이상(1차 인증 시설의 20.8%) 공통: 기본사항 확인 만점획득, 부적절 사례 미발생	자가시설, 혹은 실외놀이장 확보 등 구조적인 변인으로 조건을 걸 수 있음
인증	평가인증 통과 시설 중 우수인증 이외 시설	
미인증	평가인증 미통과 시설	

2) 등급화 결과 공개

가) 공개내용

최우수인증, 우수인증, 인증, 미인증 사실 공개 이외에 총점, 영역별 점수, 총점 등급, 영역별 등급, 법적 준수 사항 여부 등, 공개 대상과 정보는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기본원칙을 따른다.

제 1안은 <표 VI-1-3>과 같이 지자체 평가, 평가인증 총점, 영역별 점수, 총점 등급과 영역별 등급, 전문가 평가 등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보육수요자에게 보육시설 선택기준을 위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총점만 공개할 경우에는 보육수요자는 평가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총점 자체를 시설의 전반적인 평가로 확대 해석할 수 있으며 평가점수를 주관적인 의미로 왜곡할 수 있다. 또한 총점만으로는 정확한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영역별 평가결과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표 VI-1-3〉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설 결과 공개 예시

00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표							
주소:							
대표자:							
인증기간: 2010. 3.1-2023.2.29							
□ 지자체 평가							
법적사항	보육시설 설치기준	보육실 설치기 준	종사자 배치기 준	종사자 정기 건강검 진	예·결 산서 및 재무회 계 관련	비상대 피시설 설치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 민원사항
결과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 평가인증 영역별 평가							
구분	영역	영역별 점수	자체점 검점수	현장관 찰점수	등급	내용	
영역별 점수	보육환경	95.00	95.00	95.00	A	매우 우수합니다.	
	운영관리	90.00	90.00	90.00	A	전반적으로 우수합니다	
	보육과정	88.00	88.00	88.00	B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상호작용과 교수법	93.00	93.00	93.00	A		
	건강과 영양	83.00	83.00	83.00	B		
	안전	90.00	90.00	90.00	A		
□ 전문가 평가							
심의 전문가 평가(25점)				등급		내용	
				A		전반적으로 우수합니다.	
□ 총점 및 총평							
총점	등급	총평					
91	우수	보육환경이 안전하고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하게...					
이상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10. 10							
보건복지부 장관							

제2안은 제1안 중 점수를 제외하고 등급만 공개하는 방안이다. 인증통과 후 결과 등급을 공개할 경우, 점수 공개는 시설 재량에 맡긴다. 현재도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들은 원아모집시 평가인증 점수를 공개한다.

이는 평가인증 점수가 높은 어린이집에서 채택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점수를 공개하는 해당 어린이집뿐 아니라 그러하지 않은 인근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외에 인증 이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문제가 특히 시범 평가나 1차 평가 등 일찍 부터 정책에 동참하였던 어린이집은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보육수요자에게 인증시설의 정확한 정보제공 및 인증 기간에 따라 기관 신뢰도가 상승할 수 있고, 초창기부터 제도에 참여한 어린이집에 무형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의미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보육서비스는 현재의 질적 수준 상태가 중요한데, 인증기간의 길고 짧음만으로는 보육수요자에게 서비스 선택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 적절한가에 의문이 제기되고, 또한 현재 인증시설은 모두 같은 인증시설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다. 본 조사에서도 평가인증은 과거보다는 현재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는 제도로써 수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어린이집이 스스로 인터넷 등으로 공개할 것이다.

2) 공개방법

평가인증 결과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고, 이를 영유아보육법으로 정부와 어린이집의 의무로 규정한다.

첫째, 평가인증사무국에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결정된 평가인증 결과자료를 게시하여 누구라도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에는 전체 어린이집 명단을 올려서 미인증 시설도 검색하면 미인증시설임이 드러나도록 한다.

둘째, 보육시설에서는 평가인증 결과를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동시에 보육아동 부모에게 문서로 발송하도록 의무화한다. 평가인증 관련 정보는 변동 사항이 생기는 대로 이를 모두 부모에게 알리도록 한다.

셋째, 지방정부에서도 지방정부나 보육정보센터 등 각종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3) 평가인증 등급 활용

가) 인센티브 방식

평가인증 결과를 인센티브 지급 대상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인증여부를 적용할 수 있고, (최)우수시설로 한정하거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

현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대체로 인력 지원이나 금전적 인센티브이다. 일부 지자체들이 환경개선비 명목으로 1회성으로 일정 금액 지원, 또는 종사자에게 일회성 또는 지속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보조교사 인건비로 월 56만원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외 전북은 시설장 처우 개선비를 지원한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다양한 인센티브 중 일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조사 결과 시설장들이 가장 원하는 인센티브는 환경개선비이지만, 운영비 보조보다는 교사 처우 수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서울과 부산에서 공인 어린이집 조건으로 활용한다. 공공형 어린이집에서도 선정 기준으로 평가인증 등급이나 점수를 활용하여야 한다. (최)우수시설이 되면 보육시설이 희망할 경우 일부 조건하에서 보육료 상한선을 풀어주는 방안, 인건비 지원으로 준 공보육시설화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제3절과 제4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금전적 인센티브 이외에 평가인증 기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이 제기된다. 시범 평가 어린이집의 2차 평가시기를 늦춘 것은 행정적 제약에서 오는 불가피한 것이고 엄밀하게 보면 합의에 의한 인센티브로 보기 어렵다. 금전 이외 인센티브로 평가인증을 3회 정도 반복하여 통과한 시설에는 유효기간을 4년으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과 같은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우수보육시설 확보에 유인책으로 활용한다. 호주의 경우 3회 인증 통과 시 평가를 유예한다. 그런데 본 조사 결과 시설장들은 유효기간 연장을 인센티브로 선택한 비율은 4.3%에 불과하였다.

나) 디스인센티브 방식

한편 미인증 시설은 교구교재비, 기본보조금, 장기적으로는 보육바우처 가맹점 제외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함으로써 인증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이는 제2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4) 등급화 및 공개 정책 대상

평가인증은 1차, 2차로 구분되는데 등급화 및 공개 정책 대상은 원칙적으로 2차에 한하고 1차는 어린이집 희망시 신청을 받아서 공개한다. 2차로 한정하는 이유는 제도 적용 시점 문제이다. 시설장들은 1차 평가인증 시에는 공개라는 의미가 인증여부 공개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급하여 원칙을 바꾼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을 반영하였다.

조사에서 보육 전문가들은 공개 대상 어린이집은 2차 통과 시설에 한하자는 비율이 44.6%로 가장 높으나 어린이집 원장들은 1차 또는 2차 통과 시설 모두 하자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5) 고려사항

첫째, 인증 점수의 신뢰성, 인증 당시와 현재의 수준이 동일한 지 등 우수인증시설의 질적 수준 차이 담보 문제 발생한다. 이는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사후관리 중 가장 효과적 방법은 불시방문이 될 것이다. 미국 NAEYC는 민간 단체 인증임에도 불구하고 불시방문을 사후관리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다.

둘째, 지역별 편차 문제로 일부지역의 높은 등급보육시설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등급이 낮은 보육시설만 존재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우려되기는 하나 이것을 계기로 지자체의 개선 노력을 유도할 수 있고,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를 도모할 수 있다. 동일한 평가인증 지표를 적용하면서 지역간 등급기준이 다른 것은 부적절하다.

셋째, 인센티브 제공, 보육료 자율화, 공보육 전환 정책 실시 시 평가인증 등급이나 점수 이외에 필수조건 충족 등 추가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

2.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 지원 정책과의 연계 방안

가. 필요성

현재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은 각 보육시설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과는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평가인증제도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가늠케 하

는 도구로 이용되게 하며 보육지원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도 평가인증을 통해 점검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재정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09년 연구(서문희·김운기·김명순 외, 2009)에서도 이러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유아교육·보육기관에 대한 평가는 평가 결과에 연계해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뒤따를 때 그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호주의 평가인증제도가 높은 성과를 올린 것은 재정적 지원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된다. 호주의 경우 인증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연방 정부의 부모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호주는 단지 2% 정도만이 평가인증 미통과 시설이다. 대다수가 평가인증 통과시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방식은 평가인증 시설 비율을 높였을 것이다.

평가인증 참가나 통과 여부에 따른 차등적 재정지원 뿐 아니라 나아가 평가인증 통과시설의 취득 점수에 따라 지원 수준을 차등화함으로써 보육시설간의 서비스 수준 향상의 경쟁을 강화시킬 수 있고 평가인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등급시 등급 기준의 타당성이나 신뢰성 확보는 과제가 된다.

나. 방안

현재 평가인증제도와 연계하여 재정 지원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 및 지방정부가 부분적으로 평가인증시설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하지만 시설운영의 투명성이나 질적 수준 제고 관점에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므로, 이보다는 기본보조금이나 차등보육료 등 국고지원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평가인증제도를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 실시하기 쉬운 1단계 방안부터 점차 수위를 높인 2~3단계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1단계 연계 방안: 시설별 운영비 지원과의 연계

가) 개요

먼저 1단계의 평가인증과 재정지원과의 연계 방안은 평가인증제도와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등 운영비 지원과 연계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수적 시설보조금은 보육비용 지원에 비해 학부모나 보육시설의 민원 발생의 우려가 적어 단기적으로 우선 실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연계는 이미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재교구비 지원은 2009년 12월 말 현재 설치·운영 중인 민간·가정·부모협동·직장보육시설²⁶⁾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1년부터는 이들 대상 중에서도 평가인증시설에 한하여 교재교구비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대한 증·개축비 지원,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및 법인의 시설에 대한 개·보수비, 장비비 지원은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 참여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²⁷⁾ 시설별 운영비 지원과 평가인증의 연계는 현재 시작단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기대효과 및 고려사항

평가인증 참여 또는 통과 시설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운영비 지원을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교재교구나 환경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사후관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제한된 예산을 평가인증 참여, 혹은 통과시설에 집중하여 지원함으로써 효과적인 집행이 가능하다. 셋째,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 시설에 대한 격려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우려되는 점이지만 평가인증 참가 시설, 특히 평가인증 통과시설에게만 시설별 지원이 이루어질 때는 미인증 시설로부터의 민원 발생과 인증 시설과 미인증 시설간 질적 수준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미인증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부모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2) 2단계 연계방안: 영아 기본보육료와의 연계

2009년 12월 기준 전국 35,550개소의 보육시설 중 2010년 4기까지의 평가인증 참여신청 건수는 32,498개소로서 보육시설수의 91.4%에 해당된다. 그리고 제1차 평가인증에서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은 20,255개소이며 이는 전체 보육시설 대비 57.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²⁸⁾.

26)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제외

27) 2010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28) www.kcac21.or.kr/home_new/A02/A0205_02.jsp(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 홈페이지)

이처럼 전체 보육시설 중 평가인증 참여시설의 비율은 매우 높으나 아직 약 40% 이상의 보육시설이 미인증 시설임을 감안하여 시설 운영비 지원이 아닌 보육시설 이용자의 보육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원과 평가인증제도와의 연계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 개요

보육비용 지원과의 연계 방안으로 2단계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만 0~2세 아동이나 장애아의 보육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본보육료 지원과 평가인증제도와의 연계이다.

종전 '영아 기본보조금'이었던 '기본보육료'는 영아보육 활성화와 더불어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교사 처우개선, 시설 운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이를 통한 보육의 질 관리 효과 및 수요자의 만족도 증진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조병구 외, 2007).

현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시설은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보육시설 중 만 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이며, ①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상한선 준수, ②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③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시설이 아닐 것 등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²⁹⁾.

그러나 이러한 네 가지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아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현재의 요건 외에 평가인증제도와의 연계를 주된 내용으로 한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기본 보육료 지원 정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인증 제도와의 연계는 ① 평가인증 참여시에만 지원, ② 평가인증 통과시에만 지원, ③ 평가인증 통과시에도 평가인증 점수(등급)에 따른 차별적 지원이 가능하다. 우선은 평가인증 참여시에만 지원으로 시작하고 점차 평가인증 통과시에만 지원으로 조건을 강화해 간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평가인증 통과 점수나 등급에 따른 차별적 지원을 고려하기는 어렵다.

29) 보건복지부(2010). 보육사업 안내.

나) 기대효과 및 고려사항

기본보육료 지원과 평가인증제도를 연계함으로써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영아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정부미지원 시설의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이다.

기본보육료 지원은 곧 부모가 부담하여야 할 보육료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는 평가인증에 참여, 혹은 통과하여 기본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육시설을 선택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부모의 선호와 선택은 대상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참여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자구 노력,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영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는 영아 보육에 대한 수요까지 확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다음의 문제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평가인증 통과율이 최소 90%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는 평가인증 통과시설에만 기본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부모들의 민원발생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기본보육료는 현재 0세아의 경우 350,000원이 보조되므로 지원받지 못하는 이용자와 지원받는 이용자간에 비용 부담의 격차는 매우 크기 때문에 미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이다.

둘째, 평가인증 미통과 시설에 기본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으면 미통과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보육료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미통과 시설의 보육료 인상폭이 기본보육료 지원금액만큼 상승하지 않는다면 역으로 영아와 장애아를 위한 보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영아나 장애아를 보육할 수 있는 평가인증 통과시설이 수요에 비해 충분하지 않을 때는 부모들의 선택권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전체 영아, 장애아 보육 수요만 위축되게 할 위험도 있다.

따라서 평가인증 통과율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될 때까지는 평가인증 참여시설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 평가인증 통과시설만 해당되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전문가나 시설장 모두 정책 예고기간을 둘 경우 대부분 1년이 적절하다는 비율이 높다.

3) 3단계 연계 방안: 보육바우처와의 연계

가) 개요

보육비용 지원과 평가인증제도를 연계하는 중·장기적인 방안으로는 보육바우처(i-

사랑 카드를 통한 차등보육료 지원)와 평가인증을 연계하는 것이다.

보육바우처를 통한 차등보육료 지원은 현재 일정 소득 이하 가정이라면 어떤 보육시설을 다니더라도 적용되는 보편적인 재정지원 방안이므로 평가인증제도와 연계 효과는 가장 강력한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처럼 차등보육료는 가장 보편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평가인증제도와 재정지원 연계에 있어서도 가장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가능한 단계별 접근으로는 기본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우선은 ① 평가인증 참여시설 이용자에만 지원하고 추후 ② 평가인증 통과시설 이용자에만 지원하는 단계적 적용을 검토한다. ③ 평가인증 통과시설 중 점수별, 등급별 차등화된 지원도 고려할 수 있으나 현실성을 낮아 보인다.

2010년 5월 현재, 평가인증 신청건수는 전국의 보육시설 수 대비 약 91.4%로 나타나므로 단기적으로도 평가인증 참여시설 이용자에게만 보육바우처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평가인증에 참여하기 어려운 신규 시설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예외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평가인증 통과시설 이용자만 보육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육료 지원을 연계하는 것은 기본보육료 지원과 마찬가지로 평가인증시설의 비율이 90% 이상에 달할 때까지 유예가 필요할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사항이다. 마찬가지로 평가인증 통과시설 중 등급별, 점수별 차등 지원은 평가인증 통과 시설들의 등급 분포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나) 기대효과 및 고려사항

보육바우처와 평가인증을 연계하는 방안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시설 전반과 보육수요자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방안이므로 평가인증 결과에 따른 부모의 보육시설 선택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보육시설의 서비스 향상 노력을 강화하여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 확보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둘째,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보육바우처와 평가인증제도를 연계함으로써 재정투입과 관련한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미인증 시설의 영유아 및 부모가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들은 보육시설의 질을 담보 받지 못하면서도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해 보육료 부담이 커지게 된다.

다음으로 보육현장의 혼란과 민원제기가 불가피하다. 보육바우처 지원에서 제외되게 된 보육시설은 평가인증에 재참여, 혹은 재평가를 받기 이전에 부모들의 선택에서 제외되거나 보육료 수준을 낮춤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가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평가인증 통과시설 이용자에게만 보육바우처 지원을 연계할 경우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도입 시기를 미리 공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인증 등급별 재정지원 차등화를 위해서는 등급화 기준에 대한 합의와 시설 수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보육바우처를 통한 재정 지원이 현재수준보다 낮아질 경우 이용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수 등급에 대한 보육바우처 지원은 현 수준보다 높일 경우 수용 가능성이 더 높다. 이 경우 미인증 시설 이용자에게 삭감되는 만큼의 예산을 우수등급 보육시설 이용자에게 일부 이동이 가능할 것이다.

3.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 방안

평가인증 점수로는 인증결과를 등급화하여 공개하고, 공공어린이집은 평가인증 등급 이외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조건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 필요성

평가인증 결과를 활용하여 일정 수준에 도달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의 배경에는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서울시와 부산시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공인 어린이집 사례가 있다.

이러한 공인 어린이집 도입 배경에는 부모들의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확충의 어려움으로 이들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인건비 지원을 통하여 공공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 어린이집의 문제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국공립이나 민간 어린이집과의 인건비 지원이 없는 민간어린이집간의 격차 때문이다. 아동당 가용 보육비용이 낮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임대 등으로 아동보육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정부 지원시설과 정부 비지원시설은 보육료 및 서비스 수준의 차이가 있어 부모들은 정부지원시설을 선호한다. 그러나 정부지원시설은 총 보육아동의 30% 정도로

이를 이용할 수 없는 70% 정도의 수요자는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민간시설을 선택하거나, 비용은 동일하지만 서비스 수준이 낮은 시설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 결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낮고 부모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은 부조리를 경험하게 된다. 2009년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보육시설 이용 부모들의 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3.66점 수준으로 민간보육시설은 가장 낮고, 특히 비용 만족도 3.16점 수준으로 가장 낮다. 영유아 부모의 약 20% 정도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모두 보낼 만한 곳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부모 취업, 소득수준 등 특성 차이 거의 없다. 반면에 보육료는 영아는 기본보조금 지원으로 시설 유형별 차이가 없으나 유아는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아동보다 높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보육료 지원을 안 받는 유아의 보육료는 시설유형별로 차이가 커서 보육료 면제 아동도 일부는 지자체가 지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부모가 지원 단가와외 보육료 차액도 부모의 부담이다. 이외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특별활동에 대한 부담도 크다. 보육시설 특별활동의 실시 한쪽에는 재정적 운영의 어려움 해소 욕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보육료 지원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이용 부모 중 보육료가 매우 부담스럽다는 비율이 16%이고 전혀 부담 안 된다는 비율은 6.1%에 불과하다.

그러나 부모 중 보육료 자율화를 찬성하는 비율은 낮다. 보육료 완전 자율화에는 5.8%만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찬성 비율의 소득계층 차이는 미미하다. 이는 2004년 15% 대비에 크게 감소된 것으로, 이는 비용 지원에 대한 정부 역할 기대 증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민간이 공급 주체이지만 시설별 지원으로 이러한 문제를 타계해서 궁극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과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유사한 수준의 비용으로 이용하도록 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공인 어린이집이 등장하였다.

덴마크는 보육을 비영리로 간주, 사립 시설에도 영리추구를 허용하지 않으며, 네덜란드는 보육 공급자가 대부분 민간(Care Market)으로 아동별 지원 방식을 선택하였으나, 투자자에 대한 수익의 분배, 배당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보육 공급업체를 비영리 조직으로 분류한 것이다.

나. 방안

1) 재정 지원 방법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궁극적으로는 국공립보육

시설과 같은 인건비 지원을 목표로 한다. 정부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재 서울시나 부산형과 같이 보육교사와 시설장 모두 1호봉 기준으로 지원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인건비 지원을 질적 수준이 높은 보육시설에 하나의 혁신적 인센티브로 인정하는 것이다.

동시에 유아 기본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다. 시설장 조사에서도 유아 기본보육료에 대한 선호도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영아 기본보육료를 지원하고 민간시설 유아보육료 수납한도액과 보육료 지원 단가 차액을 지원하자는 비율이 영아기본보육료를 없애고 인건비 지원 방식으로 하자는 비율보다 약 4%p가 높았다.

그러나 유아 기본보육료보다는 인건비 지원 방식이 공공 어린이집 취지에는 더 적합하다. 유아 기본보육료는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부모보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후자는 시설보조금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의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시설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 부모보조금에 대하여 정부가 어린이집에 조건을 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 대상 선정 기준

공공형 대상 보육시설은 평가인증으로 우수 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 한하여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공공형은 공공어린이집의 덕목을 따라 가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공공어린이집, 즉 국공립어린이집의 장점과 그 요인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 부담이 덜하고 질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부모 만족도가 높다. 그러면 질적 수준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물리적인 측면이다. 시설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므로 놀이터도 확보되어 있고, 정부가 개보수 비용을 지원을 받으므로 외형적으로도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출 수 있다. 두 번째는 투명한 운영과 기타 운영비의 미소요이다. 따라서 서비스에 소요되는 제 비용의 단가가 높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로 질 높은 교사의 확보나 질 높은 급간식 제공이 가능하다. 세 번째로는 국가가 정한 제반 운영 기준을 잘 지키며 취약보육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수용성이 높아서 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도도 높다는 점이다.

이런 배경을 감안하여 공공형 어린이집에서 충족되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상은 보육 정원 15인 이상 어린이집으로 현원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평가인증 통과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으로 최고 등급 시설로 인증 받아야

한다.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지원도 여기에 상응하고자 한다면 서비스의 수준 기준도 이에 맞추어야 한다.

셋째, 보육시설 운영을 12시간 종일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이는 국공립보육시설에 기대하는 고유 기능을 반영하여 전통적으로 일하는 엄마 등 가정서 장시간 보호가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어린이집 건물 소유형태가 자가이어야 하며, 자가인 경우에도 용자에 대한 월 상환액이 시설 운영비의 5% 이내이어야 한다. 이는 지원되는 보육 비용이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와 연계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기능이다. 임대료나 상환금 부담이 클 경우에 그 부담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또한 임대료 불안정한 개인 어린이집에 정부가 시설을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다섯째, 보육시설 면적이 영유아보육법 상 기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실외놀이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표 VI-3-1〉 공공형 어린이집 대상 선정 기준(안)

구분	기준
평가인증	- 최고 등급
건물 소유	- 자가 시설 - 용자, 임대 등 월 상환액이 시설 운영비의 5% 이내
운영 시간	- 종일제 기준
물리적 환경	- 법적 기준 이상 면적 확보 - 실외놀이장 확보
대표자	- 보육시설 및 유사기관 중복 운영 배제

여섯째, 대표자가 다른 유형의 유사한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을 중복하여 운영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공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와 다른 유형의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인 어린이집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곱째,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시설운영비리 및 아동학대 등과 관련하여 해당기관으로부터 조사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보육전문가를 대상 조사에서 임대시설 제한, 용자 과다한 자가시설 제한, 어린이집 복수운영 및 학원 등 유사기관 동시 운영 대표자 제한,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놀이터 요건 충족 등 4가지 항목에 대하여 찬성비율은 어린이집 복수운영 및 학원 등 유사기관 동시 운영 대표자 제한은 찬성이 94.8%이고 용자 과다한 자가시설 제한과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놀이터 요건 충족은 92% 수준이며 임대시설 제한은 72.4%이었다.

3) 선정 절차 및 규모

공공형 보육시설 선정 절차는 시·도 책임 하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를 심사하여 통보, 허용하는 과정을 거친다. 심사는 별도의 심사 기준을 만들어 적용한다. 평가인증 지표와 중복되지 않는 수준에서 관찰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가 가능한 범위에 기준을 만들어 활용한다. 심사 기구는 시·도 중앙보육정책위원회나 아니면 객관적 입장이 보장되는 위원들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규모는 중앙정부 예산과 연계되어 있으나, 장기적으로 지역별로 국공립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등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이 보육아동의 50% 정도까지 보육한다는 목표 하에 지역별로 상한 목표를 설정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4) 운영 지도 및 사후관리

공공형 어린이집은 운영의 제 측면을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에서 정한 장부 등 비치하고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수입과 지출원칙 준수 적용하여야 한다. 종사자 전원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급여제도도 운영하여야 한다. 이외 취약보육 실시, 입소 우선순위 준수, 보육료를 국공립보육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납, 운영위원회 운영 등 국공립보육시설이 준수하는 사항을 동일하게 준수한다.

사후관리로는 매년말 정기평가 및 3년단위 종합평가를 통해 재지정한다. 대표자 또는 시설장 변경 및 시설의 매매, 장소 이전, 중대한 행정처분, 시정조치명령 미이행 등의 취소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모든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고 부당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되며, 지정 취소 사실을 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표준보육행정시스템에 게재한다. 또한 상기 취소사유 발생으로 취소된 시설은 향후 3년간 재지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5) 공개

어린이집은 공공형 지정 사실을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동시에 해당 보육시설 보육아동 부모에게 문서로 발송한다. 영유아보육법으로 공개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고, 공개 행위를 어린이집의 의무로 규정한다.

중앙 및 지방정부는 활용 가능한 홈페이지에 공공형 어린이집을 등재한다.

다. 고려사항

재정 지원방식으로 유아 기본보조금과 영유아 교사 인건비가 거론되는데, 아동별 지원과 시설별 지원은 모두 다 장단점은 있다. 우선 두 가지 지원방식은 시장경제에 대한 이념의 차이가 있다. 시장 기능을 믿는 쪽은 아동별 지원으로 부모의 선택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시장 기능을 믿지 못하는 쪽에서는 부모가 서비스의 질을 판단할 능력이 있는가와 부모의 선택이 정책적 의도와 일치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Cleveland & Krashinsky, 2003), 시설보조금을 선호한다.

민간이 설치한 민간의 자산에 시설별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도 논란의 대상이 된다. 보육서비스 공급이 민간이 주를 이루는 국가들은 최근에 보육수요자를 통한 지원으로 정책을 강화하였다. 호주가 1998년에 아동보육료 지원으로 전면 전환하였고, 네덜란드의 경우 종전에 인건비의 65%를 보조하던 시스템에서 30%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아동보육료 지원 쪽으로 변경하였다.³⁰⁾ 아동별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호주나 네덜란드는 OECD 국가들 중에서 공보육 수준이 낮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고, 이러한 국가적 특성 때문에 아동별 지원을 선택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우리의 경우도 보육이 이미 상당부분이 시장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와 시설 중 어디에 감독 메커니즘 기능을 더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캐나다 퀘벡 주의 경우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보육료를 1일 7불로 상한제를 적용하고, 정부 부조를 공공시설은 40불, 사립시설은 30불로 우리의 기본보육료과 유사한 지원 병행하여 이용률 증가로 호평을 받고 있어서 정책적 선택이 공급 주체별로 양분되어야 하는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시설별 지원의 문제는 지원금이 서비스의 질적 수준으로 이어지는 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공공성 보장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판의 대상이 된다.

4. 보육료 규제 완화 어린이집 도입 방안

평가인증 점수만으로 우수인증은 주고 보육료 규제를 완화하는 혁신적 인센티브

30) 외국의 사례 벤치마킹은 역사적으로 각기 다른 배경을 고려하여야 함. 호주, 미국, 캐나다는 민주주의적 국가로 시장 오리엔테이션이고, 프랑스,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등 조합국가는 종교단체에 기초한 시설이며, 스웨덴, 노르웨이는 사회 민주주의적 국가는 공공 인프라 중심임.

를 주는 조건을 별도로 규정한다.

가. 필요성

현재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상한선과 특별활동을 포함한 기타 운영비 상한선은 매년 시·도지사가 고시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는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당해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보육도 기타 필요 경비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매년 상한선 고시한다.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 등으로 최대 월 23만원³¹⁾ 추가로 수납한다. 상한선 자체를 민간과 국공립시설 차등을 두는 지역 많다.

이러한 규제에 대하여 1990년대말 이후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보육료 자율화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되어 왔다. 스스로 보육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자율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의 핵심적 요인은 부모의 선택권 보장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이다.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육비용이 소요되어야 하는데 현재 정부가 보육료에 상한선을 두어 제한하고 있으므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따라서 특히 민간보육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³²⁾ 특히 민간어린이집 건물이 대부분이 임대 건물이며 자가인 경우도 융자금이 적지 않아서 투자금 상황에 대한 부담도 크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육료를 자율화하여 민간보육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로서 고가의 질 높은 서비스를 희망하는 수요자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한다. 이는 보육서비스의 다양성 확보로 선택 여지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는 자율화된 시설은 학원 형태로만 진입이 가능한데, 제도권에서 이를 허용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에서도 수요자의 26% 정도는 보육서비스가 좋아진다면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 비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높아져서 고소득층은 45%까지 증가한다.

보육료 자율화를 주장하는 논리는 보육료 자율화가 전체적으로 서비스의 질적 수

31) 서울시 강남구임.

32) 영아 보육비용은 영아 기본보조금 지급으로 표준보육비용에 근접하나, 유아 보육비용은 표준보육비용에 크게 미달되는 것으로 파악됨.

준 제고에 기여하며, 서비스 고급화로 이용자가 확대되면, 민간 보육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 영리성이 보장되는 보육사업에 대규모 자본 유입되어 시장이 확대 되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한 이로 경쟁력 확보로 외국 보육기관의 유입 등 대외적 개방에 대비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기획예산처, 2007).

한편, 고소득계층에게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자비 부담하게 함으로 보육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한다.

보육료가 자율화되면 보육료가 오를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현재도 대부분의 특별활동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받고 있어 사실상 자율화 상태이고, 유치원의 경우처럼 보육료가 자율화되어도 시장 기능이 작동하여 그 인상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율화를 주장하는 학자들 중에서는 이들 시설을 견제할 기본 공공 인프라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나. 방안

1) 자율화 범주

보육료 자율화 대상과 자율화 하는 정도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1안은 자율화 적용 대상으로 보육료는 상한선을 그대로 두고 특별활동 등 기타 필요 경비만 자율화하는 방안이다. 제1안의 경우, 기타 운영비 자율화는 고급화된 특별활동 등 부가적 서비스 시행을 하나의 혁신적 인센티브로 인정하는 것이다. 제2안은 보육료와 특별활동을 포함한 기타 경비 모두를 자율화하는 방안이다. 전문가 조사에서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 상한선 모두가 43.1%로 가장 높고, 보육료 상한선만은 32.3%, 기타 필요경비 상한선만은 24.6%로 나타났다.

보육료나 특별활동 비용 자율화의 정도에서도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는 현재보다 높은 정도이지만 상한선을 두는 방안이다. 보육전문가들 의견대로 현재의 수납한도액의 150%~200% 정도로 상한선을 올려서 적용할 수 있다. 또 다른 방안은 일체 상한선을 제시하지 않고 완전 자율화하여 보육시설이 결정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한편 운영 측면에서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하는 문제는 법이나 안내로 규정된 수준 이상으로의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기준에 미달하는 조치들은 허용하지 않는다. 즉, 교사 대 아동 비율을 0세아의 경우 1:2로는 운영할 수 있으나 아동 수를 규정보다 늘릴 수는 없다.

2) 대상 선정 기준

자율화 적용 대상 보육시설은 평가인증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된 보육시설에 한하여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충족되어야 할 조건은 공공형 보육시설 조건과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첫째, 평가인증 통과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으로 최우수 시설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시장의 기능이 잘 작동한다면 수요자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부합하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육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부모들이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실제 이용자가 아동으로 집 가까이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는 특성이 있어서 시장 기능이 작동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족한 정보 제공 부분을 정부가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둘째, 보육시설 운영을 12시간 종일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보육은 전통적으로 취업여성의 자녀 양육지원 기능을 하여야 하므로 자녀 보호가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 보육료 자율화가 특별활동을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자율화된 보육시설이 기능 학습 위주의 학원과 같은 사교육 기관화 되고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를 외면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셋째, 어린이집 건물 소유형태가 자가이어야 하며, 자가인 경우에도 월 상환액이 시설 운영비의 5% 이내이어야 한다. 이는 자율화된 보육료가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와 연계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기능이다. 임대료나 상환금 부담이 클 경우에 그 부담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넷째, 보육시설 면적이 영유아보육법 상 기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실외놀이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는 보육시설이 외형적으로도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자율화와의 연계되어야 함을 고려한 것이다.

〈표 VI-4-1〉 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제 완화 대상 어린이집 선정 기준(안)

구분	기준
건물 소유	- 자가 시설 - 월 상환액이 시설 운영비의 5% 이내
운영 시간	- 종일제 기준
물리적 환경	- 법적 기준 이상 면적 확보 - 실외놀이장 확보

3) 선정 절차 및 규모

자율화 보육시설 선정 절차는 시·도, 시·군·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를 심사하여 보육료 상한선 규제 완화 보육시설을 통보, 허용하는 과정을 거친다. 심사 기구는 보육정책위원회나 아니면 별도의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지역별로 해당 (최)우수보육시설 중 최대 50% 이하까지만 보육료 자율화 보육시설로 인정한다.

4)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

제1안으로 기타 운영비만 자율화하는 경우에는 영아 기본보조금, 차등보육료 지원은 모두 현재와 같이 적용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표준보육과정은 낮은 비용을 실시하고 특별활동 등 부가적 보육활동만 고급서비스로 하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고급화된 부가 활동을 요구하는 부모들 사이에서 경쟁력을 갖게 해주는 의미가 있다.

제2안으로 보육료와 기타 운영비를 모두 자율화할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차등보육료는 지원 받으나 기본보조금은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그러나 사실상 영아 기본보조금을 포기하고 영아보육료를 자율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율형 어린이집은 유아 중심의 보육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우수한 보육시설에서 영아보육 서비스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

5) 운영 지도 및 사후관리

제1안으로 기타 운영비만 자율화하고 영아 기본보조금, 차등보육료 지원은 모두 현재와 같이 받을 경우, 운영시 규정 준수는 일반 보육시설과 동일하게 한다.

제2안으로 보육료와 기타 운영비를 모두 자율화하면 보육시설은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는 사실상 영리성을 묵인하는 것이다.

사후관리로는 매년말 정기평가 및 3년단위 종합평가를 통해 재지정한다. 대표자 또는 시설장 변경 및 시설의 매매, 장소 이전, 중대한 행정처분, 시정조치명령 미이행 등의 취소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지정을 중단되고, 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표준보육행정시스템에 이를 게재한다. 또한 상기 취소사유 발생으로 취소된 시설은 향후 3년간 재지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6) 공개

어린이집은 자율형 지정 사실을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동시에 보육아동 부모에게 문서로 발송한다.

다. 고려사항 및 과제

첫째, 보육료 자율화와 영리성 보장의 관계이다. 보육료를 자율화한다는 것과 영리성 보장을 별도의 정책이다. 보육에서의 영리성 확대는 개인이나 기업이 보육시장에 투자하여 적정이윤을 확보하자는 의미이며, 그 수단은 보육기업과 보육비용의 자율화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보육료를 자율화한다고 이것이 모두 영리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다. 특히 기타 운영비만 자율화하는 경우 영리성과 자율화는 분명 분리되는데, 보육료와 기타 운영비를 모두 자율화할 경우에 영리성을 거부하기 어렵다.

만약에 투자에 대한 이윤을 보장한다면 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일부 영리 대자본 투입 시 소자본 소규모 보육시설이 타격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50인 미만이 약 2만7천개소로 보육시설의 75%이며, 대부분 가족이 함께 운영한다.

둘째, 기타 필요 경비의 문제이다. 기타 필요경비만 자율화 하여도 그렇지만, 보육료와 기타 필요 경비를 모두 자율화하여도 보육료 자체보다 특별활동 비용 상승과 부작용 우려된다. 높은 서비스의 질이 비싼 특별활동으로 오도되고, 지방정부에서 허용하던 특별활동의 국가의 공식적 허용으로 부모 부담 증가는 물론, 과도한 특별활동이 아동 발달에 바람직한 지 우려된다. 특히 교육 측면에서도 외국어, 악기, 영재교육, 과학실험 등 다양한 고비용의 특별활동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오전 표준보육과정 운영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육은 정체성을 상실이다. 영리 추구하고 무분별한 부모 조기교육 요구가 결합하여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과잉으로 보육 서비스 내용이 오도될 가능성이 많고, 궁극적으로 보육 개념의 혼동을 불러오게 되고 보육의 정체성을 잃게 된다. 운영자도 영리 추구에 목적을 두면 공공성은 상실하고, 영리에 중점을 두는 운영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보육시설도 사교육기관의 특성을 갖게 된다. 이로 유아대상 조기교육의 과열은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져서, 현재도 높다고 인식되는 양육부담을 더 높이게 되고, 이는 출산 종결로 연결된다.

한편, 특별활동 오전 금지는 특별활동 비용을 높이고, 따라서 보육시설 특별활동

이 학원이나 유치원 대비 경쟁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

〈표 VI-4-2〉 보육료 자율화 적용 방안

구분		적용 대상	
		기타 필요 경비	보육료, 기타 필요 경비
방법	상한선 조정		
	상한선 철폐		

셋째, 보육료 자율화가 수용 가능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간 격차 문제이다. 경쟁 가능한 공급, 정보의 대칭성 등 시장기능 작동 전제조건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대처럼 효과를 내기 어렵다. 이는 지역과 소득수준 집단 간 격차 확대 가능성이 우려된다. 개별적 자녀의 문제이므로, 소수의 자율화 시설이 사회에 미치는 박탈감 등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시설, 부모간에도 지역적으로 차별화 되는 현상을 초래하여 사회적 갈등 요인을 추가하게 된다. 빈곤 등의 이유로 고급의 조기교육 기회를 갖지 못하는 아동은 부모의 경제적 상태의 차이로 인하여 출발부터 공정한 위치에 서지 못하여 스스로 계층을 고착화시키는 경향을 초래한다. 실제 보육료 및 부모 부담능력도 낮다. 보육료에 대하여 이용부모 9.1%는 매우 부담, 33.2%는 부담되는 편이라고 응답하여, 현재 보육료에도 부담을 느끼는 부모가 42.3%이다. 특히 읍·면이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높다.³³⁾ 보육의 영리성 개념 도입이 공공 보육시설 확보와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5. 맺는 말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2006-2009년 제1차 평가인증에서 전체 어린이집 35,550개소 중 57.0%인 20,255개소가 인증을 통과하였다.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보육시설은 91.4%, 가정어린이집은 55.5%, 민간 어린이집은 56.1%이다. 이러한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데 일정 부분

33) 보육료 자율화에 대한 부모 및 시설장의 찬성률은 낮음. 부모 중 보육료 완전자율화에 대한 찬성비율은 8.0% 수준에 불과하고 시설장의 찬성률은 30.1%임.

기여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일부에서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육 시설에 보육서비스의 공급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비용 편익분석에서도 시설들의 자체적 투자 비용까지 감안하여도 2배 이상의 비용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가인증 결과의 활용은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평가인증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도 제한적이므로 부모들의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고 평가인증 여부를 좋은 어린이집 선택 기준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낮고,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 지원과 연계가 미비하여 질적 수준이 낮은 보육시설의 퇴출 구조 마련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최근에 서울, 부산 등 지방정부에서 평가인증 결과를 활용하여 공인 어린이집을 두는 등 평가인증 시설들 간에도 서비스의 질적 수준 차이를 두려는 시도가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지방정부의 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2011년 하반기에 평가인증 결과를 토대로 공공형 및 자율형 어린이집을 둔다는 기본 방침을 밝히고 있다. 사실 평가인증 통과 시설들의 총점 차이는 최고 28점에 달하고, 2011년에는 전체 어린이집의 80%가 평가인증을 통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평가인증 통과만으로 어린이집이 점점 높아지는 부모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 보고서는 평가인증의 활성화를 통해 민간보육시설의 질을 제고한다는 관점에서 보육전문가와 어린이집 시설장 의견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평가인증 결과를 등급화하여 공개하는 방안, 그리고 공공형 및 보육료 규제완화 어린이집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평가인증 결과는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특히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부모에게 해당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정보가 상세하게 전달되도록 노력하도록 의무 할 필요가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시설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성 강화 정책이므로 이후에도 당초에 의도하였던 보육시설의 공공성 증대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상 선정 조건, 제척 사유, 사후관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규제 완화 어린이집은 법으로 정한 규정 이상의 보육서비스의 질을 필요로 하는 수요에 부응한다는 당초의 목적을 유지하되 일반 수요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혜규·박세경·원종욱·서문희 외(2009). 아이사랑카드제도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효과성 평가 연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기획예산처(2007). 국가재정운용계획. 한국개발연구원.
- 김동례·김영옥(2007).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의 운영과정에 관한 조사연구. 유아교육학 논집, 11(4), pp. 317-341.
- 김영애(2008). 학부모의 보육시설 선택기준 분석-평가인증제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용인(2008).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및 보육서비스 만족도 연구.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인자(2007).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인식을 통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원·김유정(2008).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6(10), pp.23-36.
- 박성진(2006). 보육시설 평가인증조력에 대한 보육교사의 요구. 성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자연·김희진(2008).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와 평가인증에서의 부모참여에 대한 부모의 인식. 열린유아교육연구, 13(2), pp.1-23.
- 보건복지가족부(2010). 2010 보육사업안내.
- 서문희 외(2000).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김명순·김운기 외(2009).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행의 평가와 추진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신희연·송신영(2009). 보육시설 평가인증 효과 분석. 육아정책개발센터.
- 심인선(2007). 경상남도 보육시설 평가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경남발전연구원.
- 오민수(2007).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 시설장의 평가인증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원정아·이진희(2008).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 전후의 교사 효능감과 평가인증 과정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아동교육*, 17(4), pp. 213-224.
- 유희정·최정운·김문정(2007). 평가인증을 통한 보육시설 서비스 개선효과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대균(2001). 유아교육기관 평가 체제의 비교 분석-NAEYC, OFSTED, NCAC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1(2), pp.341-358.
- 이미애·이소은(2008).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관한 민간시설 종사자의 인식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2), pp. 23-48.
- 이옥·유희정·이미화(2008). 보육시설 평가인증사업의 성과(2003-2008).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윤이(2008)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대한 시설장의 인식: 대전광역시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해·유희정·김온기(2006). 평가인증시범사업 평가 및 사후 관리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재완·류수현(2006).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관한 보육시설장의 인식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5, pp. 361-381.
- 이정숙(2007).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시설과 비 참여시설에 대한 어머니의 평가. *아동교육*, 16(3), pp. 253-264.
- 정기원·오미영·안현애(1995). 보육시설 평가 기준 및 평가 체계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덕희(2007). 정부비지원시설장이 바라본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pp. 371-393.
- 정병호·정진경·이부미(2003). 보육법인 모형개발 연구. *여성부·(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 정찬우·김언주·민현숙(2008).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의 효과에 관한 연구- 대전지역 9개 인증 보육시설(21인 이상)을 대상으로-. *아동교육*, 17(1), pp.219-279.
- 채혜선(2008).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탁옥경·배지희(2007). 보육시설 평가인증 과정에 참여한 원장과 교사의 인식. *유아교*

육연구, 27(4), 327-353.

하은경·김주후·김경란(2008).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평가인증 참여 및 만족도 분석: 평가인증 심의 통과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4), 153-176.

Ofsted(2010). Using the early years evaluation schedule.

부 록

- 부록 1. 민간 비인증 어린이집의 설문항목별 지불의사 금액
- 부록 2. 시·군·구별 평가인증 참여 및 통과시설 지원 특수시책
- 부록 3. 서울 공인 어린이집 평가지표
- 부록 4. 영국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평가 결과 공개 사례
- 부록 5. 설문조사표 2종

부록 1. 민간 비인증 어린이집의 설문 항목별 지불의사 금액

〈부표 1-1〉 시설의 청결성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

지불의사금액(A)	민간비인증시설			민간인증시설		
	빈도(B)	비중(%)	총액(A×B)	빈도(B)	비중(%)	총액(A×B)
지불의사 없음	3	16.66	0	41	26.62	0
5	1	5.55	5	11	7.14	55
10	1	5.55	10	7	4.54	70
20	1	5.55	20	-	-	-
30	-	-	-	1	0.64	30
개선 불필요	12	66.66	0	94	61	0
총계	18	100	35	154	100	155
가중평균금액			1.94			1.00

주: 민간비인증시설이용자(31명), 민간인증시설이용자(219명) 중 시설을 이동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들의 지불의사금액분포임.

〈부표 1-2〉 시설의 노후상태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

지불의사금액(A)	민간비인증시설			민간인증시설		
	빈도(B)	비중(%)	총액(A×B)	빈도(B)	비중(%)	총액(A×B)
지불의사 없음	3	16.66	0	49	32.02	0
5	3	16.66	15	11	7.18	55
10	-	-	-	12	7.84	120
20	1	5.55	20	-	-	-
개선 불필요	11	61.11	0	82	53.2	0
총계	18	100	35	154	100	175
가중평균금액			1.94			1.13

주: 민간비인증시설이용자(31명), 민간인증시설이용자(219명) 중 시설을 이동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들의 지불의사금액분포임.

〈부표 1-3〉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

지불의사금액(A)	민간비인증시설			민간인증시설		
	빈도(B)	비중(%)	총액(A×B)	빈도(B)	비중(%)	총액(A×B)
지불의사 없음	3	16.66	0	37	16.89	0
5	3	16.66	15	16	7.30	80
10	-	-	-	15	6.84	150
20	-	-	-	3	1.36	60
30	1	5.55	30	-	-	-
개선 불필요	11	61.11	0	83	53.2	0
총계	18	100	45	154	100	290
가중평균금액			2.5			1.88

주: 민간비인증시설이용자(31명), 민간인증시설이용자(219명) 중 시설을 이동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들의 지불의사금액분포임.

〈부표 1-4〉 시설의 조명 및 내부인테리어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

지불의사금액(A)	민간비인증시설			민간인증시설		
	빈도(B)	비중(%)	총액(A×B)	빈도(B)	비중(%)	총액(A×B)
지불의사 없음	4	12.90	0	45	29.41	0
5	1	3.22	15	12	7.84	60
10	1	3.22	30	10	6.53	100
20	1	3.22	0	-	-	-
30	-	-	-	1	0.65	30
개선 불필요	11	58.06	0	86	55.8	0
총계	18	100	35	154	100	190
가중평균금액			1.94			1.23

주: 민간비인증시설이용자(31명), 민간인증시설이용자(219명) 중 시설을 이동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들의 지불의사금액분포임.

〈부표 1-5〉 시설장의 높은 전문성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

지불의사금액(A)	민간비인증시설			민간인증시설		
	빈도(B)	비중(%)	총액(A×B)	빈도(B)	비중(%)	총액(A×B)
지불의사 없음	3	17.64	0	45	29.60	0
5	2	11.76	10	9	5.92	45
10	1	5.55	10	3	1.97	30
개선 불필요	12	66.66	0	97	62.98	0
총계	18	100	25	154	100	75
가중평균금액			1.11			0.48

주: 민간비인증시설이용자(31명), 민간인증시설이용자(219명) 중 시설을 이동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들의 지불의사금액분포임.

〈부표 1-6〉 시설장의 친절 및 호의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

지불의사금액(A)	민간비인증시설			민간인증시설		
	빈도(B)	비중(%)	총액(A×B)	빈도(B)	비중(%)	총액(A×B)
지불의사 없음	2	11.11	0	42	27.27	0
5	1	5.55	5	7	4.60	35
10	2	11.11	20	1	0.65	10
20	-	-	-	1	0.65	20
개선 불필요	13	72.22	0	103	66.88	0
총계	18	100	25	154	100	65
가중평균금액			1.38			0.422

주: 민간비인증시설이용자(31명), 민간인증시설이용자(219명) 중 시설을 이동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들의 지불의사금액분포임.

〈부표 1-7〉 시설장의 성실성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

지불의사금액(A)	민간비인증시설			민간인증시설		
	빈도(B)	비중(%)	총액(A×B)	빈도(B)	비중(%)	총액(A×B)
지불의사 없음	3	17.64	0	46	30.26	0
5	-	-	-	5	3.28	25
10	2	11.11	20	4	2.63	40
개선 불필요	13	72.22	0	99	64.28	0
총계	18	100	25	154	100	65
가중평균금액			1.11			0.422

주: 민간비인증시설이용자(31명), 민간인증시설이용자(219명) 중 시설을 이동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들의 지불의사금액분포임.

〈부표 1-8〉 교사의 높은 전문성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

지불의사금액(A)	민간비인증시설			민간인증시설		
	빈도(B)	비중(%)	총액(A×B)	빈도(B)	비중(%)	총액(A×B)
지불의사 없음	3	16.66	0	48	31.57	0
5	2	11.11	10	9	5.92	45
10	1	5.55	10	8	5.26	80
30	3	16.66	90	1	0.65	30
개선 불필요	9	50.0	0	88	57.14	0
총계	18	100	110	154	100	155
가중평균금액			6.11			1.00

주: 민간비인증시설이용자(31명), 민간인증시설이용자(219명) 중 시설을 이동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들의 지불의사금액분포임.

〈부표 1-9〉 교사의 친절 및 호의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

지불의사금액(A)	민간비인증시설			민간인증시설		
	빈도(B)	비중(%)	총액(A×B)	빈도(B)	비중(%)	총액(A×B)
지불의사 없음	3	16.66	0	40	26.14	0
5	2	11.11	10	10	6.53	50
10	3	16.66	30	3	1.96	30
30	-	-	-	1	0.65	20
개선 불필요	10	55.55	0	100	64.93	0
총계	18	100	40	154	100	100
가중평균금액			2.22			0.64

주: 민간비인증시설이용자(31명), 민간인증시설이용자(219명) 중 시설을 이동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들의 지불의사금액분포임.

〈부표 1-10〉 교사의 성실성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

지불의사금액(A)	민간비인증시설			민간인증시설		
	빈도(B)	비중(%)	총액(A×B)	빈도(B)	비중(%)	총액(A×B)
지불의사 없음	2	11.11	0	41	26.97	0
5	2	11.11	10	10	6.57	50
10	2	11.11	20	3	1.97	30
개선 불필요	12	66.66	0	100	64.93	0
총계	18	100	30	154	100	100
가중평균금액			1.66			0.51

주: 민간비인증시설이용자(31명), 민간인증시설이용자(219명) 중 시설을 이동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들의 지불의사금액분포임.

〈부표 1-11〉 자료의 양적 충실성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

지불의사금액(A)	민간비인증시설			민간인증시설		
	빈도(B)	비중(%)	총액(A×B)	빈도(B)	비중(%)	총액(A×B)
지불의사 없음	2	11.11	0	38	24.67	0
5	3	16.66	15	27	17.53	135
10	4	22.22	40	20	12.98	20
15	-	-	-	1	0.64	15
20	2	11.11	40	3	1.94	60
30	1	5.55	30	2	1.29	60
개선 불필요	6	33.33	0	63	40.90	0
총계	18	100	125	154	100	470
가중평균금액			6.94			3.05

주: 민간비인증시설이용자(31명), 민간인증시설이용자(219명) 중 시설을 이동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들의 지불의사금액분포임.

〈부표 1-12〉 자료의 질적 충실성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

지불의사금액(A)	민간비인증시설			민간인증시설		
	빈도(B)	비중(%)	총액(A×B)	빈도(B)	비중(%)	총액(A×B)
지불의사 없음	3	16.66	0	42	27.81	0
5	2	11.11	10	21	13.90	105
10	5	27.77	50	17	11.25	170
15	1	5.55	15	1	0.66	15
20	2	11.11	40	4	2.64	80
30	-	-	-	2	1.32	60
개선 불필요	5	27.77	0	67	43.50	0
총계	18	100	115	154	100	430
가중평균금액			6.38			2.79

주: 민간비인증시설이용자(31명), 민간인증시설이용자(219명) 중 시설을 이동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들의 지불의사금액분포임.

〈부표 1-13〉 급식 및 간식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

지불의사금액(A)	민간비인증시설			민간인증시설		
	빈도(B)	비중(%)	총액(A×B)	빈도(B)	비중(%)	총액(A×B)
지불의사 없음	2	11.11	0	22	14.37	0
5	1	5.55	5	22	14.37	110
10	3	16.66	30	23	15.03	230
15	1	5.55	15	2	1.30	30
20	2	11.11	40	6	3.92	120
25	-	-	-	2	1.30	50
30	-	-	-	5	3.26	150
개선 불필요	9	50.0	0	72	46.40	0
총계	18	100	90	154	100	690
가중평균금액			5			4.48

주: 민간비인증시설이용자(31명), 민간인증시설이용자(219명) 중 시설을 이동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들의 지불의사금액분포임.

〈부표 1-14〉 보육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

지불의사금액(A)	민간비인증시설			민간인증시설		
	빈도(B)	비중(%)	총액(A×B)	빈도(B)	비중(%)	총액(A×B)
지불의사 없음	2	11.11	0	36	23.68	0
5	1	5.55	5	15	9.86	75
10	2	11.11	20	12	7.89	120
15	1	5.55	15	-	-	-
20	1	5.55	20	6	3.94	120
25	-	-	-	1	0.65	25
30	-	-	-	3	1.97	90
개선 불필요	11	61.11	0	81	52.5	0
총계	18	100	60	154	100	430
가중평균금액			3.33			2.79

주: 민간비인증시설이용자(31명), 민간인증시설이용자(219명) 중 시설을 이동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들의 지불의사금액분포임.

〈부표 1-15〉 보육 프로그램의 충실성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

지불의사금액(A)	민간비인증시설			민간인증시설		
	빈도(B)	비중(%)	총액(A×B)	빈도(B)	비중(%)	총액(A×B)
지불의사 없음	3	16.66	0	45	29.60	0
5	1	5.55	5	10	6.57	50
10	2	11.11	20	8	5.26	80
15	1	5.55	15	-	-	-
20	1	5.55	20	3	1.97	60
30	-	-	-	2	1.31	60
개선 불필요	10	55.55	0	86	55.8	0
총계	18	100	60	154	100	250
가중평균금액			3.33			1.62

주: 민간비인증시설이용자(31명), 민간인증시설이용자(219명) 중 시설을 이동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들의 지불의사금액분포임.

〈부표 1-16〉 위급상황 대처능력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

지불의사금액(A)	민간비인증시설			민간인증시설		
	빈도(B)	비중(%)	총액(A×B)	빈도(B)	비중(%)	총액(A×B)
지불의사 없음	2	11.11	0	31	20.26	0
5	-	-	-	20	13.07	100
10	2	11.11	20	9	5.88	90
15	-	-	-	2	1.30	30
20	2	11.11	40	3	1.96	60
30	-	-	-	2	1.30	60
개선 불필요	12	66.66	0	87	56.49	0
총계	18	100	60	154	100	340
가중평균금액			3.33			2.20

주: 민간비인증시설이용자(31명), 민간인증시설이용자(219명) 중 시설을 이동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들의 지불의사금액분포임.

부록 2. 시·군·구별 평가인증 참여 및 통과시설 지원 특수시책

〈부표 2-1〉 시·군·구별 평가인증 참여 및 통과시설 지원 특수시책

구분	시·군·구 명	사업명	'09예산	'10예산	지원대상	지원내역
서울	광진구	보육시설지원	10,000	30,000	평가인증 통과시설 60개소	50만원
서울	강남구	교재교구비 지원	60,000	45,500	평가인증 신청시설	시설규모당 50만원~300만원
서울	성동구	인센티브사업	-	63,000	평가인증 통과시설 및 서울행어린이 집	환경개선비 6.3만원
서울	성동구	교재교구비 지원	20,000	-	평가인증 통과시설	1개소당 50만원
서울	동작구	종사자수당 지원	54,000	54,000	평가인증 통과시설 원장, 교사	원장 60만원, 교사 30만원
서울	동작구	인센티브사업	111,000	-	평가인증 참여시설	환경개선비, 교사격려비 지급
서울	동작구	환경개선비지원	75,000	80,000	평가인증 신청시설(민간, 가정)	시설당 300~500만원 지원
서울	영등포구	시설비 및 조력단 수당	-	150,000	평가인증 통과시설	시설비 100만원 조력단 수당 : 3만원*16명*2회
서울	구로구	기자재비 지원	48,000	48,000	평가인증 통과시설 60개소	시설별 80만원
서울	마포구	시설 지원	30,000	52,500	평가인증 통과시설 35개소	시설별 150만원
서울	서대문구	종사자 복리후생비	54,000	30,600	평가인증 통과시설(구립 비담임, 민 간, 가정)	1인 월 8만원
서울	서대문구	인센티브 지원	65,000	57,000	평가인증 통과시설	시설규모별 100만원~200만원

구분	시·군·구 명	사업명	'09예산	'10예산	지원대상	지원내역
서울	강동구	종사자 지원	78,000	78,000	평가인증 통과시설 종사자	1인당 20만원
서울	용진구	참여수수료	7,000	7,000	평가인증 참여시설	30만원*15개소+25만원*10개소
서울	중랑구	운영비 지원	40,000	20,000	평가인증 통과시설	운영비 지원
서울	서초구	격려금	25,000	25,000	평가인증 참여·통과 시설	시설당 30만원~170만원
서울	성동구	인센티브사업	-	226,800	평가인증 통과시설 및 서울형어린이 집 지원	서울형보육교사 시간외 근무수당 22680만원
서울	강북구	교사 수당 지원	225,000	225,000	평가인증 통과시설	시설(300만원) 및 종사자(50만원)
부산	남구	난방비지원	25,660	20,430	평가인증 통과시설(민간, 가정)	보육아동 인원수별 20만원~50만원
부산	강서구	저소득 장애아동 난방비 지 원	34,400	45,000	평가인증 통과시설 24개소	시설당 187.5만원
부산	강서구	차량운영비 지원	68,400	86,400	평가인증 통과시설 24개소	월 30만원
부산	해운대구	난방비 지원	50,100	48,020	보육시설 248개소	보육현원별 15만원~30만원
부산	연제구	인센티브 확대	6,200	5,000	평가인증 통과시설 25개소	개소당 20만원
대구	수성구	환경개선비	40,000	40,000	신규 평가인증 통과시설 40개소	시설당 100만원(정원기준 1인/2만원)
대구	달성군	환경개선비	40,000	16,000	2009년 12월말 평가인증 통과시설 (2009년에 기 지원 시설 제외)	현원별 40만원~160만원
대구	달성군	보육시설 종사자 신진지 견 학	-	16,000	보육교사	80만원*20명
인천	동구	신청 수수료 지원	2,000	2,000	평가인증 신청시설	25만원/30만원 차등 지원
인천	중구	수수료 지원	6,300	5,000	평가인증 신청시설	평가인증 수수료 지원

구분	시·군·구 명	사업명	'09예산	'10예산	지원대상	지원내역
인천	중구	보육교사 초과근무수당	29,450	30,000	평가인증 신청시설 보육교사	월5만원 6개월간 지급
인천	남동구	학습운영비	103,200	103,200	평가인증 통과시설	시설장 월 5만원
울산	울주군	학습용품 구입비 지원	0	20,000	2009년 말 현재 평가인증 통과시설 100개소	시설당 20만원*1회
광주	광산구	보육교사 처우 개선 수당	75,460	120,600	평가인증 통과시설 중 1년이상 근무한 보육교사(인건비 미지원 시설)	2만원*500명*12월
경기	구리시	기자재 및 재료비지원	37,000	10,000	평가인증 통과시설	시설당 100만원 지원
경기	파주시	지원금	-	20,000	평가인증 통과시설	평가인증 수수료 35~45만원/개소
경기	고양시	현판식 전달	-	-	평가인증 통과시설	평가인증 현판을 시장님이 직접 전달
경기	파천시	수수료 지원	2,000	2,000	평가인증 통과시설	평가인증 통과시설 수수료
경기	파천시	시설 지원	25,000	25,000	평가인증 통과시설	종사자 1인당 50만원(1회)
경기	화성시	개보수 및 교체교구비	60,000	100,000	평가인증 통과시설	최초 평가인증 시 200만원
경기	김포시	냉난방비 지원	-	22,300	평가인증 통과시설	현원별 월 5만원~10만원(5개월)
경기	화성시	교사 수당	216,000	492,000	평가인증 통과시설	교사 1인당 월 5만원
경기	하남시	통과 지원금	-	80,000	평가인증 통과시설	320명*25만원
경기	안산시	종사자 수당 지원		90,000	평가인증 통과시설 종사자 인증수당 지원	1회 10만원 지원(인증통과 전 3개월이 전 근무자 중 현재까지 근무자)
경기	안양시	종사자 수당	273,000	308,700	평가인증 통과시설 6개월이상 종사하는 반말임 교사, 시설장	월 3.5만원
경기	용인시	인센티브 지원	151,000	220,000	2009년 평가인증 통과시설 103개소	환경개선비 지원(시설개보수비등) 정월별 차등지원 200만원-450만원

구분	시·군·구 명	사업명	'09예산	'10예산	지원대상	지원내역
경기	가평군	환경개선비 지원	41,000	35,000	당해년도 평가인증 통과시설 7개소	시설당 500만원
경기	양주시	환경개선비 지원	50,000	100,000	평가인증 통과시설	환경개선비 200만원 지원
경기	의정부시	노후시설 기능보강	50,000	50,000	환경개선이 필요한 시설	정부지원 노후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경기	의정부시	보육지원금	40,000	70,000	평가인증 통과시설 70개소	인증통과시설별 100만원(1회) 지원
경기	남양주시	환경개선비 지원	203,000	163,000	2009년 평가인증 통과시설	민간·국·공립보육시설 : 250만원/개소 가정보육시설 : 150만원/개소
경기	남양주시	보육교사 수당 지원	186,000	102,750	2009년 평가인증 통과시설 근무 시 설장 및 보육교사	월 25만원/명
경기	고양시	환경개선비 지원	131,000	249,000	평가인증 통과시설	20인 이하 : 100만원, 21인 이상 : 200 만원
경기	양평군	시설 지원	30,000	30,000	평가인증 신규시설 3개소	시설당 3000만원*1회
경기	군포시	조력단 운영비	7,200	10,260	평가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등	종사자교육(간식+강사료) : 440만원 탐방시설조력 : 10만원*4개소*2회 조력단수당 : 7만원*10명*4기*2회
경기	하남시	시설 지원	81,000	54,000	평가인증 통과시설	1개소당 인원별 100만원~300만원
경기	안성시	환경개신사업비 지원	250,500	87,500	평가인증 통과시설	인원별 150만원~200만원
경기	안성시	종사자 인증수당	97,400	60,000	평가인증 통과시설 종사자	인증수당 20만원*300명*1회 지원
경기	안성시	조력수당	3,920	2,800	평가인증 통과시설 조력위원	7만원*2명*20회
경기	김포시	환경개선비 지원	15,000	33,000	평가인증 통과시설	정원별 50만원~150만원
경기	광주시	환경개선비 지원	65,000	80,000	신규 평가인증 통과시설	현원대비 차등지원 200만원~320만원

구분	시·군·구 명	사업명	'09예산	'10예산	지원대상	지원내역
경기	광명시	조력단 참가운영비	21,650	7,350	평가인중 조력단(6명)	1인 5만원
경기	안산시	강화협력사업 지원	10,000	10,000	평가인중 조력단 지원	평가인중 조력협력지원
경기	광명시	시설 지원	24,750	31,500	평가인중 참여시설	40인 이상 30만원, 39인 이하 25만원
경기	평택시	환경개선 지원	-	144,500	2010년 평가인중 통과시설 77개소	규모별 차등지원
경기	군포시	종사자 수당	20,000	20,000	평가인중 참여시설	20만원*10개소*10명
경기	연천군	종사자 지원	18,000	12,500	평가인중 통과시설 종사자	종사자에게 1인당 50만원 지원
경기	이천시	종사자 수당 지원	104,040	180,000	평가인중 통과시설 종사자	0.25만원*600명*12월
경기	성남시	평가인중 지원		134,400	291명	보육시설 지원금 : 30만원/1인, 보육시설 수수료 지원 : 25만원-30만원
경기	광주시	보육교사 수당	0	25,000	신규 평가인중 통과시설	1인*25만원*100명
경기	의정부시	보육교사 수당	59,800	64,800	평가인중 참여시설 교사	인중참여교사에 대한 수당지원(1인당 월 3만원)
경기	포천시	종사자 참여수당	20,000	20,000	평가인중 통과시설(민간) 시설장,보육교사,취사부	10만원, 1회
경기	포천시	교사 교통비 지원	81,500	90,000	평가인중 통과시설(민간)	5만원/1인
경기	오산시	교사 교통수당 지원	48,000	240,000	평가인중 통과시설 보육교사	월 5만원
강원	원주시	참여 증진	15,000	12,000	평가인중 참여시설	25~30만원
강원	동해시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운영 지원	30,000	30,000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된 차량소지 시설	유류비 월 5만원
충북	충주시	운영비 지원	25,200	94,500	평가인중 통과시설 45개소	시설당 210만원

구분	시·군·구 명	사업명	'09예산	'10예산	지원대상	지원내역
충북	진천군	시설 지원	50,000	14,000	평가인증 통과시설	시설당 200만원
충북	청원군	장비보강 및 교육자료 지원	115,500	120,000	보육시설	20인이상 150만원, 20인미만 100만원
충북	제천시	기능보강사업 지원	100,000	20,000	평가인증 통과시설	개소당 200만원
충북	단양군	운영비 지원	20,000	0	평가인증 통과시설 8개소	시설당 250만원
충남	당진군	교재교구비	0	45,000	평가인증 통과시설 45개소	연 100만원
전북	전주시	회계시스템 운영	30,000	15,000	평가인증 통과시설 150개소	시설당 10만원
전북	김제시	종사자 처우개선비	100,000	100,000	평가인증 통과시설 종사자	3만원*평가인증보육시설종사지*12개월
전남	신안군	평가인증 교육지원	1,200	1,200	보육시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교육여비
경북	칠곡군	교재교구비 지원	-	20,000	평가인증 통과시설	평가인증시설 교재교구비
경북	경주시	교재교구비	-	100,000	평가인증 통과시설 100개소	시설당 100만원*1회
경북	포항시	참여수수료 지원	25,500	21,000	평가인증 참여시설	참여수수료(25만원, 30만원)
경북	예천군	교육기자재비 지원	5,000	2,000	평가인증 통과시설	교육기자재 구입 개소당 100만원
경북	안동시	환경개선	30,000	10,000	평가인증 통과시설	평가인증 통과 50만원*개소당
경북	김천시	시설개선비	20,000	20,000	평가인증 통과시설	시설당 500만원
경북	청도군	개보수 장비 구입 지원	10,000	10,000	평가인증 신청시설	200만원/개소당 지원
경북	경산시	장비구입비	50,000	50,000	평가인증 통과시설 50개소	100만원
경북	영덕군	시설 지원	10,000	9,000	평가인증 통과시설 9개소	100만원
경남	양산시	보육교사 수당	180,000	180,000	평가인증 통과시설: 민간,가정	월 5만원
경남	거제시	시설장, 보육교사 지원금	36,000	39,900	평가인증 통과시설	30만원*133명
경남	거제시	참여수수료 지원	4,500	5,500	평가인증 참여시설(장부미지원)	30만원*10개소, 25만원*10개소

구분	시·군·구 명	사업명	'09예산	'10예산	지원대상	지원내역
경남	합천군	환경개선		24,000	평가인증 참여시설 5개소	평가인증 참여시설 5개소
경남	남해군	특별수당	-	4,000	평가인증 참여시설 보육교사	평가인증 참여기간 월10만원
경남	남해군	시설 지원	10,000	6,000	평가인증 참여시설	개보수비 : 300~500만원
경남	남해군	참가 신청비 지원	600	900	평가인증 참여시설	참가비 실비 지원
경남	의령군	장비비 지원	5,000	3,000	평가인증 참여시설 3개소	시설당 100만원
경남	거창군	환경개선 지원	30,000	30,000	평가인증 참여시설(민간)	민간 500만원, 가정 250만원 한도
경남	창원시	교재교구비 지원	40,000	90,000	평가인증 통과시설	개소당 100만원
경남	진해시	장려금 지급		12,000	평가인증 통과시설 120개소	시설당 10만원*회
경남	밀양시	참가비 지원	22,900	10,600	평가인증 참여시설	50만원*5개소, 30만원*27개소
경남	거창군	참여수수료 지원	6,600	4,500	평가인증 참여시설	개소당 25만원~30만원

부록 3.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기준

〈부표 3-1〉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기준

영역	내역	배점
맞춤형 보육서비스		
시간연장, 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 중 1가지 이상 실시하고 있는가?	① 맞춤형 보육 실시. ② 운영 계획 수립(미운영시) ③ 맞춤형 보육 실시를 위한 홍보 실시(미운영시 수요조사) ④ 맞춤보육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실시(계획) ⑤ 시설환경이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는데 적합	각 1점
안심보육: 시설안전		
화재 등 재해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① 비상재해대비시설이 설치 및 대피시설로서의 기능 【필수항목】 ② 비상재해대비시설은 설치 기준을 지켜 안전하게 설치 ③ 안전설비를 갖추어 적절히 관리 ④ 비상시 대처방안 마련 ⑤ 소방대피훈련을 매월 실시	각 2점
영유아가 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가?	①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② 보육시설 실외의 시설설비가 영유아에게 안전하게 설치 ③ 보육시설 실내의 시설설비가 영유아에게 안전하게 설치 ④ 위험한 물건이 영유아에게 노출되어 있지 않음 ⑤ 연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을 실시	각 1점
안심보육: 급식·위생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질의 급·간식을 위생적으로 제공하고 있는가?	① 영양사가 계획한 식단을 사용하고, 식단표대로 제공 ② 급간식은 보육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 ③ 보관중인 식자재는 유통기한을 준수. ④ 음식의 조리(또는 배식)과정이 위생적임. ⑤ 영·유아에게 제공한 일일 급·간식 내용을 학부모에게 공개	각 1점
보육시설 전반이 청결하고 위생적인가?	① 보육실, 현관, 복도 등 보육시설의 청결상태가 양호 ② 화장실, 세면장의 청결상태가 양호 ③ 조리실의 청결상태가 양호 ④ 보육시설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 ⑤ 놀잇감의 청결상태가 양호.	각 1점

회계의 투명성		
시설명명의 1계좌를 사용하며, 회계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설명명의 1계좌를 사용 【필수항목】 ② 세입과 세출을 모두 계상하여 예산 편성 ③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수입·지출결의서 내역이 일치. ④ 시설운영과 무관한 부적절한 지출 내역이 없음. ⑤ 대금결제는 보육시설 전용 신용카드, 계좌입금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고 지급내역,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 	각 2점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를 규정에 따라 수납, 관리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는 신용카드, 금융기관(계좌이체, 스쿨뱅킹, 지로 등)을 통하여 수납 【필수항목】 ②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는 월별로 수납 ③ 학부모로부터 일체의 잡부금품을 요구하지 않음 ④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에 대해 매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거나 가정 통신문을 통해 안내 ⑤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의 자치구별 상한액을 준수 	각 1점
외부에 시설정보를 공개하고 의사소통 구조를 마련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어린이집 기본소개, 반별현황, 종사자현황,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상세내역, 시설사진 등을 온라인으로 공개(서울특별시 보육포털) ② 온라인 공개 시설 정보는 구체적이고 충실하며 누락 없음. ③ 가정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 ④ 다양한 부모참여 프로그램을 실시. ⑤ 지역사회기관 한 두 곳과 협조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활동이 있음. 	각 1점
종사자 자질향상		
전문 인력 확보 및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급 및 2급 보육교사가 전체교사의 60% 이상이다. ② 현 시설 근무경력 1년 이상인 교사가 전체교사의 50% 이상 ③ 종사자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업무분장에 맞는 역할을 수행 ④ 시설장과 보육교사 모두 교육이수 기간 내에 직무교육 이수. ⑤ 시설종사자가 직무·승급교육 이외의 다양한 교육에 참여 	각 1점

부록 4. 영국 영유아보육·교육기관 평가 결과 공개 사례

1. 사례 1: 우수 기관



Miles House Day Nursery

영유아학습발달보육서비스 중심으로 본 조사보고서

고유번호	EY342284
조사 날짜	2010년 3월 3일
조사자	Sue Vernon
시설주소	Miles House, Dunsford Place, BATH, BA2 6HF
전화 번호	01908211699
시설 형태	비주거 보육시설

Ofsted(교육, 아동 봉사 및 기술 표준국)은 아동 및 청년 복지와 전 연령대의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교육과 기술의 탁월도를 높이기 위한 조사 및 규제를 담당한다. Ofsted는 아동양육과 보육을 규제 및 검열하고 Cafcass(아동과 가정 법원 자문 및 지원국), 학교, 대학, 초기 교사 교육, 직업교육, 기술 훈련, 성인 및 지역 교육 과 감옥과 다른 보안 시설에서 제공되는 교육을 검열한다. Ofsted는 아동 서비스 협회를 평가, 돌봄받는 아동들을 위한 서비스, 안전조치 및 아동 보호상태를 시찰한다.

큰 활자 또는 점자등 이 문서의 다른 포맷을 원한다면 0300 123 1231로 전화를 주시거나, enquiries@ofsted.gov.uk 로 메일을 주십시오.

이 문서의 출처와 발행일을 적시하고 문서의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든 변경하지 않는 한, 비상업적인 교육 목적으로 이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oyal Exchange Buildings
St Ann's Square
Manchester
M2 7LA

T:0300 123 1231
Textphone: 0161 618 8524
E: enquiries@ofsted.gov.uk
W: www.ofsted.gov.uk

© Crown 저작권 2009

도입

교육, 아동 봉사 및 기술 표준국(Ofsted)는 영유아보육법 2006(Childcare Act 2006) 49항, 50항에 근거해 인가된 영유아 학습발달 보육서비스(early years provision, 이하 'EYP'라 한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 EYP 는 출생시부터 8월 31일터 준 만 5세에 해당하는 영유아(the early years age group)를 대상으로 Ofsted가 관리, 규제하는 서비스지원을 말한다. 인가된 개인 또는 기관은 영유아 학습, 발달과 복지에 대한 기본정책법(Early Years Foundation Stage, 이하 'EYFS'라 한다)에 의거해 보육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보육서비스제공자(이하 보육제공자)는 합리적 운영체제를 갖춘 보육시설에 속한 모든 부모에게 보고서 사본을 제공해야한다. 부모 이외의 타인의 요청으로도 보고서 사본은 제공 가능하며, 단 보육제공자는 사본비를 청구할 수 있다(The Childcare Regulations 2008 regulations 9 and 10).

영유아연령 0-만5세를 넘긴 아동들도 아동보육 등록처(Childcare Register)에 의무적 (한 명 이상의 9월1일 기준 만5세~만8세 아동 보육시) 혹은 자발적 (만 8세~만17세 아동 및 청소년 보육시)으로 등록된 보육시설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이에 대한 서비스 평가는 실시하지 않았다.

부록B에는 아동보육 등록처에 명시된 기본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가 실려있다.

개별 보육서비스제공자(provider)에 대한 추가 정보는 Ofsted 홈페이지에 실려있다. Ofsted 는 각 조사 보고서, 등록 조건, 서비스 기본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민원접수 자세사항을 게재하고 있다.

보육시설 환경

Miles House Day Nursery는 2009년에 개원, 영국의 여러 지역에 다수의 보육시설을 소유한 Child Base사가 운영하고 있다. 이 보육시설은 Bath 중심가에 위치한 조지안 하우스(Georgian House)를 개조한 건물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 52주 운영된다. 영유아 보육이 건물 4층 전체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령층에 따라 그룹별로 나뉜다. 담이 쳐진 널찍한 뒷 정원이 제공되고 있다. 구내에는 승강기가 없어 이동이 불편한 자의 이동 접근성을 제한할 여지가 있다. 식사는 구내 식당에서 매일 제공된다. 8세 미만의 영유아 최대 94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인가 받

있으며 보육재정지원이 제공되는 장소에 설립되었다. 영유아 등록처(Early Years Register)와 아동 등록처(Childcare Register)의 의무 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다. 현재 영유아 21명 등록, 6명 보육교사가 고용된 상태이다. 관리사는 영유아 교육사(Early Years)는 4급 소지자이며, 영유아전문과정(Early Years Professional Status)을 이수 중이다. 이외의 보육사 네 명은 3급 자격증 이상을 소지하고 있다.

영유아학습발달보육서비스(EYP)의 총 성취도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the early years provision)

총체적 보육서비스 질은 탁월하다.

이 보육시설은 영유아와 부모에게 고품질의 효과적 시스템을 통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별히 이 시설의 강점은 개별 아이의 특수 욕구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지원이 부모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숙련된 지도력과 관리력으로 보육사는 안전한 설비가 잘 갖춰진 환경 속에서 아이들의 충분한 학습 발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관리자와 보육교사팀은 뛰어난 협력체계를 보이며, 서비스실행 평가와 지속적 개선증진을 해나가고 있으며 훌륭한 자기평가체계를 세워나가고 있다. 이 보육시설의 기조는 '모든 영유아에게 최고의 보육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정진하기이다.

EYP 개선을 위한 조치 (What steps need to be taken to improve provision further?)

고품질의 영유아서비스지원을 넓혀나가기 위해, 이 인가시설이 고려해야 할 사항

- * 자기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

보육시설종사자의 EYP 지도력과 관리 수준에 대한 성취도 (The effectiveness of leadership and management of the early years provision)

관리자와 보육사는 안전사항을 포괄적으로 철저히 자각하고 있다. 모든 보육사는 관리사가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안전도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이로써 보육사는 영유아보육전반의 안전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갖추고 있다. Child Base사는 효과적으로 보증된 고용절차를 통해 영유아 보육에 안전하고 적합한 보육교사를 보증한다. 광범위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를 예방했으며, 매

우 안전한 환경을 선호하는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검토도 실행해왔다. 흥미를 유발시키는 연령별 놀이자재가 다양하게 놀이방에 구비되어 있어, 효과적으로 여러 범주의 학습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며 아이들도 대담하게 놀이자재를 갖고 놀며 독립적인 선택을 해나간다. 영유아 건강과 복지이념이 보육시설의 규칙과 실행절차 전역에 명확하게 드러나며, 팜플렛, 게시판 활용과 개별화된 면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에게 공개된다.

보육사팀은 부모의 개별 요구사항을 수렴하며 부모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나간다. 각 개별 아이와 부모 요구에 들어맞는 가정방문 서비스도 제공되며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세심한 서비스지원과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참여 아침 식사 프로그램을 통해 각 부모가 서로 만나 연락할 기회를 제공한다.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영유아 경험에 대한 부모 의견제공과

평가, 영유아 부모 모임, 모두 장려받고 있다. 부모가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는 기회도 열려있다(예로, 다국어로 동화 읽어주기 프로그램). 보육사는 아이, 부모 모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물이름 익히기 같은 놀이를 통해 제2 언어의 가치의 소중함을 배우기도 한다. 특정 식이요법 같은 어떤 특정 요구사항이라도 서로 논의되고, 주의 깊게 충족되기 때문에 부모가 안심할 수 있다. 추천 식단은 코멘트와 함께 '추천 메뉴'란에 기록되고 음식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은 다양한 색깔의 접시로 구분된다. 영아 수면이나 수유 같은 보육일지에 대한 정보는 핵심 보육사에게 완벽히 제공되어, 특히 새로 등록한 아이의 첫 방문시에 고품질의 피드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피드백은 전화와 일지기록 뿐 아니라, 사진과 보육사 의견을 이메일 보내는 등의 수단으로 제공된다. 이 보육시설은 타 전문기관이나 보육서비스제공자의 긴밀한 협력을 맺으며 영유아 보육의 연계성을 세워나가고 있다.

헌신적인 관리사와 보육사팀은 서비스 실행 및 절차 과정의 평과발전 단계에서 보육시설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들은 활동 업무에 대해 정기적 평가를 실시한다. 모든 교육사의 의무 교육과 추가 교육, 인수 인계와 평가에 따른 새로운 정보 공유를 위한 정기 회의를 열면서, 영유아 발달 성취도의 지속적 개선을 지향하고 있다. 관리사와 보육사 모두 업무실행 평가를 하고 있으며, 서비스 질 개선에 필요하다고 여길 시 학습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능숙한 시스템조절 능력을 보이고 있다. 개선이 요구되는 분야를 인지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기평가시스템은 여전히 모색 중이다.

EYP 질적 수준과 영유아 발달사항 (The quality and standards of the early years provision and outcomes for children)

보육사팀은 아이와 가족 모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아이는 멋지게 조성된 보육환경에서 즐겁고 자신감 넘치게 놀이활동을 한다. 주요 시설 종사자들은 개별 아이들을 잘 알며, 모든 아이는 각별한 주의를 받으면서 새로운 학습경험을 탐험하고 시도하는데 거리낌이 없다. 새로운 학습경험의 예는 다양한 도구를 이용, 모양을 만들며 손으로 다양한 페인트 색을 섞어 칠해 보는 등의 놀이활동이다. 아이의 품행은 바르고 일상 활동을 익히며 자신의 학습도구를 선택하거나 놀이활동 후 지지분해된 손을 닦는 등의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쌓아 나간다. 보육사 모두 친절하며, 호응이 빠르고 일관적인 칭찬을 하며 아이의 학습탐구 욕구와 성취도를 장려하고 있다. 아이들은 이야기놀이와 독창적인 옷입기 놀이(dressing up play)를 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 공유를 편안하게 느낀다. 아이들은 화재 대피 길찾기에 대해 토론하거나 정원을 이용하기 위해 기다리면서 난간을 붙잡으면서 건물 주변 환경을 안전하게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 익힌다.

각 연령대 방에서 근무하는 보육사팀은 아이 학습 및 발달단계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 아이들의 생각을 자극하는 열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며 놀이에 대한 아이들의 흥미를 연장한다. 언어와 의사소통 기술개발에 대한 서비스는 잘 지원되고 있다. 영아방에 속한 보육사팀은 직물학습 책을 공유하거나 모래 놀이를 같이 할 때 고유한 소리나 새 어휘를 반복해서 들려줌으로써 아이들의 언어를 효과적으로 발달시킨다. 유아 아동은 그림을 그리거나 화려한 색반죽 놀이를 이용해서 자신의 모형을 설명할 때 새어휘 사용을 쓰도록 격려받는다. 모든 어린이들은 책의 가치를 배우고 스스로 집에서 읽을 책을 고를수 있는 이야기 도서관을 출입을 즐길수 있도록 고무된다. 쓰기와 그림그리기(mark-making)는 글자를 비누방울이나 그림 형태로 만들어내고 이름카드를 인식하는 등의 전반적 활동에 걸쳐 장려된다. 아이는 접시 숫자를 세고 간식시간에 몇 개의 컵이 더 필요할지를 계산하는 등의 활동처럼 일별 활동에서 숫자에 대한 이해를 발달시킨다.

보육사팀은 여섯가지 영역에 걸쳐 아이 학습에 대한 세밀한 관찰을 실행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 개별 아이의 다음 발달 단계를 확인한다.

관찰조사내용은 단기계획수립에 연계시기 위해 주의깊게 검토활용된다. 이런 절차는 개별 아이의 학습진도의 검토, 모니터링과 서비스지원을 원활하게 한다. 보육사는 아이의 흥미에 빨리 인지하여 아이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놀이 활동에 연결 시키

고 있다. 예를 들면 호두각기 인형 이야기에 대한 아이의 흥미를 유발할수 있도록 책 또는 발레 음악을 찾는다. 아이들은 중국 음력설날 같은 다문화의 축제를 축하하며 국수를 먹기 위해 젓가락을 사용해보거나 용 모형과 관련 이야기 놀이를 하며 다양성을 익힌다. 그들은 노트북이나 무선으로 조정되는 장난감 놀이를 통해 과학기술을 즐겁게 익힌다. 다양한 기회를 통해 아이는 육체적 기술발달능력을 키우고, 작고 큰 근력을 조화롭게 사용하는 능력을 습득한다. 아이들은 감독하에 채소와 꽃 재배지를 다듬고 준비를 하며 정원도구들을 사용한다. 마르고 부드러운 파스타나 비료 물 놀이같은 다양한 질감을 탐구하면서 다양한 도구들을 시도해본다. 영유아들은 마른 모래 쟁반에 물뿌리기 놀이를 즐긴다. 야외 환경은 다양한 게임과 놀이를 위한 아주 좋은 장을 제공한다.

아이는 건강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배우도록 격려된다. 그들은 실내에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맞춰 춤추거나 광범위하고 잘 준비된 정원에서 일별 야외 놀이를 한다. 건강한 음식에 대한 토론을 통해 간식시간에 제공되는 다채로운 과일 맛을 즐기는 법을 습득하게 된다. 아이들은 키울 수 있는 채소의 종류를 배우면서 보육사는 생산작물에 대한 아이의 흥미를 유발케 한다. 아이들은 티슈를 사용하고 기침할 때 입을 막고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이유를 배우면서 적절한 위생 습관에 대해서 익힌다. 보육사는 한 활동이 끝나면 그 장소를 청소하고, 손 세척과 적절한 항 박테리아 젤을 사용하는 등의 적절한 위생 절차를 따르고 있다. 영아방 보육사는 아이 우유병 준비시 혹은 수유시 서로 다른 색깔의 플라스틱 앞치마를 사용하고, 아기마다 개별 침구를 제공하면서 적절한 위생 절차를 따르고 있다. 약 처방이나 사고처리 절차방식 모두 양호하며, 보육사는 응급처치 훈련을 받았다. 아이들은 양질의 관리사와 보육사가 제공하는 따뜻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보육되고 있다.

부록 A: 조사 결과 기록

주요 조사 결과기준과 정의

점수 1 : 탁월 : 이례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

점수 2 : 우수 : 고품질의 보육서비스

점수 3 : 적정 : 적절한 보육서비스

점수 4 : 부적정 : 기준 미달의 보육서비스

EYP 총 성취도(The overall effectiveness of the early years provision)

EYFS 에서 제시한 영유아 욕구대한 보육원 서비스 지원 충족 정도	1
지속적 개선유지를 위한 서비스지원 수용력	1

보육시설종사자의 EYP 지도력과 관리 수준에 대한 성취도 (The effectiveness of leadership and management of the early years provision)

EYFS 요건사항 효과적 이행 및 관리 정도	1
영유아 의욕 고취 향상을 위한 지도 및 관리 성취도	1
보육시설의 학습자재 설치 정도	1
보육시설의 평등 및 다양성 학습지원에 대한 성취도	1
안전도	1
서비스질 개선을 포함한 보육시설의 자기 평가 정도	2
협력 체계	1
부모와 보호자 참여정도	1

영유아학습발달복지 기본법(EYFS) 실행의 질적 수준
 (The quality of the provision in the Early Years Foundation Stage)

EYFS 기준 성취도	1
-------------	---

EYFS 근거한 영유아 발달사항
 (The quality of the provision in the Early Years Foundation Stage)

총 발달사항	1
성취 및 학습정도	1
안전도 학습정도	1
건강한 생활방식 학습정도	1
적극적인 참여 정도	1
사회기술 학습 발달정도	1

본 조사나 보고서에 대한 불만사항은 Ofsted 홈페이지 (www.ofsted.gov.uk)에 기재되어 있는 지침 절차를 따르시오

부록 B : 아동보육 레지스터(Childcare Register)

아동보육 등록의 의무 규정사항을 지키고 있는가 : 충족

2. 사례 2: 미흡한 기관



Ladybird Day Nursery

영유아학습발달보육서비스 중심으로 본 조사보고서

고유번호	EY342284
조사 날짜	2010년 5월 26일
조사자	Adelaide Griffith
시설 주소	Ladybird Nursery, 110 Edgbaston Road, BIRMINGHAM, B12 9QA
전화 번호	0121 4405706
시설 형태	비주거 보육시설

교육, 아동 봉사 및 기술 표준국(Ofsted)은 아동 및 청년 복지와 전 연령대의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교육과 기술의 탁월도를 높이기 위한 조사 및 규제를 담당한다. Ofsted는 아동양육과 보육을 규제 및 검열하고 Cafcass(아동과 가정 법원 자문 및 지원국), 학교, 대학, 초기 교사 교육, 직업교육, 기술 훈련, 성인 및 지역 교육 과 감옥과 다른 보안 시설에서 제공되는 교육을 검열한다. Ofsted는 아동 서비스 협회를 평가, 돌봄받는 아동들을 위한 서비스, 안전조치 및 아동 보호상태를 시찰한다.

큰 활자 또는 점자등 이 문서의 다른 포맷을 원한다면 0300 123 1231로 전화를 주시거나, enquiries@ofsted.gov.uk 로 이메일을 주십시오.

이 문서의 출처와 발행일을 적시하고 문서의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든 변경하지 않는 한, 비상업적인 교육 목적으로 이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oyal Exchange Buildings
St Ann's Square
Manchester
M2 7LA

T:0300 123 1231
Textphone: 0161 618 8524
E: enquiries@ofsted.gov.uk.
W: www.ofsted.gov.uk

© Crown 저작권 2009

도입

Ofsted 는 영유아보육법 2006 (Childcare Act 2006) 49항, 50항에 근거해 인가된 영유아학습발달보육서비스(early years provision, 이하 'EYP'라 한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 EYP 는 출생시부터 8월 31일 기준 만 5세에 해당하는 영유아 (the early years age group)를 대상으로 Ofsted가 규제하는 서비스□등을 맡인 가졌인가된 개인 또는 기관은 영유아(最)발달단계복지에 대한 기본정책법(Early Years Foundation Stage, 이하 'EYFS'라 한다)에 의거해 보육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보육서비스제공자(이하 보육제공자)는 합리적 운영체제를 갖춘 보육시설에 속한 모든 부모에게 보고서 사본을 제공해야한다. 부모 이외의 타인의 요청으로도 보고서 사본은 제공 가능하며, 단 보육제공자는 사본비를 청구할 수 있다 (The Childcare Regulations 2008 regulations 9 and 10).

영유아연령(0-만5세)을 넘긴 아동들도 아동보육 레지스터(Childcare Register)에 의무적 (한 명 이상의 9월1일 기준 만5세~만8세 아동 보육시) 혹은 자발적 (만 8세~만17세 아동 및 청소년 보육시)으로 등록된 보육시설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이에 대한 서비스 평가는 실시하지 않았다.

부록B 에는 아동보육레지스터에 명시된 기본요건 충족도 대한 평가가 실려있다.

개별 보육서비스제공자(provider)에 대한 추가 정보는 Ofsted 홈페이지에 실려있다. Ofsted 는 각 조사 보고서, 등록 조건, 서비스 기본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민원접수 자세사항을 게재하고 있다.

보육시설 환경

Ladybird Day Nursery 는 2006년 현 소유주 명부로 등록, Birmingham의 Edgbaston 교외 지역에 위치하며, 주거지를 개조한 시설물로 운영되고 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반까지 은행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운영한다. 아이들모두 담이 쳐있는 놀이 공간에 접근 가능하다.

Ladybird Day 유아원은 영유아보육레지스터(Early Years Register)에 인가되어있다. 한번에 최대 수용 정원은 29명이다. 현재 생후 10개월부터 5세 미만의 40명의

유아가 등록된 상태이다. 특수 교육이 요망되는 유아나 장애유아에게도 서비스제공 가능하다. 아동보육레지스터(Childcare Register)에 의무 등록(한명 이상의 0-5세 보육)에 해당된 인가시설이다.

이 곳에는 관리사를 포함, 총 7명의 보육시설종사자가 있다. 모두 NVQ 2급 이상의 유아보육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지역 당국에서 교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영유아학습발달보육서비스(EYP)의 총 성취도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the early years provision)

- * 전반적 서비스 질 부적격함.
- * 아동 복지에 대한 안전도 부적절함.

Ladybird 유아원은 영아 학습과 발달 분야에서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보육대상자에 대한 공평한 대우, 다양한 개별적 요구사항 고려가 이 유아원 규칙과 실행절차에 잘 드러나 있다. 일부 변경 시행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이 제고되었으며 영유아 이익 개선을 유지할 만한 충분한 수용력을 보여주고 있다. Ladybird 유아원은 부모, 외부기관과 외부 보육서비스제공자와 협력교류를 맺으며 영유아 학습, 발전 단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본 원은 EYP의 기대 수준에 크게 미달한다. 따라서 조치실행에 필요한 개선명령을 권고받았다.

EYP 개선을 위한 조치 (What steps need to be taken to improve provision further?)

EYPS(영유아보육기본정책법)의 기본요건에 충족하기 위해 Ladybird Day 유아원은 명기된 날짜까지 다음 수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 * 의료 의무절차 시행령에 따라 보육 영유아에게 약 처방 전 부모로부터 사전 서명허가를 받을 것, 제공된 모든 약 처방은 기록으로 남기고 부모에게 공지할 것('Promoting good health' 사항 근거) : 2010년 5월 27일까지

EYP 질적 개선을 위해 이 유아원은 다음 사항을 따라야한다.

- * 보육시설종사자들은 더 효과적인 학습계획 수립을 위한 관찰평가와 모든 영유아의 도전의식 개발을 위해 EYFS 의 기재사항을 습득할 것.
- * 모든 화재비상구 접근지역에는 항상 장애물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위험도 평가를 재검토할 것.

- * 야외용 좌석을 포함한 주변 환경안전도의 전반적 점검과 위험요소 최소화를 위한 위험도평가를 재고할 것.
- * 영유아의 효과적이고 항시적인 영양상태증진을 위해 간식제공절차를 재검토할 것.

보육시설종사자의 EYP 지도력과 관리 수준에 대한 성취도 (The effectiveness of leadership and management of the early years provision)

이 보육시설의 종사자(이하 '보육사'라 한다)는 EYFS 기본사항에 대해 적절히 이해하고 있기에 아이들에게 적합한 보육,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두 합리적 모집절차를 걸친, 아이 양육에 적격한 보육사이다. 그 예로, 모두 보육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모집 후 안내과정에서 보육사는 아이들을 위해 적극적인 보육 및 학습 서비스제공을 위해 해당보육시설의 규칙, 서비스절차와 정규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있다. 영유아 복지의 일부 사항은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약 처방절차가 EYFS에 명시된 바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는 규칙 위반에 해당한다.

보육사 정기회의를 통해, 서비스 실행지원에 대한 토의의 장이 제공되고있다. 일례로, 회의를 통해 보육사는 지정된 아이숙명방을 변경해 나갔다. 관찰지 기록 방식에 대한 조정도 있었다. 본 보육원은 질문지를 통해 부모 의견을 검토하고 있고, 시설에 대한 영유아의 초기 반응 및 활동내용을 기록한다. 보육시설종사자의 자기평가 과정 중에는 필요한 교육과정분석도 포함되어있다. 해당 예로, 관리자는 관련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전문가과정(Early Years Professional Status course) 이수준비를 해왔다. 이 유아원은 또한, 지속적 개선의 노력을 보여준다. 그 예로 마지막 조사시에 내려진 권고사항을 적절히 이행했다.

보육사와 관리자는 영유아보육 증진을 위해 부모와 협력을 잘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가 필수적으로 섭취해야하는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이는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 아이의 개별적 정규활동은 부모의 동의 하에 진행되고 있다. 관리자는 시설에서 진행되는 활동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돕기 위해 워크샵을 열어 부모와 교류한다. 부모는 아이의 발달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 내용은 부모 게시판란에 여러 외국어로 게재된다. 이런 방편은 모든 부모가 보육시설 내에서 열리는 이벤트와 각종 변경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시설 보육사는 외부 보육서비스제공자나 기관과의 관계 수립도 원만하여 아이들을 위한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관리자는 퇴원하는 영유아에 대한 기록지를 준비하여 유아원에서 학교로 이전하는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당지역 학교를 방문할 기회도 보장하고 있다.

주요보육사체계 (key worker system)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아이들은 적절한 서비스지원 받고 있으며 안전감을 느끼면서 이 시설내의 보육사와 원만하게 지내고 있다. 그 예로 아이들은 필요시에 보육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안정감을 찾으려고 한다. 보육사는 타 문화권이나 장애에 대한 영유아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상당한 양의 교재와 자료가 비치되어 있으며, 영유아 지각학습 향상을 위한 정기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EYP 질적 수준과 영유아 발달사항 (The quality and standards of the early years provision and outcomes for children)

이 시설보육사의 대부분은 일상활동을 최대한 이용하여 영유아의 학습 및 발달 단계를 진행시키고 있으며 아이들도 그에 상응하는 발달성장을 보이고 있다. 간식시간에 아이들은 도우미 역할을 장려받으며 과일접시를 타인에게 전달해 준다. 저녁식사 시에는 최소한의 도움을 받으며 스스로 자신의 음료를 따르고 식기를 준비하며 독립성을 키우게 된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자신이 속한 환경에 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면서 자존감을 효과적으로 키운다. 보육사는 색 인지학습지도를 위해 아이들에게 지정된 타자를 스스로 찾아가라고 지시한다. 일부 아이는 분홍색, 회색, 검정색과 같은 중간색을 확실히 구분했다. 아이들은 주변 환경에 대해 적절한 지식도 쌓아 나가고 있다. 공공교통편을 이용해 도서관을 방문하거나 인근 공원으로 정기야유회를 갖기도 한다. 또한 자선단체의 모금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 시설 아이들은 야채농장에서 식물을 기르면서 생명의연속성에 대한 자각능력을 키워나간다. 식물 이름을 익힐 수 있도록 주요 식물에는 식별 가능한 라벨을 붙여 학습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아이들은 건강한 생활방식에 대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받고 있다. 일상 야외 활동 속에서 대근력을 강화 기술을 충분히 습득하고 있다. 넓은 운동장에서 뛰놀기도 하고 놀이시설 구조물에 대담하게 오르내리기도 한다. 고질의 식사장려책의 일환으로 아이들은 신선하게 조리된 식사를 하고 그 날의 신선한 과일을 먹는다. 식수는 언제나 제공된다. 영유아방은 모든 학습재료가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놓여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림그리기

(mark-making)용 연필과 종이에서부터 창작용 공예재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료가 이용가능하다.

보육사는 전 학습분야에 대해 활동 계획을 세운다. 일상 정기활동을 통해 아이는 수를 익히고, 오전수업이 끝날 때는 노래를 부른다. 영아방에는 유아원노래 테잎을 틀어 놓아 밝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영아에게는 자유롭게 활동할만한 공간이 제공되고 연령에 적절한 학습재료를 지원받으면서 적합한 지각능력발전을 촉진받는다. 보육사는 정기관찰을 하며 아이 발달단계를 인지하고 활동계획 시에는 학습주제를 적절히 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 학습주제가 다음 단계의 학습 과정에 항상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EYFS에 근거한 기본학습사항과 연계된 학습 내용이 일괄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일부 보육사는 학습도모를 위한 아이들의 도전의식 고취 활동을 짜나가는데 능숙하다. 예를 들어 숫자세기를 잘 하는 아이에게 물건을 군단위로 묶어보기, 숫자를 순서대로 다양한 조건에서 나열하기 등의 복잡한 활동을 장려하기도 한다.

우선, 아이는 안전감을 익힌다. 예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기 전에 타인이 완전히 안전거리 안에 없는지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상기 받는다. 야유회 행사에서도, 교통흐름을 주시하고 도로안전법을 학습하도록 장려 받는다.

그러나, 일부 학습과정에서는 안전도 개념이 강조되어 있지 않다. 화재비상구 하나는 부분적으로 출입이 막혀있었고, 험거운 실외 벤치좌석이 있었다. 또한 야외놀이집(playhouse)의 바닥갈개는 아이들에게 안전하지 못했다. 이 모두는 보육 안전도를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요인이다. 개인위생에 대한 학습인지도는 다음에서 드러났다. 아이들은 활동 내용에 따라 손을 씻고, 구강 청결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눈다. 그러나 간식제공 과정에서 감염예방에 대한 조치가 항상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이는 아이 건강상태를 위협할 수 있다.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품행이 바르고 보육사는 아이들에게 학습재료 공유를 장려한다. 총체적으로 이 보육시설은 영유아초기학습 목표를 지향하면서, 전 활동범위에 걸쳐 영유아를 위한 사회에 필요한 발달능력을 키우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록 A: 조사 결과 기록

주요 조사 결과기준과 정의

점수 1 : 탁월 : 이례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

점수 2 : 우수 : 고품질의 보육서비스

점수 3 : 적정 : 적절한 보육서비스

점수 4 : 부적정 : 기준 미달의 보육서비스

EYP 총 성취도(The overall effectiveness of the early years provision)

EYFS 에서 제시한 영유아 욕구대한 보육원 서비스 지원 충족 정도	4
지속적 개선유지를 위한 서비스지원 수용력	3

보육시설종사자의 EYP 지도력과 관리 수준에 대한 성취도
(The effectiveness of leadership and management of the early years provision)

EYFS 요건사항 효과적 이행 및 관리 정도	4
영유아 의욕 고취 향상을 위한 지도 및 관리 성취도	3
보육시설의 학습자재 설치 정도	2
보육시설의 평등 및 다양성 학습지원에 대한 성취도	2
안전도	4
서비스질 개선을 포함한 보육시설의 자기 평가 정도	3
협력 체계	2
부모와 보호자 참여정도	2

영유아학습발달복지 기본법(EYFS) 실행의 질적 수준

(The quality of the provision in the Early Years Foundation Stage)

EYFS 기준 성취도	3
-------------	---

EYFS 근거한 영유아 발달사항

(The quality of the provision in the Early Years Foundation Stage)

총 발달사항	3
성취 및 학습정도	3
안전도 학습정도	3
건강한 생활방식 학습정도	2
적극적인 참여 정도	2
사회기술 학습 발달정도	3

본 조사나 보고서에 대한 불만사항접수는 Ofsted 홈페이지(www.ofsted.gov.uk)에 기재되어 있는 지침 절차를 따르시오

부록 B : 아동보육 레지스터(Childcare Register)

아동보육레지스터의 의무 규정사항을 지키고 있는가? : 불충족 (이행 미달)

조사 대상이었던 이 인가보육시설은 아동보육레지스터의 의무 혹은 자발적 범주 시설에 요구되는 기본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시정을 위해 해당 날짜까지 다음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2010년 5월 27일까지 보고서의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세부사항 이행 요망

부록 5. 설문조사표 2종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관한 시설장 조사

※ 귀하의 간략한 인적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이름		성별	남 ()	여 ()
주소	_____시 _____구 _____동			
소속기관		직위		

I. 보육시설 일반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 시설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설립유형과 설립연도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설립유형	① 민간 ② 가정	설립연도	()년
------	--------------	------	---------

2. 귀 시설의 보육아동 정원과 현원, 그리고 보육료 지원아동 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정원	()명
현원	영아 ()명 유아 ()명 초등 ()명 총 ()명
보육료 지원아동	전액지원아동 ()명/ 일부지원아동 ()명/ 미지원아동 ()명

3. 귀 시설의 임대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 ① 자가(용자없음)
- ② 자가(용자)
- ③ 유상임대
- ④ 무상임대

4. 귀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지금 조사대상인 보육시설 이외에 다른 보육시설, 유치원, 영유아대상 학원, 기타 유사 영유아 양육지원기관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다른 기관을 함께 운영하고 계시다면, 따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개수와 유형을 기재해 주십시오.

- ① 없음
- ② 있음(보육시설 _____개, 유치원 _____개, 영유아대상 학원 _____개, 기타: _____, _____개)

II.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5. 귀 시설은 맞춤형 보육으로 어떠한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각 맞춤형 보육 실시여부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실시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를 표기해 주시고, 실시한다면 하루 평균 아들은 몇 명입니까? 현재와 같은 각 맞춤형 보육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형	시간연장	장애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5-1) 실시여부	①실시 (☑ 5-2) ②미실시(☐ 5-3)	①실시 (☑ 5-2) ②미실시(☐ 5-3)	①실시 (☑ 5-2) ②미실시(☐ 5-3)	①실시 (☑ 5-2) ②미실시(☐ 5-3)
5-2) 평일 이용 아동 수 (☐5-4번 문항으로)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5-3) 미실시 사유 (☐5-4번 문항으로)	①희망아동이 없어서 ②관리운영이 어려워서 ③기타()	①희망아동이 없어서 ②관리운영이 어려워서 ③기타()	①희망아동이 없어서 ②관리운영이 어려워서 ③기타()	①희망아동이 없어서 ②관리운영이 어려워서 ③기타()
5-4) 맞춤형 보육의 지속적 확대에 대한 의견	①전혀 필요없음 ②필요없음 ③보통임 ④필요함 ⑤매우 필요함	①전혀 필요없음 ②필요없음 ③보통임 ④필요함 ⑤매우 필요함	①전혀 필요없음 ②필요없음 ③보통임 ④필요함 ⑤매우 필요함	①전혀 필요없음 ②필요없음 ③보통임 ④필요함 ⑤매우 필요함

6. 귀 시설은 평가인증을 받으셨습니까? 받았다면 언제 받으셨습니까?

- ① 받음(_____년 ____기) (☞ 6-1번 문항으로) ② 받지 않음 (☞ 7번 문항으로)

6-1. 인증을 받은 시설의 경우 총점은 몇 점을 받으셨습니까?

- ① 95점 이상 ② 90점~94.99점 ③ 85점~89.99점 ④ 80점~84.99점 ⑤ 79.99점 이하 ⑥ 잘 모름

6-2. 원아 모집시 평가인증여부가 도움이 됩니까?

- ① 전혀 도움이 안됨 ② 도움 안됨 ③ 보통 ④ 도움이 됨 ⑤ 매우 도움이 됨

6-3. 원아 모집시 보육시설에서 받은 평가인증 점수(및 세부영역별 점수)를 부모님들에게 공개 하십니까?

- ① 총점만 공개 ② 총점+영역별 점수 공개 ③ 공개 안함

6-4. 부모님들이 다음의 6개 영역 중에서 어느 영역에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십니까?

- ① 보육시설 환경, 보육활동 자료, 보육지원 환경 등의 보육환경
 ② 시설의 운영관리, 보육인력, 가족과의 협력, 지역사회와의 협조 등의 운영관리
 ③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 보육활동 등의 보육과정
 ④ 일상적 양육, 교사의 상호작용 및 교수법
 ⑤ 청결과 위생, 질병관리, 급식과 간식 등의 건강과 영양
 ⑥ 실내외 시설의 안전 및 영유아의 안전보호
 ⑦ 잘 모름

7. 현재 평가인증 시설을 대상으로 평가인증 점수를 기준으로 등급화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1) 인증시설 등급화	① 반대 ② 어느 정도 반대 ③ 어느 정도 찬성 ④ 찬성 ⑤ 상관없음
2) 결과 공개	① 현 수준 유지 ② 더 많은 정보 공개 필요 ③ 잘 모름
3) 공개 방안 (중복 응답)	① 부모에게 문서로 통보 ② 정보센터 등 주요 공공 홈페이지에 게재 ③ 보육시설 홈페이지에 공개 ④ 별도의 공개 전용 사이트 구축 ⑤ 일간지에 발표

7-1. 보육서비스 수준의 차이를 변별하면서, 부모들의 보육시설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증시설을 등급화한다면(미인증시설을 제외하고 인증시설 중) 총점을 몇 등급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각 등급별 구분 기준 점수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증통과 점수: 75점, 100점 만점 기준).

※ 응답예시: 3등급으로 나누는 것이 적절하고 인증 기준점수인 75점 이상 85점 미만, 85점 이상 95점 미만, 95점 이상으로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2번 체크 후 85점, 95점 기입

- ① 2등급(____점) ② 3등급(____점, ____점) ③ 4등급(____점, ____점, ____점)
 ④ 5등급(____점, ____점, ____점, ____점) ⑤ 기타 _____

7-2. 또한, 영역별 점수를 등급화하여 공개한다면, 각 영역별 점수를 몇 등급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각 등급별 구분 기준 점수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증통과 점수: 75점, 100점 만점 기준)

※ 응답예시: 3등급으로 나누는 것이 적절하고 인증기준 점수인 75점 이상 85점 미만, 85점 이상 95점 미만, 95점 이상으로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2번 체크 후 85점, 95점 기입

- ① 2등급(____점) ② 3등급(____점, ____점) ③ 4등급(____점, ____점, ____점)
 ④ 5등급(____점, ____점, ____점, ____점) ⑤ 기타 _____

- 7-3. 평가인증은 제1차 시행('05~'09)과 2차 시행('10~)으로 나뉩니다. 평가인증 결과 공개 대상은 어느 범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제1차 또는 제2차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 모두
 - ② 제1차 평가인증 통과시설
 - ③ 제2차 평가인증 통과시설
 - ④ 제1차 평가인증을 받고 제2차 평가인증을 받는 재인증 시설만
 - ⑤ 제1차, 제2차 상관없이 우수시설만

7-3-1.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대상을 위와 같이 답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제1차 지표와 제2차 지표 간 난이도 차이
- ② 제1차 평가인증 시행시 평가인증 결과 공표에 대한 보육시설과의 합의 부족
- ③ 가장 최근의 결과만이 부모의 선택 기준으로 의미가 있으므로
- ④ 기타(_____)

8. 귀하는 평가인증 인센티브로 다음 중 무엇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두 가지만 골라주세요.

- ☞ 1순위 () 2순위 ()
- ① 환경개선비 ② 교재교구비, 차량운행비 등 운영비 ③ 보육교사 수당
 - ④ 원장 수당 ⑤ 평가인증 유효기간 연장
 - ⑥ 기타(_____)

9. 다음은 귀 시설에서 추가 비용을 받고 실시하는 특별활동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입니다. 프로그램의 종류, 부모가 선택하는지 여부, 비용은 얼마인지를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 추가 비용 받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수	()개
9-2) 부모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① 모두 선택가능 ② 일부 선택가능 ③ 모두 의무 수강 ④ 비해당
9-3) 특별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아동의 비용	월 ()원

10. 귀하는 기타 필요경비 상한선 규제가 없다면 특별활동 비용을 더 받거나 개수를 늘릴 생각이 있습니까?

10-1) 비용	① 현 수준 유지 ② 비용을 더 받을 것임 ③ 잘 모름
10-2) 개수	① 현 수준 유지 ② 종류를 늘림 ③ 잘 모름

III.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가인증 결과가 우수한 민간보육시설(가정보육시설 포함)을 대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이나 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공공형 어린이집: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국공립보육시설과 같은 운영기준 적용 (국공립시설 수준으로 보육료 인하, 저소득층·맞벌이 가구 등 입소 우선순위, 취약보육 제공 등)
- 자율형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보육료는 부모와 협의하여 수납 (단, 차등보육료는 지원)

11. 귀하는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국공립보육시설과 같은 운영기준을 적용한다면 공공형 어린이집 전환을 신청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공공형 어린이집 내용은 위 설명 참조)

- ① 있음 (☞ 12번 문항으로)
- ② 없음 (☞ 11-1번 문항으로)

11-1. 신청하지 않겠다는 경우, 이유는 무엇입니까?

12.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정 시 평가인증 결과 외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1. 대표자가 다른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등 기타 육아지원기관을 운영하지 않을 것

-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함

12-2. 비상재해대비시설, 놀이터 설치기준 등을 충족할 것

-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함

12-3. 자가시설로 한정하고, 자기자본 비율 또는 상환금 비중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것

-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함

13.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시 정부의 지원금은 어느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 없이 국공립보육시설 인건비 지원과 동일
 ②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 없이 표준보육비용과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 차액
 ③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 + 유아 표준보육비용과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 차액
 ④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 + 민간보육시설 유아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보육료 지원 단가 차액

14.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시 정부의 지원금에 대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4대보험 보험료, 관리운영비 등 우선순위와 용도에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함

15.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시 다음과 같은 지원요건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1.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

-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함

15-2.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의 보육교사 급여 지급

-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함

15-3. 표준보육과정 운영 의무화

-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함

15-4.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시간 등 제한

-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함

15-5. 보육교사 자율장학 참여

-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함

16. 평가인증 결과가 우수한 민간·가정보육시설에 보육료를 부모와 협의하여 수납할 수 있는 자율형 어린이집을 도입한다면, 신청하실 의향이 있습니까?(자율형 어린이집 내용은 위 설명 참조)

- ① 있음 (☞ 17번 문항으로) ② 없음 (☞ 16-1번 문항으로)

16-1. 신청하지 않겠다는 경우, 이유는 무엇입니까?

17. 자율형 어린이집이 다음과 같이 설계된다면, 어느 방안을 선호하십니까?

- ①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을 중단하면서 전체 아동에 대한 수납한도액 완화
 ②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은 유지하면서 유아에 대한 수납한도액만 완화

18. 보육료와 기타필요경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보육료만 올리겠음 ② 보육료는 그대로 두고 기타 필요경비만 올리겠음
 ③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 모두 올리겠음 ④ 잘 모르겠음

19. 만약에 보육료를 자율화 한다면 보육료를 얼마를 책정하시겠습니까?

연령		0세	1세	2세	3세	4,5세
자율화시 책정예상 보육료	기본보육료 지원 +유아만 자율화	383천원	337천원	278천원		
	기본보육료 미지원 +전체 영유아 자율화					

20. 귀하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공공형 어린이집(위 설문에서 제시한 선정 기준 및 지원요건을 모두 적용) 또는 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어느 유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① 공공형 어린이집 ② 자율형 어린이집 ③ 현행 유지 ④ 잘 모름

●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중한 자료로 쓰겠습니다 ●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는 보건복지부 수탁과제로 「평가인증 활성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수행의 기초 작업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인증의 결과 및 그 활용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조사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복희

* 질문지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귀하의 간략한 인적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이름	
성별	남 () 여 ()
소속기관	
직위	

※ 의견조사에 대하여 작은 감사를 표하고자 하니, 아래 내용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자택 주소	주민등록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 각 질문에 대해 해당하는 응답에 √표해 주십시오.

I. 평가인증 결과 공개 정도

현재 보육시설 평가인증은 그 결과를 인증여부만을 공개하며, 결과가 재정 지원과 연계되지 않는 등 활용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평가인증 결과 활용을 위해 평가인증 결과 공개와 점수를 기준으로 등급화 하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평가인증 점수는 인증을 받은 보육시설 간에도 차이가 크게 납니다. 보육서비스 수준의 차이를 변별하면서, 부모들의 보육시설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점수를 등급화하여 공개한다면(미인증시설을 제외한 인증시설 중) 총점을 몇 등급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___ ① 2등급 ___ ② 3등급 ___ ③ 4등급 ___ ④ 5등급 ___ ⑤ 기타(_____)

- 1-1. 또한 영역별 점수를 등급화하여 공개한다면, 각 영역별 점수는 몇 등급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___ ① 2등급 ___ ② 3등급 ___ ③ 4등급 ___ ④ 5등급 ___ ⑤ 기타(_____)

※ 등급 구분에 대한 구체적 의견이 있으면 적어 주세요.

2. 현재 정부는 보육시설 평가인증 결과를 인증여부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부모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 충분(→ 질문 3으로) ___ ② 불충분(→ 질문 2-1로)

- 2-1. 불충분하다면 평가인증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개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___ ① 사·군·구 내 보육시설 간 순위 ___ ② 총점 기준 등급
 ___ ③ 총점 ___ ④ 영역별 등급
 ___ ⑤ 영역별 점수 ___ ⑥ 세부항목별 점수
 ___ ⑦ 보육시설 스스로 작성한 장단점 ___ ⑧ 자체점검보고서(인증 이후 연1회 작성)
 ___ ⑨ 개선요구 사항 등 평가인증 심의 결과

- 2-2. 평가인증은 제1차 시행('05~'09)과 2차 시행('10~)으로 나뉩니다. 2010년부터 평가인증 결과를 현행 보다 상세하게 공개한다고 가정할 때, 평가인증 결과 공개 대상은 어느 범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 제1차 또는 제2차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 모두
 ___ ② 제1차 평가인증 통과시설
 ___ ③ 제2차 평가인증 통과시설
 ___ ④ 제1차 평가인증을 받고 제2차 평가인증을 받는 재인증 시설만
 ___ ⑤ 제1차, 제2차 상관없이 우수시설만

2-2-1.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대상을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제1차 지표와 제2차 지표 간 난이도 차이가 존재하므로
- ② 제1차 평가인증 시행시 평가인증 결과 공표에 대한 보육시설과의 합의가 부족했으므로
- ③ 가장 최근의 결과만이 부모의 선택 기준으로 의미가 있으므로
- ④ 기타(_____)

※ 평가인증 결과 공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의견이 있으면 적어 주세요.

3. 현재 평가인증국에서는 평가인증 시설을 발표하고 홈페이지에 인증 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공개 방법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충분(→ 질문 4로)
- ② 불충분(→ 질문 3-1로)

3-1. 불충분하다고 응답하신 경우, 평가인증 결과를 어떤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방법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 ① 부모에게 서류로 통보
- ② 정보센터 등 주요 공공 홈페이지에 게재
- ③ 보육시설 홈페이지에 공개
- ④ 별도의 공개 전용 사이트 구축
- ⑤ 일간지에 발표

※ 인증결과 공개 방법에 대한 구체적 의견이 있으면 적어 주세요.

II. 평가인증 결과 활용: 자율형 및 공공형 어린이집, 인증 유효기간 연장

현재 보육시설 평가인증은 그 결과가 재정 지원과 연계되지 않는 등 활용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평가인증 결과가 우수한 보육시설에 대한 자율형 및 공공형 어린이집(서울형 및 부산시 공인 어린이집) 제도 도입, 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4. 평가인증과 재정지원을 연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에 운영비나 아동보육료 등 기존의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더 이상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4-1. 교재교구비 지원 중단 ① 원칙적으로 찬성 ② 반대
- 4-2. 차량운영비 지원 중단 ① 원칙적으로 찬성 ② 반대
- 4-3. 이용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중단 ① 원칙적으로 찬성 ② 반대
- 4-4. 이용 아동 차등보육료 지원 중단 ① 원칙적으로 찬성 ② 반대

5. 만약에 평가인증과 재정지원을 연계하여 평가인증 받지 않는 시설에 운영비나 이용 영유아의 보육료 등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시점은 언제부터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5-1. 교재교구비 지원 중단 ___① 유예기간을 둠(___년) ___② 유예기간 불필요
- 5-2. 차량운영비 지원 중단 ___① 유예기간을 둠(___년) ___② 유예기간 불필요
- 5-3. 이용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중단 ___① 유예기간을 둠(___년) ___② 유예기간 불필요
- 5-4. 이용이동 차등보육료 지원 중단 ___① 유예기간을 둠(___년) ___② 유예기간 불필요

6. 평가인증 결과가 우수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보육비용(보육료+기타 필요경비) 수납이나, 보육시설 운영기준 등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자율형 어린이집).

6-1. 평가인증 결과가 우수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보육비용(보육료+기타 필요경비) 수납 또는 보육 시설 운영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찬성하십니까?

- ___① 찬성 ___② 반대(이유:_____)

6-2. 우수 보육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이러한 우수 보육시설을 선정할 때 평가인증 점수 외에 어떤 요건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6-3.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시 해당 보육시설에 어느 범위까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① 보육비용 수납과 운영기준 모두(이유:_____)
- ___② 보육비용 수납만(이유:_____)
- ___③ 보육시설 운영기준만(이유:_____)

6-4. 우수한 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비용(보육료+기타 필요경비) 수납 규제를 완화한다면 상한선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과 상한선을 높이는 방법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① 상한선 완전 폐지(이유:_____)
- ___② 상한선 인상(이유:_____)

6-5. 보육비용(보육료+기타 필요경비) 규제 완화에 찬성하신다면, 어느 범위까지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①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 상한선(이유:_____)
- ___② 보육료 상한선만(이유:_____)
- ___③ 기타 필요경비 상한선만(이유:_____)

6-6. 보육비용(보육료+기타 필요경비) 상한선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어느 정도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① 일반 보육시설 상한선의 150% 수준 ___② 일반 보육시설 상한선의 2배
- ___③ 일반 보육시설 상한선의 3배 ___④ 기타(_____)

6-7. 자율형 어린이집에도 다음의 보육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기본보조금 ___① 찬성 ___② 반대(이유:_____)
- 2) 차등보육료 ___① 찬성 ___② 반대(이유:_____)
- 3) 교재교구비 ___① 찬성 ___② 반대(이유:_____)

6-8. 자율형 어린이집을 허용할 때 보육비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운영기준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6-9. 자율형 어린이집을 지역별로 일정 비율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합니까?

- ___① 찬성 ___② 반대

6-10. 자율형 어린이집이 전체 민간·가정보육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 정도가 적절

※ 규제완화 및 자율형 어린이집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작성하여 주십시오.

7. 평가인증 결과가 우수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서울형 어린이집처럼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공공형 어린이집).

7-1. 평가인증 결과가 우수한 민간, 가정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찬성하십니까?

- ___① 찬성 ___② 반대(이유:_____)

7-2.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시 평가인증 점수 외에 다음과 같은 추가 요건을 두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7-2-1. 임대시설 제외 ___① 찬성 ___② 반대
- 7-2-2. 용자가 과도한 자기시설 제외 ___① 찬성 ___② 반대
- 7-2-3. 어린이집 복수운영 및 학원 등 유사 기관 동시 운영 대표자 제외
___① 찬성 ___② 반대
- 7-2-4.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놀이터 요건 충족 ___① 찬성 ___② 반대
- 7-2-5. 기타 추가가 필요한 요건 _____

7.3. 공공형 어린이집을 도입하면,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국공립보육시설에 준하는 운영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7-3-1. 보육비용 수납한도액 ___① 찬성 ___② 반대
- 7-3-2. 취약보육 제공 ___① 찬성 ___② 반대
- 7-3-3. 입소우선순위 적용 ___① 찬성 ___② 반대
- 7-3-4. 보육과정 운영 ___① 찬성 ___② 반대
- 7-3-5.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___① 찬성 ___② 반대
- 7-3-6. 기타 추가가 필요한 운영기준 _____

7.4. 공공형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보육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니터링, 회계 투명성 확보 등)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7.5. 공공형 어린이집의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7-5-1. 클린카드 사용 ___① 찬성 ___② 반대
- 7-5-2. 엄격한 회계보고 ___① 찬성 ___② 반대
- 7-5-3. 기타 추가가 필요한 요건(_____)

7.6.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 시 그 규모를 지역별로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합니까?

- ___① 찬성 ___② 반대

7.7. 공공형 어린이집이 전체 민간 가정 보육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 정도가 적절

※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작성하여 주십시오.

8. 평가인증 결과에 따른 재정적 지원 이외에 우수한 결과를 받은 평가인증 시설은 유효기간을 연장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우수 보육시설에 대한 유효기간 차등화). 평가인증결과에 따른 유효기간을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___① 찬성 ___② 반대

8-1. 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인증결과를 연장할 경우, 어떤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제1차 평가인증 경험이 있었던 재인증 대상시설
- ② 일정 점수 이상의 평가인증 결과(예: 90점, 95점, 모든 영역 90점 이상 등)
- ③ 자체점검결과와 현장관찰점수 차이에서 발생하는 대비오차 결과에 따른 만점(10점)
- ④ 심의시 심사하는 부적절사례 없음
 (* 부적절사례: 인가 당시 용도에 대한 임의적인 변경, 종사자 근무상황 부적절, 반별 정원 위반,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 영유아 재원사항 부적절, 혼합반 구성원칙 무시 등)
- ⑤ 기본사항 점검 결과 10점 만점인 시설
- ⑥ 재직교사 자격 기준(1급 교사 비율, 시설의 평균 재직기간 등)
- ⑦ 기타(_____)

8-2.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 추가적인 연장기간은 몇 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현행 3년)

- ① 1년 미만 추가 연장 ② 1년 추가 연장
- ③ 2년 추가 연장 ④ 3년 이상 추가 연장

8-3. 유효기간 연장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질적 수준 점검을 위한 불시방문
- ②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한 인증시설에 대한 교육 등 지원
- ③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한 인증시설에 대한 경제적 지원
- ④ 우수한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면제를 통한 인센티브
- ⑤ 기타(_____)

※ 평가인증 결과 우수 보육시설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작성하여 주십시오.

●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중한 자료로 쓰겠습니다 ●

연구보고

평가인증 활성화 및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질 제고 방안

발행일 2010년 12월

발행처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정책실 보육정책과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을곡로 75(계동 140-2)

전화: 129

팩스: 02)2023-8921

인쇄처 대명기획 02) 2273-1292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발간번호 11-1352000-000212-01